

국립국어원  
정형  
국립국어원  
한글  
II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연구

연구 책임자 | 양명희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연구

연구 책임자 양명희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어교원 보수 교육 제도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21년 3월 9일~2021년 12월 10일

2021년 12월 10일

연구 책임자: 양명희(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 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양명희

공동연구원 김은호, 안정호, 유해준,

이영숙, 이훈, 조윤정

보조연구원 김보현, 김혜원, 류다정,

신선혜, 장지수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교원들의 교수 능력 및 자질을 유지·함양·관리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4가지의 세부 과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보수교육 제도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국내의 보수교육 관련 선행 연구 및 유사 교육 제도 검토를 통해 보수교육 제도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국외의 교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 관계자 1,289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의 필요성, 희망하는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 시수 등의 요구 조사를 진행하여 보수교육 제도안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보수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한국어교원자격제도와 교원들의 실제 직무 환경을 고려하여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을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로 구분하였으며, ‘직무 연수’는 다시 ‘공통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승급 연수’는 한국어교원자격증 상위 등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며, 직무 연수 내 ‘공통 교육’은 교원의 직무에 따른 능력 및 한국어 교수에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연수, ‘특별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 유형에 따른 대상별 특성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로 정의하였다. 보수교육의 교육 내용은 크게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행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인 교과목 예시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수교육 제도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용 매뉴얼’과 ‘보수교육 기관 운영 매뉴얼’ 마련을 위한 기준 및 지침을 제안하였다. 전자에는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보수교육 제도 체계 및 운영 지침이 포함된다.

넷째, 보수교육 제도안 완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법령의

조문에 ‘보수교육’이 명시되어 있는 자격 및 관련 분야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기본법」에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로 위임하는 형태의 법령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별 과업 수행에 따라 설계된 보수교육 제도안은 수용성과 용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 및 검토를 받았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제도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이 한국어교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및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육의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며 보수교육의 제도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제도를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재교육, 교육과정, 승급 연수, 직무 연수

<Abstract>

## A Study on the teacher retraining programs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eacher retraining programs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in order to maintain, cultivate and manage their teaching ability & competence as they are in charge of teaching Korean language in diverse domestic & overseas educational sites.

To this end, this study carried on 4 large kinds of detailed tasks in stages. First, The direction for designing the retraining program system was set. We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implications of retraining program system by examining preceding study related to domestic retraining program. We also derived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overseas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and retraining program cases. Further, we established the basic framework of retraining program system by conducting a demand survey for 1,289 concerned pers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cond, we composed the curriculum & syllabus of retraining program. The curriculum of retraining program was divided into ‘promotion training’ & ‘job training’ by considering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 their actual job environment. ‘Job training’ was subdivided into ‘common training’ & ‘special training’. ‘Promotion training’ is for the teachers who wish to acquire

qualific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high grade. ‘Common training’ in job training is defined as the training which maintains & develops ability for teachers’ job and knowledge necessary for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special training’ is defined as training required to understand basic knowledge related to property of each subject according to type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syllabus of retraining program was largely classified into ‘syllabus, educational metho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xample of detailed subjects were presented together.

Third, we developed relevant manual to operate systematic & consistent retraining program system. Specifically,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Manual for selection criteria and evaluation of operating institutions’ and the ‘Manual for oper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are developed. The former includes the selection criteria, evaluation area,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index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and the latter includes the system of institutions and operating guidelines.

Fourth, law amendment was suggested to complete retraining program system. Qualification whose ‘retraining program’ was provided in articles of law in relevant area & system in relevant area was wholly examined. Based on this examination, articles related to retraining program was established i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and the details suggested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ule and statutes entrusted in the form of announcement. Designed in accordance with performance of such task in stages,

retraining program system was consulted and checked by relevant experts to enhance receptivity & acceptability. It was reflected in the final system by collecting the opinion of experts group.

It is expected in this study that retraining progra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would play an affirmative role in enhancing their job competence and talent as such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increases the necessity of retraining progra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as well as arranges & presents retraining program system. Fur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basic materials to push forward retraining program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Key words: Korean language teachers, retraining program, retraining, curriculum, promotion training, job training



## <개조식 요약문>

### I. 서론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연구의 개요를 밝히고 연구의 내용 및 수행 계획을 제시함. 국내외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교원들의 교수 능력 및 자질을 유지·함양·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어교원에게 필요한 전문 역량 향상뿐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체제를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함. 한국어교원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의 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세부 과업을 제도 설계의 기본 틀 마련, 운영기관 관리 기반 마련, 내용 개발 및 구체화로 나누어 진행하고, 제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함.

### II.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의 주요 내용

연수의 유형을 보수교육의 목적에 따라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로 분류하여 제안함. 승급 연수는 1급 승급, 2급 승급으로 구분하여 교육 대상을 설정하고 연수 과정을 구성함. 직무 연수는 책임 교원, 일반 교원, 미종사 교원, 특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 대상을 설정하고 연수 과정을 구성함.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설정함. 국내의 경우 한국어 정규과정 운영,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과정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강의 시설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국외의 경우 집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국외 거점 세종학당과 한국문화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수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함.

보수교육을 법에 의거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에 근거 규정

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형태로 제안함.

### Ⅲ.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승급 연수는 승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직무 연수는 국립국어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의무 또는 선택으로 하는 방안으로 설계함. 보수교육의 연수 대상과 연수 유형, 연수 내용, 연수 방식, 연수 참여, 연수 주기, 연수 장소를 포함한 교육 과정을 개발함.

운영기관 관련 지침에는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육의 목적, 보수교육 대상 및 등록,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방안, 보수교육 진행 방법, 교수·학습 및 평가, 위탁 운영기관의 요건 및 행정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의 필요성, 보수교육의 대상자, 보수교육의 형태, 보수교육의 방법, 의무 사항의 대상과 근거, 시간 및 주기, 면제 및 유효기간, 교과목 인정 범위, 교과목 설정, 교육 평가, 위탁 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Ⅳ. 보수교육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연구진, 교육을 받는 교사, 정책 지원을 하는 관련 부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준비 사항 등에 대하여 제언함.

# 〈 목 차 〉

<b>I . 서론</b> .....	<b>1</b>
1. 사업 개요 .....	1
1.1. 보수교육 제도의 필요성 .....	1
1.2. 보수교육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 .....	4
2. 사업의 주요 내용 .....	24
2.1. 세부 과업 .....	24
2.2. 제도안의 방향 .....	25
2.3. 과업 수행 체계 .....	29
<b>II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의 주요 내용</b> .....	<b>31</b>
1. 연수의 유형 .....	31
1.1. 승급 연수 .....	31
1.2. 직무 연수 .....	33
2.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	38
2.1. 국내 운영기관 .....	38
2.2. 국외 운영기관 .....	39
2.3. 보수교육위원회의 설치 .....	40
3. 법령 개정의 주요 사항 .....	40
<b>III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b> .....	<b>42</b>
1. 교육과정의 구성 .....	42
1.1.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	42
1.2. 교육 내용 .....	44
1.3. 교육과정 개요 .....	45
1.4. 보수교육 종류 .....	47

2. 보수교육 운영기관 관리 방안 .....	54
2.1. 운영기관 관리 방안의 개요 .....	54
2.2.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 .....	57
2.3. 보수교육 운영 지침 .....	69
3. 법령 개정안 .....	83
3.1. 법령 개정안 마련의 사전 검토 .....	83
3.2. 법령 개정안 제안의 전제 사항 .....	90
3.3. 국어기본법 등 법령 개정안 .....	97
<b>IV. 보수교육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b>	<b>110</b>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10
1.1. 교원들의 수요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 .....	110
1.2. 대면, 비대면 병행의 교육 시스템 확립 .....	111
2. 교원들의 적극적 참여 .....	111
2.1.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	111
2.2. 교육기관의 협조 유인책 마련 .....	112
3. 정책 관련 부처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 .....	112
3.1. 연수 교육 필요에 대한 적극적 홍보 .....	112
3.2.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	113
3.3. 연수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도화 .....	114
<b>참고문헌 .....</b>	<b>115</b>
<b>[부록 1] 유사 자격 제도(해외) .....</b>	<b>119</b>
<b>[부록 2] 유사 자격 제도(국내) .....</b>	<b>137</b>
<b>[부록 3] 설문조사지 및 분석 자료 .....</b>	<b>151</b>

[부록 4]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	180
[부록 5] 타 자격제도의 보수교육 법령 특징 .....	185
[부록 6] 제도안 자문의견(종합) .....	201
[부록 7] 법령 개정안 자문의견(종합) .....	210

## [표 목차]

<표 1>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사례 비교 .....	7
<표 2> 설문조사의 개요 .....	11
<표 3> 설문 문항의 구성 .....	12
<표 4> 연수의 구분 .....	13
<표 5> 교육 내용의 범주와 과목 예시 .....	15
<표 6> 보수교육 1차 제도안(요약) .....	21
<표 7>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별 승급 및 취득 요건 .....	26
<표 8>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 연구자의 업무 분장 .....	29
<표 9> 승급 연수의 대상 .....	31
<표 10> 승급 연수 과정의 구성 .....	32
<표 11> 직무 연수의 대상 .....	34
<표 12> 직무 연수 과정 .....	35
<표 13> 보수교육 승급 연수 대상 .....	43
<표 14> 보수교육 직무 연수 대상(1안, 2안) .....	43
<표 15> 보수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승급 연수, 직무 연수) .....	43
<표 16> 보수교육 교육과정 개요 .....	45
<표 17> 승급 연수 과정 .....	47
<표 18> 직무 연수 과정 .....	47
<표 19> 승급 연수 과정의 구분 .....	48
<표 20> 1급 승급 연수 교과목의 예 .....	49
<표 21> 2급 승급 연수 교과목의 예 .....	50

<표 22> 직무 연수(공통 교육) 책임 교원 연수 교과목의 예	52
<표 23> 직무 연수(공통 교육) 일반 교원 연수 교과목의 예	52
<표 24> 직무 연수(공통 교육) 미종사 교원 연수 교과목의 예	53
<표 25> 직무 연수(특별 교육) 교과목 예	53
<표 26> 선정 평가 방식(안)	60
<표 27> 재심사 평가 방식(안)	62
<표 28>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안)	65
<표 29>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안)	68
<표 30> 이수자 만족도 조사 항목(안)	69
<표 31> 유사 보수교육 기관의 운영 지침 구성 및 특징	70
<표 32> 보수교육 교육 시간(승급 연수)	74
<표 33> 보수교육 교육 시간(직무 연수)	74
<표 34> 비대면 교육 대체 증빙서류	80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	4
[그림 2]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 방법 .....	5
[그림 3] 보수교육의 유형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 .....	13
[그림 4] ‘급별 연수’, ‘승급 연수’ 의무화 적절성 종합 .....	14
[그림 5] 보수교육이 제도화될 경우 참여 의향 .....	15
[그림 6] 보수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	16
[그림 7]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세부 과업 .....	25
[그림 8] 한국어교원 자격의 등급 .....	25
[그림 9] 한국어교원 자격의 일반취득 .....	26
[그림 10] 사업단 조직도 .....	29
[그림 11] 보수교육 운영기관 관리 방안 개발 절차 .....	56
[그림 12]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절차 흐름도 .....	59
[그림 13] 재심사 평가 절차 .....	61
[그림 14] 재심사 평가 주기(안) .....	63
[그림 15] 보수교육 위탁 및 운영기관 선정 절차 흐름도 .....	81



# I. 서론

## 1. 사업 개요

### 1.1. 보수교육 제도의 필요성

#### 1)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필요성

-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교원들의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유지·함양·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수교육이란 정규교육 이외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평생교육으로,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공식적 교육을 마치고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법과 정책, 가치관과 윤리 등을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실시하는 일종의 재교육 활동이다. 관련 연구들에서는 현직 교사를 위한 보수교육을, ‘재교육’, ‘현직교육’, ‘교원연수’, ‘전문직 개발’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 한국어교원은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통해 부여하는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칭된다.<sup>1)</sup> 2005년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마련 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의 수는 2021년 현재 6만여 명에 이른다.<sup>2)</sup>
-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가 한국어교원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지 않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교과 영역과 다르게 국어기본법령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다.<sup>3)</sup>

1) 한국어교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 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교원의 자격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2) 국립국어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차 심사를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66,395명(21.11월 기준)이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개방형 자격취득 과정으로서 과정 이수, 경력인정, 검정 등 다양

- 이에 따라 학력과 경력 및 수업 방식 등의 편차가 커, 처음 자격을 취득한 한국어교원의 역량이 일정 수준의 균질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 교원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배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교원들의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기관 및 학계에서도 이미 양성된 한국어교원들의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행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은 각 교육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각 부처별(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 대상자의 제한, 양성 교육과의 유사성, 교육과정의 비일관성, 지속적 교육 가능성 등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이해영 외 2017가, 2017나; 이경수 외 2018; 김은호 외 2019 등).
- 다른 유사 자격증의 경우(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제도 운영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 관리와 능력 함양에 국가가 제도적 관리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사들의 질 관리와 능력 함양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제도와 운영기관 지침, 교육과정, 법령 등을 마련하여 보수교육 운영 체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 외에 기제안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여, 정책 방향의 변화에도 호환 가능한 보수교육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해야 하는 한국어교원에게 필요한 능력 향상뿐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경로로 교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18).

## 2)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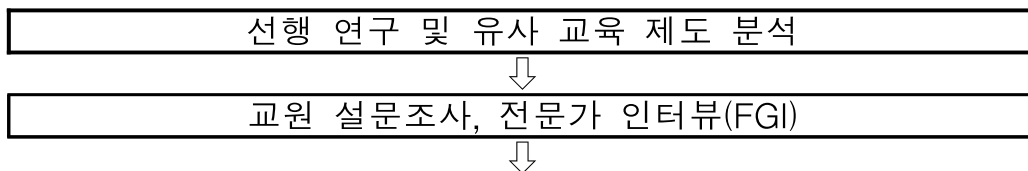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 투입된 한국어교원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한 공감 이루어졌다.
- 한국어교원의 양적 성장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직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정란 외 2017; 조현용·장미라 2018).
- 최근에는 한국어교원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 주장에서 나아가 자격제도 내에서의 한국어교원 보수교육과정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지순·최진희 2010; 김재욱 외 2012; 박지순·박정아 2013; 이승연·주경희 2013; 이진경 2014; 방성원 외 2015; 신은경 2015; 이관식 외 2015; 방성원 2016; 이해영 외 2016; 이해영 외 2017가, 2017나; 강소영 2019; 박민신·윤여탁 2019; 강소영 2020 등),
- 2010년대 들어 많은 연구들은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내에 한국어교원 재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이수율 승급 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강승혜 2011; 김정숙 2011; 최정순 외 2012; 박지순·박정아 2013; 강승혜 2015; 김민수 2015; 황용주 2015).
- 최정순 외(2012), 황용주(2015), 이해영 외(2016) 등은 제도권 내에서의 한국어교원 재교육 실시 및 승급요건 포함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최정순 외(2012)에서는 교원 양성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심화 및 승급을 위한 재교육 과정의 제도화 전반을 검토하였다.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 1,831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고, 이후 권역별로 네 차례의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 수렴된 의견들은 교원 처우 개선 필요, 수급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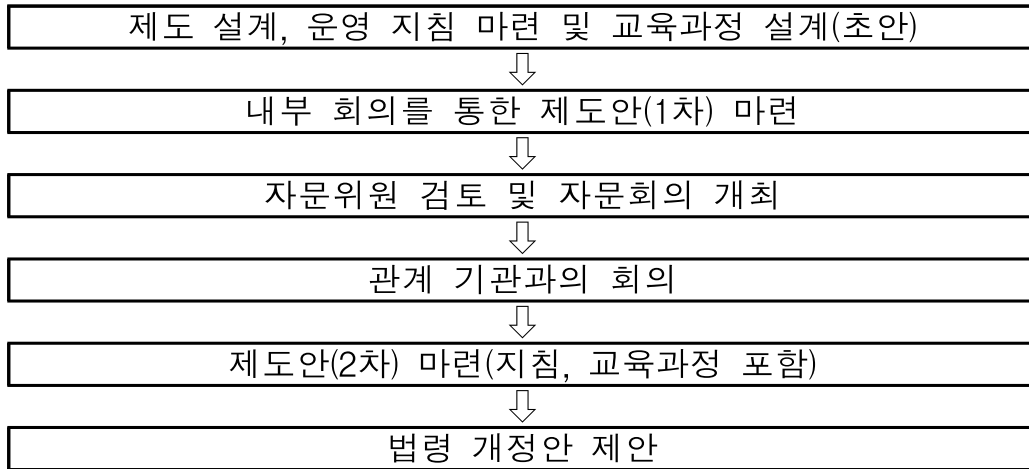
다로 인한 취업 곤란, 자격증 위계화와 취득 조건의 차별화, 질적 강화를 위한 재교육 필요 등이다.

- 박지순·박정아(2013)은 한국어교원의 교육 능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승급 제도를 통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이후의 직무 교육은 경력이나 연수 회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김선정(2010)이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위한 40시간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영 외(2016)는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위해 직무 연수, 승급 연수, 한국어교원 전문 연수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수 운영 방안, 수료자 관리 방안, 연수회 평가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한국어교원 재교육 연수는 국립국어원이 주도적으로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 김선정(2010), 최정순 외(2012)를 기점으로 10여 년이 지난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10여년 전에 연구자와 한국어교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문제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원의 질적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설계하되, 자격제도의 전문화와 급별 처우를 개선하는 법제화 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1.2 보수교육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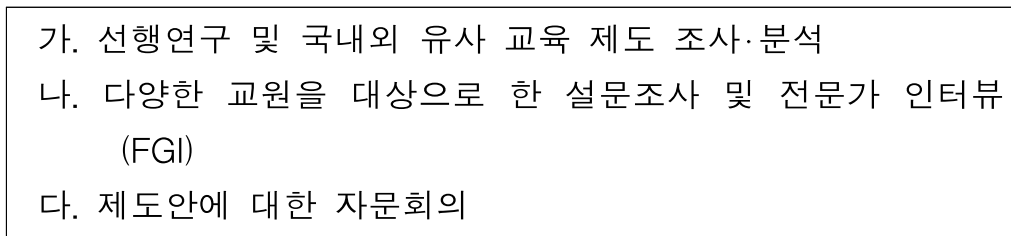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 방법과 절차로 수행되었다.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 그중 보수교육 제도 설계를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2]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 방법

#### 1) 유사 교육 제도 조사·분석<sup>4)</sup>

- 제도 설계의 기본 틀 마련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 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 방식, 지원 사항 등과 관련된 현황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 법령의 조문에 “보수교육”이 명시되어 있는 자격 및 관련 분야의 제도 전반 및 국외 유관 자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보수교육 제도 도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선행연구는 1.1.에 요약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유사 교육 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만 기술하기로 한다. 유사 교육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부록 2] 참고.

- 국내외 주요 유사 자격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는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사례 비교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	국내(국가자격 제도)						국외(자국어 교원 자격제도)				
		중등교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문화예술 교육사	사회복지사	독일	영국·미국 (TESOL)	일본	중국	프랑스
법적근거	국어기본법	초·중등교육 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 법	출입국관리 법	문화예술교 육지원법	사회복지사 업법	독일 법령 및 독일 문화원 본부 내규	-	-	국제한어교 사표준(2012)	-
자격체계 (등급)	1, 2, 3급	1, 2급	1, 2급	1, 2, 3급	-	1, 2급	1, 2, 3급	-	Certificate, Diploma, Master(석사)	-	-	-
자격 취득방식	학위, 비학위, 승급	학위과정, 승급	학위과정, 승급	학위, 비학위, 승급	학위과정	등급별 교육과정 이수	학위과정, 승급	교육과정 이수	학위, 비학위	학위, 비학위, 자격시험	자격시험	교육과정 이수, 자격시험
승급요건	• 1급: 5년, 2,000H • 2급: (학위) 3년, 1,200H (비학위) 5년, 2,000H	• 1급: 경력 3년, 재교 육과정	• 1급: 경력 3년, 재교 육과정	• 1급: 경력 3년, 승급 • 2급: 경력 2년, 승급 과정	-	• 1급: 경력 5년, 1급 승급 교육 과정 (직무 역량 3과목 90시간, 예 술교육 전 문성 2과목 60시간)	• 1급: 국가 시험, 실무 경력 3년,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 위 취득 • 2급: 3급 취득 후 실 무 경력 3 년 이상, 사회복지학 학석박 학 위 취득, 양 성 과 정 수료	-	-	-	-	-
거버넌스 (참여 주체별 역할)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국립국어원 /산업인력관리공 단(3급)	(총괄) 교육부, (시행) 출신 대학의 장, 시·도교육감	(총괄) 교육부, (시행) 출신 대학의 장, 시·도교육감	(총괄) 보건복지부, (시행) 한국보육진 흥원	(총괄) 법무부 (시행) 한국이민재 단	(총괄) 문화체육관 광부, (시행)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 원	(총괄) 보건복지부 (시행) 한국사회복 지사회협회	(총괄) 독일 문화부 (시행) 독일 문화원	(시행) 인증 기관 다양함	(총괄) 일본 문부성 (시행) 일본국제교 육지원협회	(총괄 및 시행) 중국 교육부	(총괄 및 시행) 알리앙스 프랑세즈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	국내(국가자격 제도)						국외(자국어 교원 자격제도)				
		중등교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문화예술 교육사	사회복지사	독일	영국·미국 (TESOL)	일본	중국	프랑스
응시자격 (등급별 자격요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초·중등교육 법 제21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영유아보육 법 제21조제2항	출입국관리 법 제39조제1항, 제3항	문화예술교 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 1항	사회복지사 업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현지어 및 독일어 사용 국적, C1 이상 독일어 능력 자격증 소유자	교육기관마 다 상이.	-	-	-
검정방법	무시험	무시험	무시험	무시험	무시험	무시험	무시험	과정수료, 검정형	과정수료	무시험(학위, 비학위), 검정형	검정형	과정수료, 검정형
자격 취득현황	2006 ~ 2021.1차 66,395명 <sup>5)</sup>	2005 ~ 2019 39만 명 <sup>6)</sup>	2005 ~ 2019 26만 명 <sup>7)</sup>	2005 ~ 2021 148만 명 <sup>8)</sup>	-	2013 ~ 2021. 2차 25,367명 <sup>9)</sup>	2006 ~ 2021 129만 명 <sup>10)</sup>	-	-	-	-	-
연수제도	-	(직무교육) 교원 연수 (승급교육) 정교사 및 수석교사/교 원)감 90~135H, 교(원)장 180~270H	(직무교육) 교원 연수 (승급교육) 정교사 및 수석교사/교 원)감 90~135H, 교(원)장 180~270H	(직무교육) 3년마다 40H, (승급교육) 80H	(직무교육) 1년마다 15H	(승급교육) 150H	(직무교육) 1년마다 8H(등급별, 필수), 1년마다 12H(영역별, 필수)	(직무교육) 독일 및 현지 연수(필수), 온라인 연수(자율)	(직무교육) 국제 TESOL 협회 온라인 재교육 과정(자율)	(직무교육) 관리자 코스, 지도자 코스(자율), 신임 주임교원 연수(자율)	(직무교육) 자격 갱신을 위한 계속교육( 필수), 해외 중국어교사 중국 연수(자율), 전문가그룹 해외 교육연수(자율)	-
학위과정 이수학점	45학점	50학점	50학점	51학점, 실습 240H	학사 24학점, 석박사 15학점	학위 전공자 2급 교육과정 150H (직무역량)	학사 42학점, 석박사 24학점	-	교육기관마 다 상이	45학점	-	-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	국내(국가자격 제도)						국외(자국어 교원 자격제도)				
		중등교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문화예술 교육사	사회복지사	독일	영국·미국 (TESOL)	일본	중국	프랑스
비학위 교육시간	120H	-	-	이론 975, 실습 240H	-	고졸 및 비전공자 2급 교육과정 600H (직무역량, 예술전문성)	-	연수과정 75주, 교육실습 1년	CertTESOL 130H CELTA 120H	420H	-	480H

- 5) 2021. 11. 기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s://kteacher.korean.go.kr/home.do>) 참조  
6) 2019. 12. 31. 기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참조  
7) 2019. 12. 31. 기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참조  
8) 2021. 11. 30. 기준, 한국보육진흥원(<https://www.kcpi.or.kr>) 참조  
9) 2021. 12. 10. 기준,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https://acei.arte.or.kr>) 참조  
10) 2021. 11. 30.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참조

-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유사 자격들은 대부분 기본법 체계 내에서 보수교육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영미권과 유럽은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단체나 대학의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사의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공자학원본부 및 국가한반을 통해 국제한어교사표준(2012)을 작성하여 직접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 현행 한국어교원과 관련한 법령<sup>11)</sup>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러나 기본법 내에서 운영하는 여타 자격 제도들이 모법에 보수교육의 의무 시행을 명시하고 정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한국어교원의 경우 자격 소지자의 실무능력 제고와 자격 취득 후의 경력단절자, 업무영역에 따른 직무교육, 경력 발전과 관리직급을 위한 승급교육 등 자격 유지와 관련한 어떠한 보수교육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보수교육에 대한 해외의 사례나 유관 자격제도의 법령 현안을 살펴볼 때, 한국어교원을 위한 보수교육은 법적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자격 소지자의 질적 수준 관리와 현황 파악에 곤란이 있는 실정이다.
- 단순 자격 소지만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준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격 수준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자나 비경력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수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배경이 다양한 한국어교원의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들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육목표를 설정할지

---

11) 현행 한국어교원과 관련한 법령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와 제3항의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에 상세한 교원의 자격 심사 관련이 마련되어 있다.

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자격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하거나 보수교육에서 현장 적응성을 높여 자격 보유 자체가 의미 있도록 해야 한다.

## 2)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sup>12)</sup> 및 전문가 인터뷰<sup>13)</sup>

### (1) 설문조사 결과

#### - 설문 개요

-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한국어교원의 요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입하는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다양한 교원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제도 설계를 위하여 예비교원, 현직 교원, 미종사 교원, 한국어교육 기관 관계자로 구분하여 보수교육 관련 요구를 파악하였다.
- 설문조사는 국내 및 국외 한국어교원 1,289명을 대상으로 약 3주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국내 및 국외 한국어교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응답자 수	1,289명
조사 기간	2021년 6월 7일 ~ 6월 21일

12)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고.

13)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4] 참고.

○ 설문 문항의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항목	문항 수
I. 설문 대상자 정보	성별	15
	연령	
	유형 구분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최종 학력	
	한국어교육 경력	
	교원연수 참여 여부	
	재직 기관	
II. 교육과정 운영	각 연수 제도의 적절성	15
	‘급별 연수’, ‘승급 연수’ 의무화 적절성	
	보수교육 참여 의향	
	선호하는 교육 수강 방법	
	선호하는 대면 교육 방법	
III. 교육과정 구성	선호하는 교육 수강 형태	17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교육 내용	
	영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기관별 별도의 보수교육 필요성	

○ 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결과는 SPSS 2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이를 토대로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교차 분석 및 상관성 분석,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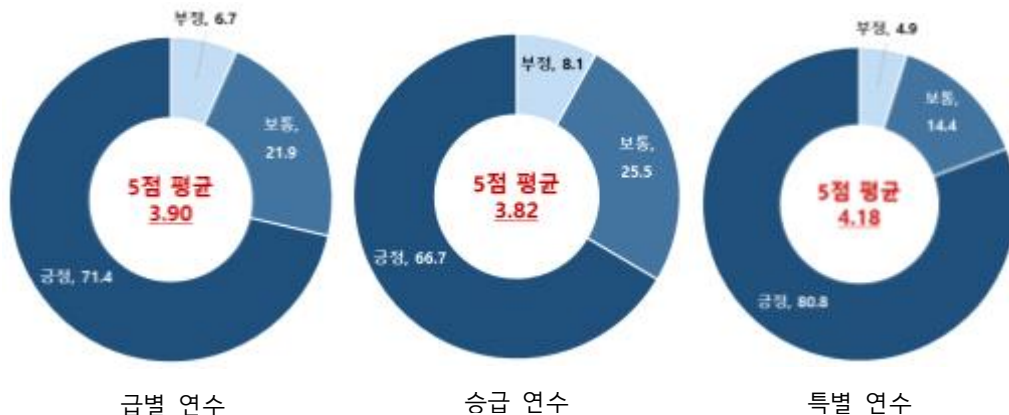
○ 먼저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의 유형을 ‘급별 연수<sup>14)</sup>(직무 연수)’, ‘승급 연수’, ‘특별 연수’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연수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14) 연구 초기에는 1, 2, 3급에 따라 교육 연수를 하는 안을 마련하여 설문조사에서 급별 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한국어교육 현장을 반영하여(급별로 임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이후 직무 연수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표 4> 연수의 구분

1) 급별 연수	각 급의 수준 유지를 위한 교육적 자질 및 교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승급 연수	승급(3급→2급, 2급→1급)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 및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3) 특별 연수	교수 환경, 대상 학습자 변동 등에 대한 사유로 새롭게 필요한 능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예) KSL 교원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 교육 등

○ ‘급별 연수의 필요성’(직무 연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정도는 71.4%로 확인되었으며, ‘승급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66.7%로 나타났다. ‘특별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정도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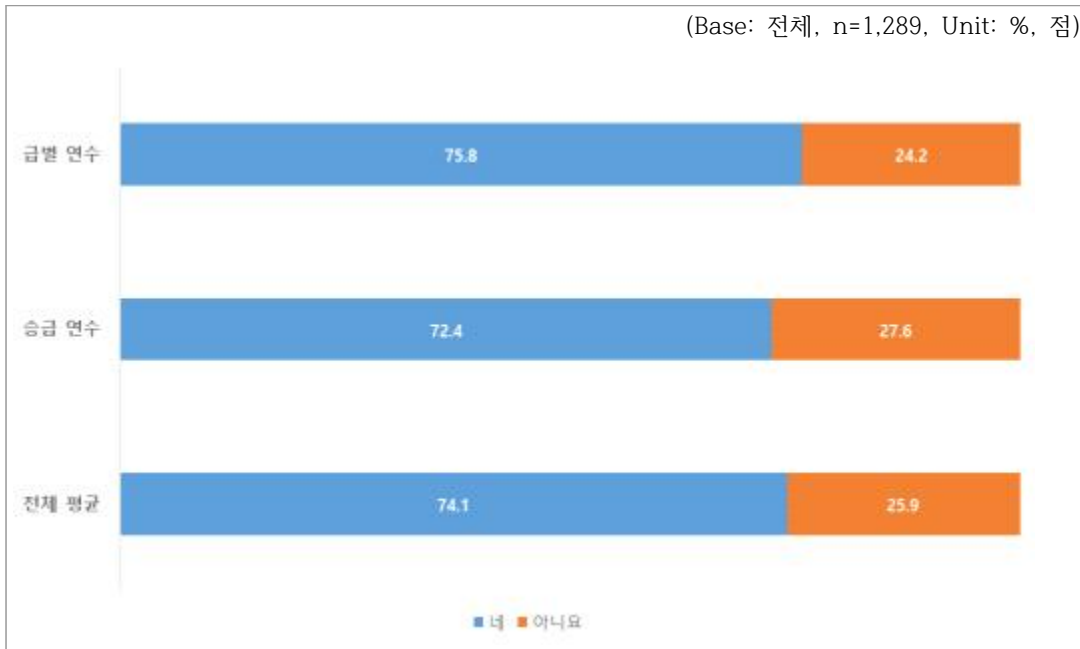


[그림 3] 보수교육의 유형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

○ 위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교원들은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별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 목적의 연수보다는 학습자군, 학습 목적에 따른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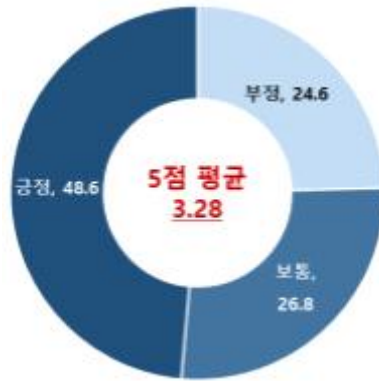
○ 이어서 ‘급별 연수’, ‘승급 연수’의 의무화 적절성의 종합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별 연수’의 의무화 적절성에 대한 찬성의견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승급 연수’의 의무화 적절성도 72.4%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급별 연수’, ‘승급 연수’ 의무화 적절성 종합

- 한국어교원 대상 보수교육이 제도화될 경우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특히 자기 부담금이 있는 연수라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물었다고 할 수 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정도는 48.6%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 평균은 3.28점이었다. 보통은 26.8%, 부정 응답은 24.6%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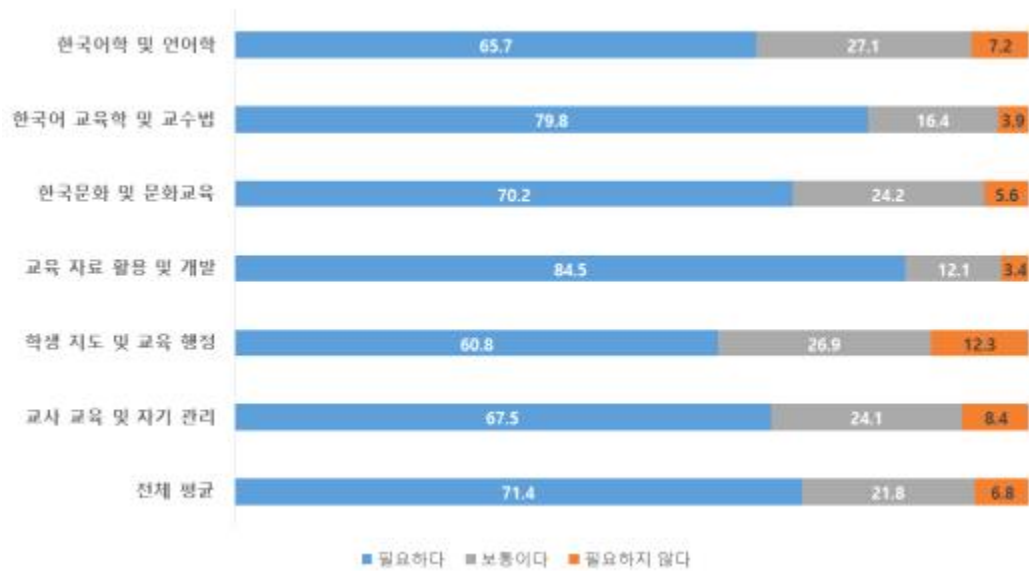
[그림 5] 보수교육이 제도화될 경우 참여 의향

-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설문은 교육 내용을 크게 여섯 개의 대범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5> 교육 내용의 범주와 과목 예시

대범주	과목 예시
1) 한국어학 및 언어학	음운론, 어휘론, 문법론, 대조언어학 등
2)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교육과정론, 평가론, 발음교수법, 문법교수법 등
3)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문화교육론, 한국 현대 문화, 한국 문학 등
4)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교재 활용법, 교육 자료 작성, 부교재 개발 등
5)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생활 상담, 비자 발급 등
6)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원의 전문성과 정체성 등

- 그 결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은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8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은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60.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보수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두 가지의 교육 내용을 보면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인데 이 둘은 모두 한국어 교수·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수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교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 전문가 인터뷰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구체화를 위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 전문가(6명)와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자(2명), KSL 담당자(2명), 미국 한글학교 교사(2명), 세종학당 교육 담당자(1명)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보수교육 제도 운영, 보수교육 대상, 교육과정 목적에 대한 공감 여부와 기대 효과, 부작용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sup>15)</sup>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5)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4] 참고.



#### 가. 보수교육 제도 운영

- 모든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KSL, 사회통합 프로그램 소속 담당자들은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학습자 수가 많은 서울 소재의 규모가 큰 대학 부설 기관을 제외하고는 재정적 지원, 교육 지침 부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원 재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수교육 운영 지침 구성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연간 개최 횟수와 시기, 교육의 주제, 교원의 요구나 정책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며,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 보수교육 운영 및 주관 기관에 대한 의견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교육의 대상이나 내용에 차별을 두고 교수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의 재교육은 국립국어원이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원, 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지역의 대학 기관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세종학당 등의 기관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 특히 한국어교육의 경우 현장에서의 문제, 학습자 및 기관 형태, 교원 양상이 다른 교육 분야에 비해서도 매우 다양하므로.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나. 보수교육 대상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격증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보수교육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수교육은 현직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충 교육을 의미하므로, 무경력 교원이 보수교육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 교원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대학 기관 교원들은 각 대학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국내 KSL/사회통합기관 현직 교원, 국외 정부 기관 교원, 한글학교 교원이 보수교육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다. 교육과정 및 연수 의무화

- 본 연구팀이 제시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직무 연수의 경우 현장에서 교원의 급별 직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 실행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 또한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대체 강의의 어려움, 금전적 지원 부재 등의 이유로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이 없으면 제도의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있었다.
- 연수의 의무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의무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반대 의견도 많은 편이었다.
- 의무화에 찬성을 하는 경우에도 이수 후 혜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 내용과 체계화에 고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다.
- 의무화에 반대를 하는 경우 한국어교원은 자격증 승급이 되어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실질적인 교원 역량 강화가 가능한 교육 내용과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다면 의무화하지 않아도 적극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보수교육 이수 시 교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기관에서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교원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보수교육 내용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했으나 방향은 일치했다. 교원 양성과정과 겹치지 않는 미래 지향적이고 현장 중심의 수업 내용 구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 운영상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블렌디드 형식으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지방 거점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라.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공감 여부와 기대 효과 및 부작용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목적에 대한 공감 여부와 기대 효과 및 부작용에 관한 질문에도 다양한 응답을 청취할 수 있었다. 공통적인 의견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의 질에 초점을 두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교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라는 보수교육의 본래 취지가 제도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3) 시사점

- 교원 및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한국어교원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문제에 대처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과정은 기존의 양성과정 교육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이론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 경험을 지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과정과 내용은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실제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의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모두 7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연수의

의무화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기는 했으나 반대 의견과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도 지역에 따라 강사료 차이가 크고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등 교원의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직무 연수를 의무화할 경우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 기관에서의 비협조 등 다양한 문제가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처럼 고용 기관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등 교육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제도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승급 연수와 관련하여 승급을 한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향후 승급에 따른 대우 향상 대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자문회의

- 사업팀이 제안한 1차 제도안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및 교육현장 관련자 40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운영,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안된 보수교육 1차 제도안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보수교육 1차 제도안(요약)

항목	내 용		
연수 대상	승급 연수 대상	[1안] •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원하는 한국어교원 •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을 원하는 한국어교원 [2안] •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원하는 한국어교원	
	직무 연수 대상	• 책임 교원: 한국어교육 기관의 기관 운영자 및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교원 • 일반 교원: 외국인 학습자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교원 • 미중사 교원: 경력 단절 한국어교원 또는 미취업 교원	
연수 유형	승급 연수	공통 교육	[1안] • [2급→1급] 승급 연수 • [3급→2급] 승급 연수 [2안] • [2급→1급] 승급 연수
	직무 연수	공통 교육	• 책임 교원 직무 연수 • 현직 일반 교원 직무 연수 • 미중사 교원 직무 연수
		특별 교육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직무 연수 •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직무 연수 •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직무 연수 •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직무 연수
연수 내용	교육 내용	• 한국어 지식 교육 • 언어 기능 교육 • 한국 문화 교육	
	교육 방법	• 언어 교수법 • 새로운 교수 방법 • 교육 자료 개발 • 평가 문항 개발 및 채점 • 수업 컨설팅	
	교육 행정	• 학생 지도 및 상담 • 교원 교육 및 관리 •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행사 기획 및 운영	
연수 방식	승급 연수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직무 연수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연수 참여	승급 연수	의무	
	직무 연수	[1안] 의무(공통 교육), 선택(특별 교육) [2안] 선택(공통 교육, 특별 교육)	
연수 주기	승급 연수	일시적(집합 교육, 실시간 비대면 교육)/상시적(비대면 영상 교육) 병행	
	직무 연수	일시적(집합 교육, 실시간 비대면 교육)/상시적(비대면 영상 교육) 병행	
연수 장소	국내	국내 거점 기관	
	국외	국외 거점 기관	

- 자문회의에서는 <표 6>의 보수교육 제도안 외에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 ‘법령 개정안’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포함하였다.<sup>16)</sup> 아래에 이에 대한 주요 자문 의견을 교육과정, 교과목,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법령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1) 교육과정

- 승급 연수 안에 대한 의견은 ‘1안(2급→1급 승급, 3급→2급 승급)’을 과반수가 지지하였다. 현재 3급이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급, 2급으로의 승급 시 모두 보수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제화 과정에 많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 직무 연수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 연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의무 연수로 마련해야 제도가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자문위원이 공감하였으나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직무 연수를 선택 사항으로 두되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특별 연수와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이미 구체적인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특별 연수를 제도권 안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 구축에 있어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특별 연수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직무 연수 안에 특별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였다. 특별 교육은 새로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원에게 학습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전문적 재교육과는 차별화된다.

16) 자세한 내용은 2장과 3장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2) 보수교육 교과목

- 교과목과 관련하여서는 형식적인 보수교육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교수법,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어떤 내용을 교육할지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
- 직무 연수 교과목 간의 위계화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역시 본 과업에서 중점을 둔 내용이나 실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위계화를 위한 내용 연구가 필요하다.

## (3)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 양질의 보수교육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운영기관을 확보하고, 운영기관마다 균질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와 관련된 의견으로 거점 기관의 개념과 범위, 수 등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체 점검표의 문항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 대부분의 자문위원은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센터’ 등 일원화된 교육 기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바, 법령에서 보수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조항에 대한 제시가 동반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 (4) 법령

### ① 자격 취소 및 정지 규정

- 법령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필수성과 효용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건, 나아가 한국어교원 신분에 대한 확립과 유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자격 취소나 정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조항을 실제 적용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교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② 연수 면제

- 연수 면제 조건에서 ‘관련 전공’, ‘관련 전공 이수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제도 시행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 그 외에 ‘보수교육에 대한 자원(국가/개인/기관 부담)’과 ‘보수교육 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을 법제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지위 보장과 보수교육 이수에 뒤따르는 다양한 혜택 등이 합의가 될 때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2. 사업의 주요 내용

### 2.1. 세부 과업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세부 과업과 관련법 개정안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보수교육 제도 설계: 유사 교육제도 조사 및 분석, 다양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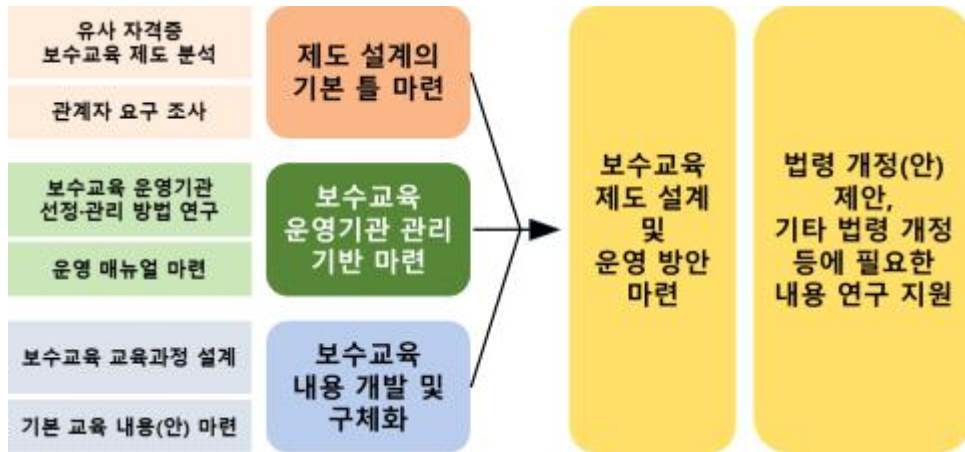
나.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침 작성<sup>17)</sup>

다. 보수교육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내용 마련

- + 보수교육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보수교육 제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 법령 개정에 필요한 내용 조사를 수행한다.

17) 본 연구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 매뉴얼 작성 이전에 제도 도입 시 갖추어야 할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업의 방향을 잡았다.





[그림 7]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세부 과업

## 2.2. 제도안의 방향

### 1)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의 등급은 아래 [그림 8]과 같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그림 8] 한국어교원 자격의 등급<sup>18)</sup>

18) 국립국어원(2018),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 최초 자격 취득 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현행 자격 등급별 승급 및 취득 요건은 다음 <표 7>, [그림 9]와 같다.

<표 7>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별 승급 및 취득 요건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급 취득자가 5년 이상, 2,000시간 경력</li> </ul>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 분야 주전공, 복수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li> <li>• 3급 취득자가(학위과정(부전공)) 3년 이상 1,200시간 이상</li> <li>• 3급 취득자(비학위과정)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li> </ul>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 부전공 필수학점 취득 학사</li> <li>•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검정시험 합격자</li> </ul>



[그림 9] 한국어교원 자격의 일반취득<sup>19)</sup>

- 2급 자격은 학위과정(주전공, 복수전공)을 통해서 취득 가능하며, 3급 자격은 학위과정(부전공)을 통한 취득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sup>20)</sup>
-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방식은 교육과정을 통한 과정이수형 방식,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연계된 검정형 방식, 현장경력을 인정하는 경력인정형 방식 등 다양한 자격취득 경로를 가지고 있다.
- 자격 부여 절차는 해당 취득방식에 따라 국립국어원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개인별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자격을 발급하는 형식이다.
- 이 중, 과정이수형 방식은 한국어교원 양성의 주된 방식으로 여겨지며,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한국어교원 취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와 보수교육 제도의 필요성

### ① 자격 취득자의 급증과 교원의 질 관리

-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자의 급증에 따라 노동시장에 과다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학계 및 현장에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질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후에도 교원의 전문성 유지 및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강승혜, 2011; 김정숙, 2011; 최정순 외, 2012; 박지순·박정아, 2013; 강승혜, 2015; 황용주, 2015; 김민수, 2015; 강승혜 외, 2017).
- 이에 따라 교원 자격 취득 후 교원의 질과 교육 능력 함양을 위하여

19)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home.do>)

2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어교원의 의무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교원의 질 관련, 교원의 교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법 연구 및 실습 기간 부여가 필요하다.

## ② 교원 자격의 등급과 직무에 대한 검토

- 일반적으로 자격의 등급은 자격보유자의 업무에서의 역할 차이로 구분된다. 한국어교원 1급, 2급, 3급 간 역할과 직무에 차이가 있는지, 요구되는 역량이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급별 자격증이 교육 현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급에 따른 교원의 교육 역량과 행정 능력 등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급별 직무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안해야 한다.

## ③ 양성과정과 차별화되는 보수교육 과정

-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양성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둔 보수교육 제도 및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 따라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재교육(보수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한국어교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3)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 제도의 제안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한국어교원 승급 제도는 강의 경력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하여 급별로 다른 업무나 임무를 부여받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 승급 연수를 통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면 현재 강의 경력만으로 승급을 시키는 제도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급에 따른 대우를 상향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 나날이 변화되는 교육 환경과 다양한 변인의 학습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연수가 필요하다. 문제는 직무 연수를 교원들의 선택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같이 의무화할지가 앞으로의 숙제다.

### 2.3. 과업 수행 체계

- 본 연구의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6인, 연구보조원 5인으로 구성되며 [그림 10]과 같다. 연구진별 업무 분장은 <표 8>과 같다.



[그림 10] 사업단 조직도

<표 8>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 연구자의 업무 분장

성명	직급	담당 업무 및 연구 분담	
양명희	책임 연구원	- 전체 사업 총괄 - 각종 회의 주재 - 공청회 개최 준비	- 자문위원, 검토위원 선정 및 섭외 - 최종 보고서 작성
김은호	공동 연구원A	- 유사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심층 인터뷰 계획 및 질문지 작성 - 제도 설계를 위한 설문조사 내용 구성 및 조사, 분석	- 공청회 개최 준비 - 설문조사 진행(총괄) - 자문 및 검토 의뢰(설문조사) - 최종 보고서 작성
안정호	공동 연구원B	- 유사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심층 인터뷰 계획 및 질문지 작성 - 제도 설계를 위한 설문조사 내용 구성 및 조사, 분석	- 설문조사 진행 - 자문 및 검토 의뢰(설문조사 총괄) - 최종보고서 작성

유해준	공동 연구원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교육과정)</li> <li>- 보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안 마련(공통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및 검토 의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li> <li>- 최종 보고서 작성</li> </ul>
이영숙	공동 연구원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교육과정)</li> <li>- 보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안 마련(특별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및 검토 의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li> <li>- 최종 보고서 작성</li> </ul>
조윤정	공동 연구원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지침)</li> <li>- 보수교육 운영기관 기준 및 평가 연구</li> <li>- 보수교육 지침 작성(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평가용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및 검토 의뢰(운영기관 지침)</li> <li>- 최종 보고서 작성</li> </ul>
이훈	공동 연구원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보수교육 제도의 법령 검토</li> <li>- 국어기본법 검토 및 개정안 마련</li> <li>- 보수교육 지침 작성(운영기관의 운영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및 검토 의뢰(법령)</li> <li>- 법률 지원 내용 마련</li> <li>- 최종 보고서 작성</li> </ul>
김혜원	연구 보조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조사 및 서류 작업</li> <li>- 설문조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처리</li> <li>- 최종보고서 작성 보조</li> </ul>
신선혜	연구 보조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조사</li> <li>- 설문조사 지원</li> <li>- 자문 및 검토 작업 관리(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분석 의뢰</li> <li>- 최종보고서 작성 보조</li> </ul>
장지수	연구 보조원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조사</li> <li>- 자문 및 검토 작업 관리(교육과정)</li> <li>- 공청회 개최 준비 및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관리</li> <li>- 최종보고서 작성 보조</li> </ul>
김보현	연구 보조원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조사</li> <li>- 자문 및 검토 작업 관리(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관리</li> <li>- 최종보고서 작성 보조</li> </ul>
류다정	연구 보조원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조사</li> <li>- 자문 및 검토 작업 관리(법령)</li> <li>- 공청회 개최 준비 및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및 행정 처리</li> <li>- 최종보고서 작성 보조</li> </ul>

## II.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의 주요 내용<sup>21)</sup>

### 1. 연수의 유형

#### 1.1. 승급 연수

- 승급 연수는 한국어교원 3급을 가진 자가 2급으로, 2급을 가진 자가 1급으로 승급을 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받는 연수로, 2급으로의 승급을 위한 연수를 2급 승급 연수, 1급으로의 승급을 위한 연수를 1급 승급 연수라 지칭한다.
- 제도안의 승급 연수의 대상은 다음 <표 9>와 같이 정하였다.

<표 9> 승급 연수의 대상

교육 구분		교육 대상	비고
승급 연수	1급 승급 연수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한 자로 한국어교육 경력 2000시간이 경과한 자	승급하고자 하는 자
	2급 승급 연수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한 자로 한국어교육 경력 2000시간이 경과한 자	승급하고자 하는 자

- 1급 승급 연수의 대상은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교사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2,000시간이 경과한 자로, 이는 기존의 1급 승급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이다.
- 2급 승급 연수의 대상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교사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2,000시간이 경과한 자이다. 기존의 2급 승급 기준은 학위 취득에 의한 3급 자격 취득자와 학위 취득 외의 요건에 의한 3급 자격 취득자를 달리한다.<sup>22)</sup>

21) 이 장은 3장에서 보수교육 제도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하기 전에 제도안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참고한 기준과 구성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2) 현 2급 승급 기준은 학위 취득에 의한 3급 취득자가 '3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강의', 학위 취득 외의 요건에 의한 3급 취득자가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였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모두 만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다. 부전공을 통해 3급을 취득한 자와 학위 취득 외의 요건에 의해 3급을 취득한 자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sup>23)</sup> 부전공을 통해 3급을 취득한 자와 학위 취득 외의 요건에 의해 3급을 취득한 자가 동일 자격 요건으로 1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승급 연수 과정의 교과목 구분과 교육 시간은 다음 <표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0> 승급 연수 과정의 구성

2급 승급 연수		1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20시간	60시간	2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 2급 승급 연수와 1급 승급 연수 모두 80시간 이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중 필수 과목 이수를 20시간, 선택 과목 이수를 60시간으로 한다.
- 승급 연수 과정의 이수 시간은 유사 제도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다. 현재 유치원·초·중등 교사의 승급 연수 시간<sup>24)</sup>은 90시간, 180시간으로 상당히 높으며, 한국어교원과 같이 2급, 1급 승급 연수가 있는 보육교사의 승급 이수 시간은 80시간이다.<sup>25)</sup> 유치원·초·중등 정교

23)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학점짜리 교과목을 12개 정도 듣게 된다. 15주를 기준으로 강의시간을 합산하면 540시간으로 3급 양성과정의 120시간에 비하면 4배가 넘지만 양성과정 이수자들은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자격 취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승급 대상자의 강의 경력은 승급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자격 취득 경로에 따라 강의 경력 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4) 본 연구의 승급 연수와 같은 개념인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자격 연수 이수 기준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원감 등은 90시간, 교장, 원장은 180시간 이상의 이수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 교직원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에 대한 과목인 기본역량 과목이 30~50%, 전문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과목인 전문역량 과목이 50~70%이다.

총시수	교원 자격	총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기본역량	전문역량
90~135시간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원감	30~50%	50~70%
180~270시간	교장, 원장		

25) 보육교사 승급 이수 시간은 2급 승급과 1급 승급 모두 80시간으로 동일하다.



사보다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한국어교원의 연수 시간을 9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승급 이수 시간을 참고로 이수 시간을 정하였다.

- 필수 과목 이수 시간은 정교사의 30%보다 다소 낮은 25%(20시간)로, 선택 과목 이수 시간은 나머지인 75%(60시간)로 설정하여 교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강의 부담이 큰 교원들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은 비대면으로 상시 개설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수한 후 필수 과목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를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최종 승급 여부는 전체 이수 시간과 필기 시험으로 정한다. 2급 승급과 1급 승급 모두 출석률 100%, 필기 시험 80점 이상<sup>26)</sup>을 승급 기준으로 한다.
- 다만 2급 승급 연수의 경우 1급 승급 연수와의 차별화, 연수 운영의 수월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 시간을 90%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1.2. 직무 연수

- 직무 연수는 한국어교원으로서 교육 및 행정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연수이다.
- 직무 연수의 대상은 다음 <표 11>과 같이 분류한다.

---

26) 이는 보육교사 1급 승급 기준을 참고로 설정하였는데 보육교사 1급 승급 연수의 경우 출석률 100%와 시험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승급이 인정된다.

<표 11> 직무 연수의 대상

교육 구분		교육 대상	비고
직무 연수	책임 교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li> <li>소속기관에서 책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할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책임 교원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li> </ul>	매 2년마다
	일반 교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교원</li> <li>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교육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li> </ul>	매 2년마다
	미종사 교원 연수	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자로, 현재 한국어교육기관에 속하지 않은 경력 단절 교원 또는 미취업 교원	매 2년마다
	특별 교육(선택)	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한국어교원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먼저 직무 연수의 대상은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한다. 다만 특별 연수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 교원의 소속 기관장, 직무 연수 운영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자격증 미소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임 교원 연수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sup>27)</sup> 대상 연수로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교원 연수는 연수 신청 시점에 한국어교육기관에서

27) 본 연구에서 책임 교원은 교육뿐 아니라 행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급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급수에 따른 직무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 책임 교원과 일반 교원을 구분하여 선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추후 보수교육 제도 시행 단계에서 직무 연수의 종류와 대상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직 하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연수이다.

- 미종사 교원 연수의 경우는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기관에 취업하지 않은 무경력 교원, 현재 기관에 속하지 않은 경력 단절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연수이다.
- 특별 교육은 모든 직무 연수의 선택과목으로 특정 학습 목적,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준비하는 교원을 위한 기본 교육이다.
- 교육의 신청에 있어서, 책임 교원 연수는 소속기관에서 책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할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책임 교원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로 설정한다. 책임 교원 연수는 현재 실질 책임 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해당 업무를 부여할 인원을 교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sup>28)</sup>
- 일반 교원 연수의 대상자는 교육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로 설정한다. 그외 기관에 소속된 교원 일반에 대해 해당 주기 연수 대상자를 추려 신청하고 기관 신청 대상자가 아닌 미종사 교원은 미종사 교원 연수를 개별 신청한다.
- 직무 연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12> 직무 연수 과정

공통 교육					
책임 교원 직무 연수		일반 교원 직무 연수		미종사 교원 직무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28)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의 현황, 유관 보수교육 제도 검토 결과 및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하여 책임 교원 연수는 기관의 필요에 의해 신청되는 연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원과 교육 기관의 배경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교원의 자격 급수에 따른 직무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기관의 추천 없이 강의 경력을 기준으로 책임 교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직무 연수의 주기를 매2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연수 신청 대상의 최소 교육 경력을 만2년으로 설정하여 교육 경력 3년차가 되었을 때 직무 연수를 받도록 제안하였지만 보수교육 대상자를 강의 경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은 제도 시행 단계에서 급수의 직무와 함께 명확한 규정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16시간	16시간	16시간
+		
<b>특별 교육</b>		
결혼이민자 대상 직무 연수		
이주노동자 대상 직무 연수		
중도입국자녀 대상 직무 연수		
재외동포 대상 직무 연수		
⋮		
선택 과목		
6시간(추가 수강 가능)		

- 공통 교육의 경우 책임 교원, 일반 교원, 미종사 교원 모두 16시간 이수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각각 50%로 설정하여 8시간씩 이수하도록 한다.
- 특별 교육은 결혼이민자 대상 직무 연수, 이주노동자 대상 직무 연수, 중도입국자녀 직무 연수, 재외동포 대상 직무 연수 등으로 구분하며, 모두 선택 과목으로 6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 직무 연수의 이수 여부는 출석률로만 결정한다. 최종 80%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를 인정하고 평가는 과목별로 자체 형성 평가만 시행하도록 한다.
- 직무 연수는 이를 제도화하는 단계에서 의무화하는 방안과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의무화의 장점: 직무 연수를 의무화할 경우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연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 자격의 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자격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원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29)</sup> 또한 책임기관은 한국어교원의 현황(종

29) 현재 보육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유사 보수교육 제도에서는 직

사자와 비종사자 비율, 소속기관 분포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어 교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 의무화의 단점: 먼저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에게 교육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교육 의무화를 강요한다면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sup>30)</sup> 또한 직무 연수 의무화에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2021년 1차 심사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규모의 교원들이 일정 주기로 계속 직무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으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선택안의 장·단점: 직무 연수를 선택으로 하게 되면 교원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부담이 적다. 또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는 기관 운영과 재정적 이유를 들어 교원들의 직무 연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이에 직무 연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유사 제도들의 경우처럼 교원의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교육비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등의 절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의무안과 선택안을 모두 제안하며, 법령은 의무안을 기본으로 하되 선택안도 제안하여 이후 제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무 연수를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직무 연수를 현직 종사자에게만 의무로 실시하고 있고 미종사자의 경우는 이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30) 현재 정교사의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직무교육의 경우도 현직 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무교육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2.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 2.1. 국내 운영기관

- 보수교육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교원들의 능력을 유지·함양·관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 먼저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한국어교육과정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보수교육의 과목 중 실습 관련 과목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습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 학습자가 숙달도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만 다채로운 실습 관련 과목의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수교육 운영기관에서는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는 한국어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 다음으로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다양한 연수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운영기관에 소속된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에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다양한 한국어교육 관련 과목의 강의 개설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교육 운영기관에서는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합 교육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강의 시설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지역별로 연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회차의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의 수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과목들을 비대면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필수과목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운영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다. 이러한 과목을 운영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강의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강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보수교육 제도가 제도화되어 시행되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이 주무 기관이 되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상 등 6개 지역에 지역별 거점 운영기관을 1개소씩 지정하여 2년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수요에 따른 운영 계획안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 2.2. 국외 운영기관

- 국외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 인원 및 교육 현장에 차이가 있으나 보수교육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운영기관의 경우 ‘국외 거점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 협업 대학 기관 (한국어교육원 운영),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을 운영기관의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외 교원들은 승급 연수나 직무 연수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이수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따라서 국외 교원들의 보수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과목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습 과목이나 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인 과목은 대면·집합 교육이 필요하므로 국외에 있는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들을 보수교육의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보수교육의 주무 기관이 된다는 가정하에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기관인 국외 거점 세종학당이 운영기관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sup>31)</sup> 다만 국외의 한국어교원

31) 국외에서 승급 연수나 직무 연수를 받는 교원의 경우 국내의 보수교육 운영기관에 신청을 하여 비대면 수업을 듣고, 대면 수업은 국외 거점 세종학당에서 듣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없이 한국어를 교수하는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 이전에 국외 한국어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더 우선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3. 보수교육위원회의 설치

- 보수교육을 법에 의거하여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래 ‘보수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 한국어교원의 자격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및 관리, 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다.
- 보수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 수, 임기 등은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 자문위원 중에는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예도 있으나 이는 보수교육이 제도화된 후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법령 개정의 주요 사항

- 본 연구에서는 법령 자문의 결과에 따라 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형태로 제안하였다.
- 먼저 한국어교원의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자

---

이다. 국내 운영기관의 기준을 국외 운영기관에 적용하면 한국어교육기관이 있어야 하고(한국어 수강생), 한국어교육 학위과정이 있어야 하며(교수요원의 확보), 집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한 기관은 현재로서는 주요 도시에 세워진 국외 거점 세종학당 또는 세종학당 협업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각 대륙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한국어교원 학술대회에 대면 교육을 담당할 교수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이 경우에도 비대면 수업을 수강한 교원을 대상으로 함.)



격을 취득한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등은 동법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수립된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 한국어교원과 관련한 법령의 위임관계를 살펴보면, 국어기본법 19조 2항 제19조(국어의 보급 등)에 따라 동법 시행령 13조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의 항목으로 1급, 2급, 3급의 자격을 기술하고 있고, 14조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교육능력검정시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이에 먼저 국어기본법 제19조 3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사유 내용에 대해 개정 및 자구 삽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19조 4항(보수교육의 실시)’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보수교육의 필요성, 소속 기관의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 그리고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승급을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그 조건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13조의 3에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보수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소속 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그리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완·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먼저 시행규칙 제5조 1에서 승급 심사 시 보수교육의 수료증이 필요함을 명시하여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5조 2를 신설하여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형태, 시간 등의 명시를 제안하였고 보수교육 면제 규정의 명시 역시 제안하였다. 제5조 3을 신설하여 여기에는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고시에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규정의 목적, 수탁 기관의 선정,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 시간, 평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 Ⅲ.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

#### 1. 교육과정의 구성

##### 1.1.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 보수교육의 대상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에 따라 대상자가 구분된다.
- 승급 연수는 1급 승급과 2급 승급으로 나뉘며, 1급 승급 대상은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표 15>에서 제시한 강의 경력을 충족하고 1급 승급을 원하는 교원이며, 2급 승급 대상은 3급 자격증 소지자로 역시 <표 15>에서 제시한 강의 경력을 충족한 후 2급 승급을 원하는 교원이다.
- 직무 연수의 대상은 1급, 2급, 3급의 자격증 소지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며, 현직 종사자와 미종사자를 구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직 종사자도 직무를 크게 둘로 구분하여 책임 교원 연수와 일반 교원 연수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 책임 교원 연수의 대상은 교육뿐 아니라 행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급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승급 연수는 승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데 반해, 직무 연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의무로 하는 방안과 선택으로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의무안<sup>32)</sup>이나 선택안이나 연수 대상, 교육

32) 보육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유사 보수교육 제도에서도 직무 연수를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자격증 소멸이 아닌 현직 종사자에게만 의무 실시, 또는 미종사자의 경우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유예 기간에 대한 것은 제도 실시 후 보수교육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법령에는 일단 1안, 즉 의무안을 기준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았다.

자격	내용	의무 여부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현직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매년 8시간 의무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유예를 할 수 있으며, 1년 유예시 12시간, 2년 유예시 16시간, 3년 이상 유예시 20시간 이상을 몰아서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의무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 의무안의 경우 미종사자는 기간 내 교육을 안 받았을 시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데,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 내지 기준은 ‘보수교육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3> 보수교육 승급 연수 대상

승급 연수 대상	1급 승급: 2급 자격증 취득자(2급→1급 승급) 2급 승급: 3급 자격증 취득자(3급→2급 승급)
----------	--

<표 14> 보수교육 직무 연수 대상(1안, 2안)

직무 연수 대상	1안(의무)	2안(선택)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표 15> 보수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승급 연수, 직무 연수)

교육 구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비고
승급 연수	1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한 자로 한국어 교육 경력 2000시간이 경과한 자	80시간	승급하고자 하는 자
		선택 과목			
	2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한 자로 한국어 교육 경력 2000시간이 경과한 자	80시간	승급하고자 하는 자
		선택 과목			

청소년 지도사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사자만 의무
청소년 상담사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사자만 의무

직무 연수	책임 교원 연수	필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li> <li>소속기관에서 책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할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책임 교원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li> </ul>	16시간	매 2 년 마 다
		선택 과목			
	일반 교원 연수	필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교원</li> <li>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교육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li> </ul>	16시간	매 2 년 마 다
		선택 과목			
미종사 교원 연수	필수 과목	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자로 현재 한국어교육기관에 속하지 않은 경력 단절 교원 또는 미취업 교원	16시간	매 2 년 마 다	
선택 과목					
특별 교육	선택 과목	1,2,3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한국어교원	6시간	이 수 하 고 자 하 는 자	

## 1.2. 교육 내용

○ 보수교육의 내용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행정, 교사 인성, 교육 안전’으로 분류하며, 세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 내용 분류

(1) 교육 내용: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을 다루는 영역

- (2) 교육 방법: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수법 개발, 교육 자료 개발, 평가 방법 및 평가 자료 개발 영역
- (3) 교육 행정: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 경영에 필요한 교사 및 학생 관리 영역
- (4) 교사 인성: 교사의 교육 태도를 다루는 영역
- (5) 교육 안전: 교육 기관의 시설 안전 및 안전 내용을 다루는 영역

## 2) 세부 교육 내용

- (1) 교육 내용: 한국어 지식 교육, 언어 기능 교육, 한국 문화 교육
- (2) 교육 방법: 언어 교수법, 새로운 교수 방법, 교육 자료 개발, 평가 개발 및 채점, 수업 컨설팅
- (3)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교원 교육 및 관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 (4) 교사 인성: 교사 태도 관리
- (5) 교육 안전: 시설 안전 관리, 학생 안전 관리

### 1.3. 교육과정 개요

○ 보수교육의 ‘연수 대상, 연수 유형, 연수 내용, 연수 방식, 연수 참여, 연수 주기, 연수 장소’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6> 보수교육 교육과정 개요

항 목		내 용
연수 대상	승급 연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원하는 한국어교원</li> <li>•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을 원하는 한국어교원</li> </ul>
	직무 연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 교원: 기관의 기관 운영자 및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교원</li> <li>• 일반 교원: 외국인 학습자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종사 교원: 경력 단절 한국어교원 또는 미취업 교원</li> </ul>	
연수 유형	승급 연수	공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급→1급] 승급 연수</li> <li>[3급→2급] 승급 연수</li> </ul>
	직무 연수	공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 교원 직무 연수</li> <li>현직 일반 교원 직무 연수</li> <li>미종사 교원 직무 연수</li> </ul>
		특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민자 대상 직무 연수</li> <li>이주노동자 대상 직무 연수</li> <li>중도입국자녀 대상 직무 연수</li> <li>재외동포 대상 직무 연수</li> </ul>
연수 내용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지식 교육</li> <li>한국 문화 교육</li> <li>언어 기능 교육</li> </ul>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교수법</li> <li>새로운 교수 방법</li> <li>교육 자료 개발</li> <li>평가 문항 개발 및 채점</li> <li>수업 컨설팅</li> </ul>	
	교육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지도 및 상담</li> <li>교원 교육 및 관리</li> <li>행사 기획 및 운영</li> <li>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li> </ul>	
	교사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태도 관리</li> </ul>	
	교육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안전 관리</li> <li>학생 안전 관리</li> </ul>	
연수 방식	승급 연수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직무 연수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연수 참여	승급 연수	의무	
	직무 연수	[1안] 의무(공통 교육), 선택(특별 교육) [2안] 선택(공통 교육, 특별 교육)	
연수 주기	승급 연수	일시적(집합 교육, 실시간 비대면 교육)/상시적(비대면 영상 교육) 병행	
	직무 연수	일시적(집합 교육, 실시간 비대면 교육)/상시적(비대면 영상 교육) 병행	
연수 장소	국내	국내 거점 기관	
	국외	국외 거점 기관	

## 1.4. 보수교육 종류

### 1) 승급 연수 과정

-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연수 과정은 ‘필수 과목’에 ‘선택 과목’을 더하여 구성하였다.

<표 17> 승급 연수 과정

(3급→2급) 승급 연수		(2급→1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20시간	60시간	2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 선택 과목은 비대면으로 상시 개설하며, 60시간 이수 후 필수 과목을 신청한다.
- 승급을 위한 최종 평가는 ‘필수 과목+선택 과목(1)+선택 과목(2)+선택 과목(3)’으로 구성한다.

### 2) 직무 연수 과정

- 직무 연수의 공통 교육은 ‘책임 교원, 일반 교원, 미종사 교원’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특별 교육은 추가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중도입국자녀, 재외동포’ 대상의 기본 교육 교과목을 포함하였다.

<표 18> 직무 연수 과정

공통 교육					
책임 교원 직무 연수		일반 교원 직무 연수		미종사 교원 직무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16시간		16시간		16시간	
+					
특별 교육					

결혼이민자 대상 직무 연수 이주노동자 대상 직무 연수 중도입국자녀 대상 직무 연수 재외동포 대상 직무 연수 :
선택 과목
6시간(추가 수강 가능)

- 비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교육을 한다.
- 직무 연수의 평가는 과목별로 자체 형성 평가만 시행하고, 이수 여부는 출석률(80%)로 판정한다.

### 3) 승급 연수 과정의 교과목(예시)<sup>33)</sup>

- 승급 연수는 필수 과목 20시간, 선택 과목(1) 40시간, 선택 과목(2) 10시간, 선택 과목(3) 10시간으로 구분된다. 필수 과목은 교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던 실습과 자료 개발과 같은 실무 교과목이며, 선택 과목(1)은 한국어교육학 이론, (2)는 다문화교육, (3)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하였다.

<표 19> 승급 연수 과정의 구분

	필수 과목	선택 과목		
		(1)	(2)	(3)
교육 내용	교육학-실무	교육학-이론	다문화 교육	법정 의무교육
교육 시간	20시간	40시간	10시간	10시간

- 본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한 교과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sup>34)</sup>

33) 여기서 제시하는 교과목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틀에 따라 예시로 제안한 것이다. 보수교육 제도가 한국어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과목 개발이 최우선 과제이다.

34) <표 20>, <표 21>의 교과목 중 필수 과목은 1급 교원과 2급 교원이 갖추어야 할 실무 교육 역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다. 1급 교원은 한국어교원 중 가장 높은 급의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과정



<표 20> 1급 승급 연수 교과목의 예

승급	분류	교과목 예	시간
1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① 초급 교육과정 설계의 실제(2시간) ② 중급 교육과정 설계의 실제(2시간) ③ 고급 교육과정 설계의 실제(2시간) ④ 평가 체계 및 채점 기준표 만들기(2시간) ⑤ 체험활동 수업 설계 및 운영(2시간) ⑥ 멀티미디어 활용 한국어 수업 운영 방법(2시간) ⑦ 정책의 이해(2시간) ⑧ 출입국관리법의 이해(2시간) ⑨ <b>[실습]</b> 교육과정 작성 및 발표(2시간) ⑩ <b>[실습]</b> 수업컨설팅: 우수 교육과정 사례 발표(2시간)	20시간
	선택 과목(1)	① 학습자 쓰기 클리닉(2시간) ② 게임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법(2시간) ③ 영상을 활용한 문법표현 교육 방법(2시간) ④ 비대면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 만들기(2시간) ⑤ 한국어교육용 앱 이용 방법(2시간) ⑥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⑦ 대학 교양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⑧ 의사소통의 실제(2시간) ⑨ 비대면 수업 설계 방법(2시간) ⑩ 한국어 학습자 진단 및 성취도 평가방법(2시간) ⑪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2시간) ⑫ 모듬활동을 지원하는 비대면 도구(2시간) ⑬ 행사 기획 및 기획서 작성 (2시간) ⑭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사말(2시간) ⑮ 상담 기법을 활용한 학생 소통(2시간)	40시간
	선택 과목(2)	① 국적 취득과 상실의 이해(2시간) ② 다문화 시대의 사회윤리와 인권(2시간) ③ 외국 국적 동포의 이해(2시간) ④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2시간) ⑤ 외국인 인권의 이해(2시간) ⑥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2시간) ⑦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2시간)	10시간

을 설계·운영할 수 있고, 각종 평가를 주관하며,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동료 교사의 수업을 컨설팅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직무 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현재 각 교과목을 2시간씩 이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문 의견 중에는 평가를 집중적으로 20시간 이수하거나 교육과정 설계를 심화해서 이수하는 안도 제시되었으나, 승급 연수는 교사가 오랜 강의 경력과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일정 수준의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 받고 평가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승급 연수가 아니라 직무 연수에서 고려될 사항이다. 또한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운영 계획서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주무 기관의 요청이나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⑧ 이민정책의 역사 및 개관(2시간)</li> <li>⑨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2시간)</li> <li>⑩ 이주여성과 인권(2시간)</li> <li>⑪ 지역사회 이민자사회통합을 위한 역할(2시간)</li> </ul>	
	선택 과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폭력 예방 교육(2시간)</li> <li>② 성희롱 예방 교육(2시간)</li> <li>③ 양성평등기본법 교육(2시간)</li> <li>④ 학교 안전 교육(2시간)</li> <li>⑤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2시간)</li> <li>⑥ 장애 인식 개선 교육(2시간)</li> <li>⑦ 학생 인권 교육(2시간)</li> <li>⑧ 자살 예방 교육(2시간)</li> <li>⑨ 개인 정보 보호 교육(2시간)</li> <li>⑩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2시간)</li> </ul>	10시간

<표 21> 2급 승급 연수 교과목의 예

승급	분류	교과목 예	시간
2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급 수업 운영의 실제(2시간)</li> <li>② 중급 수업 운영의 실제(2시간)</li> <li>③ 고급 수업 운영의 실제(2시간)</li> <li>④ 초급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2시간)</li> <li>⑤ 중급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2시간)</li> <li>⑥ 고급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2시간)</li> <li>⑦ 말하기 평가 개발 및 채점(2시간)</li> <li>⑧ 쓰기 평가 개발 및 채점(2시간)</li> <li>⑨ [실습] 수업지도안 작성 및 모의수업(2시간)</li> <li>⑩ [실습] 수업컨설팅: 우수 강의 사례 발표(2시간)</li> </ul>	20시간
	선택 과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습자 발음 클리닉(2시간)</li> <li>② 다양한 어휘 교육 방법(2시간)</li> <li>③ 유사한 문법표현 교육 방법(2시간)</li> <li>④ 활동 중심으로 수업 디자인하기(2시간)</li> <li>⑤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li> <li>⑥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li> <li>⑦ 문화 수업의 실제(2시간)</li> <li>⑧ 의사소통의 실제(2시간)</li> <li>⑨ 비대면 수업 설계 방법(2시간)</li> <li>⑩ 멀티미디어 활용 한국어 수업 운영 방법(2시간)</li> <li>⑪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2시간)</li> <li>⑫ 모둠활동을 지원하는 비대면 도구(2시간)</li> <li>⑬ 한국어 학습자 진단 및 성취도 평가방법(2시간)</li> <li>⑭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사말(2시간)</li> </ul>	40시간

		⑮ 상담 기법을 활용한 학생 소통(2시간)	
	선택 과목(2)	① 한국 문학과 예술의 이해(2시간) ② 한국의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2시간) ③ 한국 그릇에 담긴 음식 문화(2시간) ④ 한국의 주거문화와 미술(2시간) ⑤ 한국의 혼례와 의복문화(2시간) ⑥ 한국의 영토와 역사(2시간) ⑦ 한국 역사 속 한류 문화(2시간) ⑧ 한국 건축물에 담긴 과학 이야기(2시간) ⑨ 케이팝(K-POP)과 케이컬처(K-CULTURE)의 이해(2시간) ⑩ 한국 문화 콘텐츠 탐색(2시간) ⑪ 한글, 디자인으로 만나다(2시간) ⑫ 한국 음식은 밥으로 통한다(2시간)	10시간
	선택 과목(3)	① 성폭력 예방 교육(2시간) ② 성희롱 예방 교육(2시간) ③ 양성평등기본법 교육(2시간) ④ 학교 안전 교육(2시간) ⑤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2시간) ⑥ 장애 인식 개선 교육(2시간) ⑦ 학생 인권 교육(2시간) ⑧ 자살 예방 교육(2시간) ⑨ 개인 정보 보호 교육(2시간) ⑩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2시간)	10시간

- 실습 수업은 소규모 강좌로 진행한다.<sup>35)</sup>
- 필수 과목은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비대면 상시(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 4) 직무 연수 과정(예시)

- 직무 연수의 공통 교육은 필수 과목 8시간에 선택 과목 8시간을 더 하여 교원별로 16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교과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35) 3급 자격증 취득과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실습 과목을 필수로 듣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승급 연수, 직무 연수에 실습 과목을 개설한 것은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미 강의 경력이 오래된 한국어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 과목은 기존에 사용하던 교수법이나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 과목(1)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수안을 짜서 이를 모의 수업 형태로 시강하고 수강자들끼리 토론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1) 공통 교육

<표 22> 직무 연수(공통 교육) 책임 교원 연수 교과목의 예

영역		분류	교과목 예	시간
공통 교육	책임 교원 연수	필수 과목	①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2시간) ② 교원 배치 및 관리 방법(2시간) ③ <b>[실습]</b> 교육과정 설계 실습(2시간) ④ <b>[실습]</b> 평가 체계 수립 및 운영 방법(2시간)	8시간
		선택 과목	① 멀티미디어 활용 한국어 수업 운영 방법(2시간) ② 대학 교양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③ 배치 평가의 실제(2시간) ④ 성취도 평가의 실제(2시간) ⑤ 교재 출판의 실제(2시간) ⑥ 행사 기획 및 기획서 작성 방법(2시간) ⑦ 비자 관련 출입국관리법의 이해(2시간) ⑧ 근로기준법의 이해(2시간) ⑨ 과정 운영사례 공유(2시간)	8시간

<표 23> 직무 연수(공통 교육) 일반 교원 연수 교과목의 예

영역		분류	교과목 예	시간
	일반 교원 연수	필수 과목	①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2시간) ② 상담 기법을 활용한 학생 소통(2시간) ③ <b>[실습]</b> 수업지도안 작성의 실제(2시간) ④ <b>[실습]</b> 말하기, 쓰기 채점 실습(2시간)	8시간
		선택 과목	①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사말(2시간) ② 학습자 발음 클리닉(2시간) ③ 학습자 쓰기 클리닉(2시간) ④ 비대면 수업 설계 방법(2시간) ⑤ 활동 중심으로 수업 디자인하기(2시간) ⑥ 한국어 학습자 성취도 평가방법(2시간) ⑦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⑧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⑨ 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8시간

<표 24> 직무 연수(공통 교육) 미중사 교원 연수 교과목의 예

영역	분류	교과목 예	시간
미중사 교원 연수	필수 과목	① 한국어 수업의 구조 및 원리(2시간) ② 한국어 수업 운영 방안(2시간) ③ <b>[실습]</b> 수업지도안 작성의 실제(2시간) ④ <b>[실습]</b> 평가 문항 만들기 실습(2시간)	8시간
	선택 과목	① 자주 나오는 발음 교육 내용(2시간) ② 어휘 교육에 필요한 자료 검색 방법(2시간) ③ 유사한 문법표현 교육 방법(2시간) ④ 교재 및 교사지침서 활용 방법(2시간) ⑤ 수업 도입을 구성하는 방법(2시간) ⑥ 단계별 수업 활동 구성 방법(2시간) ⑦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⑧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⑨ 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설계(2시간)	8시간

- 승급 연수와 마찬가지로 실습 수업은 소규모 강좌로 진행한다.
- 필수 과목은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비대면 상시(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2) 특별 교육

- 직무 연수의 특별 교육은 6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교과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5> 직무 연수(특별 교육) 교과목 예

영역	분류	교과목 예	시간
특별 교육	선택 과목	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정의 이해(2시간) ②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과정의 이해(2시간) ③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과정의 이해(2시간) ④ 재외동포 한국어교육과정의 이해(2시간) 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활용 방법(2시간) ⑥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활용 방법(2시간) ⑦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활용 방법(2시간) ⑧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활용 방법(2시간) ⑨ <b>[실습]</b> 결혼이민자 대상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의 실제(2시간) ⑩ <b>[실습]</b> 이주노동자 대상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의 실제(2시간)	6시간 (추가 선택 수강 가능)

	⑪ [실습] 중도입국자녀 대상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의 실제(2시간)	
	⑫ [실습] 재외동포 대상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의 실제(2시간)	

- 실습 수업은 소규모 강좌로 진행한다.
- 특별 교육은 비대면 상시(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 2. 보수교육 운영기관 관리 방안

### 2.1. 운영기관 관리 방안의 개요

#### 1)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제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운영기관의 교수 역량 및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와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운영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운영기관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한국어교원의 학습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마련한 보수교육의 프로그램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준수해야 할 규정과 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 운영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수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기관의 선정과 교육과정, 대면/비대면 강의, 평가 관리 등 일원화된 관리·감독을 위임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보수교육의 운영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기관이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질적 유지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보수교육 제도 운영 초기에는 보수교육 운영기관을 중앙 기관과 지역 거점 기관<sup>36)</sup> 한두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 최종적으로 전문적인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절차 및 평가 지표, 운영 관리에 관해서는 유사 자격제도의 운영 지침과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 실제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과 보수교육 운영 지침은 예시안으로, 제도가 확정 운영되면 그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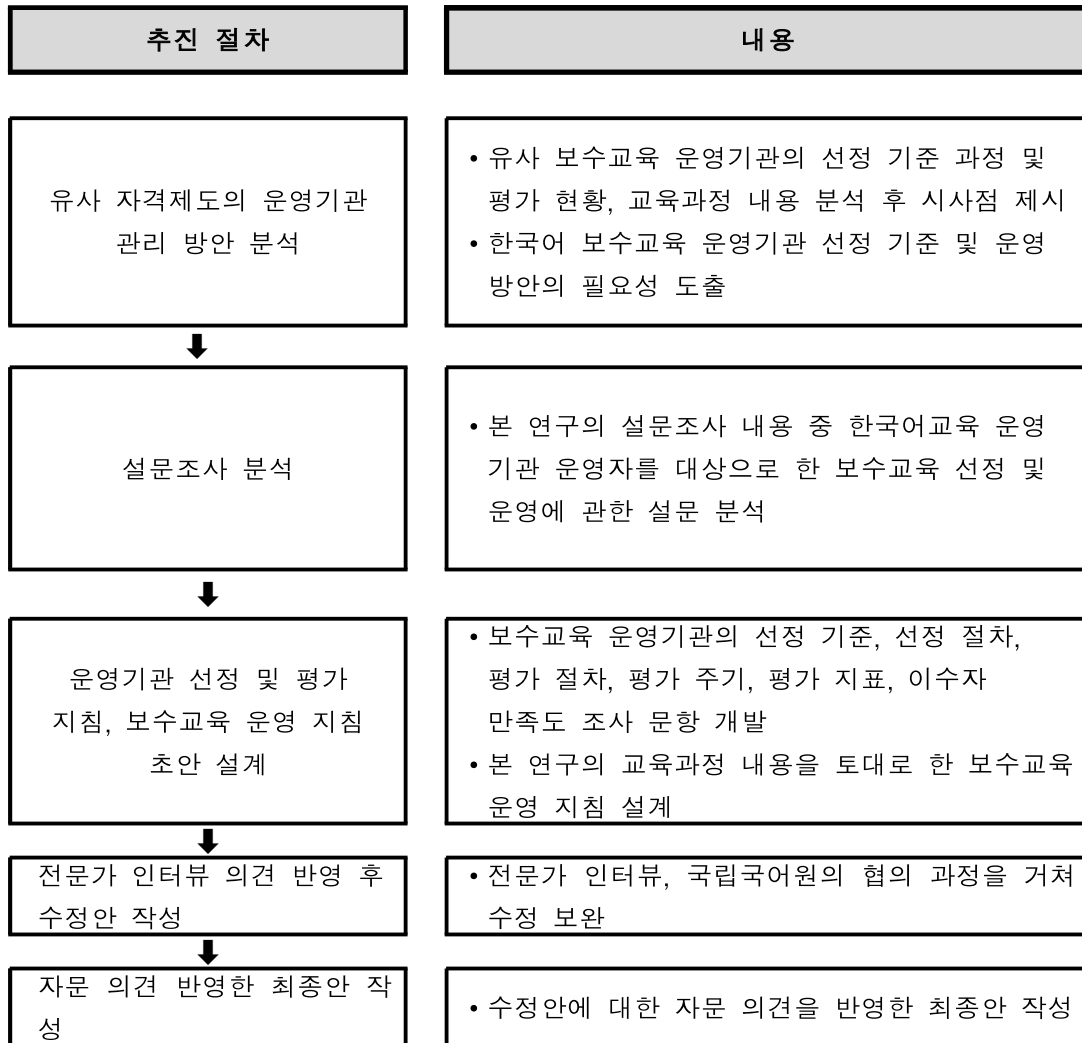
## 2) 방법 및 절차

- 운영기관 관리 방안은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과 보수교육 운영 지침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운영기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유사기관 보수교육 제도를<sup>37)</sup> 검토하고 분석하여 운영기관 관리 지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의 교원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이를 토대로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평가 절차, 평가 지표, 관리 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반영한 운영 지침 초안을 설계하였다.
-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관리 방안을 수정 보완하고, 수정한 지침과 운영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

36) 자문회의에서 거점 기관의 개념과 범위, 수를 구체화할 것, 거점 기관 교육 외에도 한국어교원들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과정 운영, 국내 기관 지정 절차와 국외 기관 지정 절차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 실행의 첫해에는 한두 곳을 시범 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추후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 거점, 해외 거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운영기관의 수나 지역은 교육 대상(자격종별, 교육경력별, 근무유형별, 근무국가별 등)에 따른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정해져야 할 것이다.

37) [부록 1, 2] 유사 자격 제도 참고.



[그림 11] 보수교육 운영기관 관리 방안 개발 절차

### 3) 기대 효과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과 안내에 대한 보수교육 운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화 및 체계성 확보를 꾀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투명한 보수교육의 운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유지·관리·함양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수교육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2.2.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

- 승급·직무 연수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고른 분배로 양질의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인증 기준 및 물리적 환경(대면/비대면교육) 정비, 수강생 관리 시스템 여부를 판단하여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보수교육위원회가 심의할 평가 지표, 이수자 만족도 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자체 점검표는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및 재심사 절차의 첫 단계로 운영기관이 주체가 되어 평가 영역 및 평가 부문에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추후 보수교육위원회에서 활용할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시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와 운영 계획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때 최초 선정 시에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재심사 시에는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운영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이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평가 지표에 적용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 체계를 갖춘 보수교육 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수자 만족도 조사와 교육과정의 운영과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고, 향후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 1)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 보수교육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실습 과목 운영을 위하여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한국어교육 정규과정 운영기관’을,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학위과정 운영기관’을, 대규모 집체교육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강의 시설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다.
  - 해외의 경우는 국내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비대면 교

육은 국내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고, 대면 교육(집합 교육)은 해외에 거점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거점 운영기관으로는 해외 거점 세종학당, 세종학당 협업 대학기관(한국어교육원 운영), 한국문화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국내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인 한국어 정규과정 운영, 학위과정 운영, 강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 국내 교원을 파견하거나 일부 과목의 비대면 수업 인정과 같은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수교육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하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 기구인 ‘보수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탁할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및 재심사 평가,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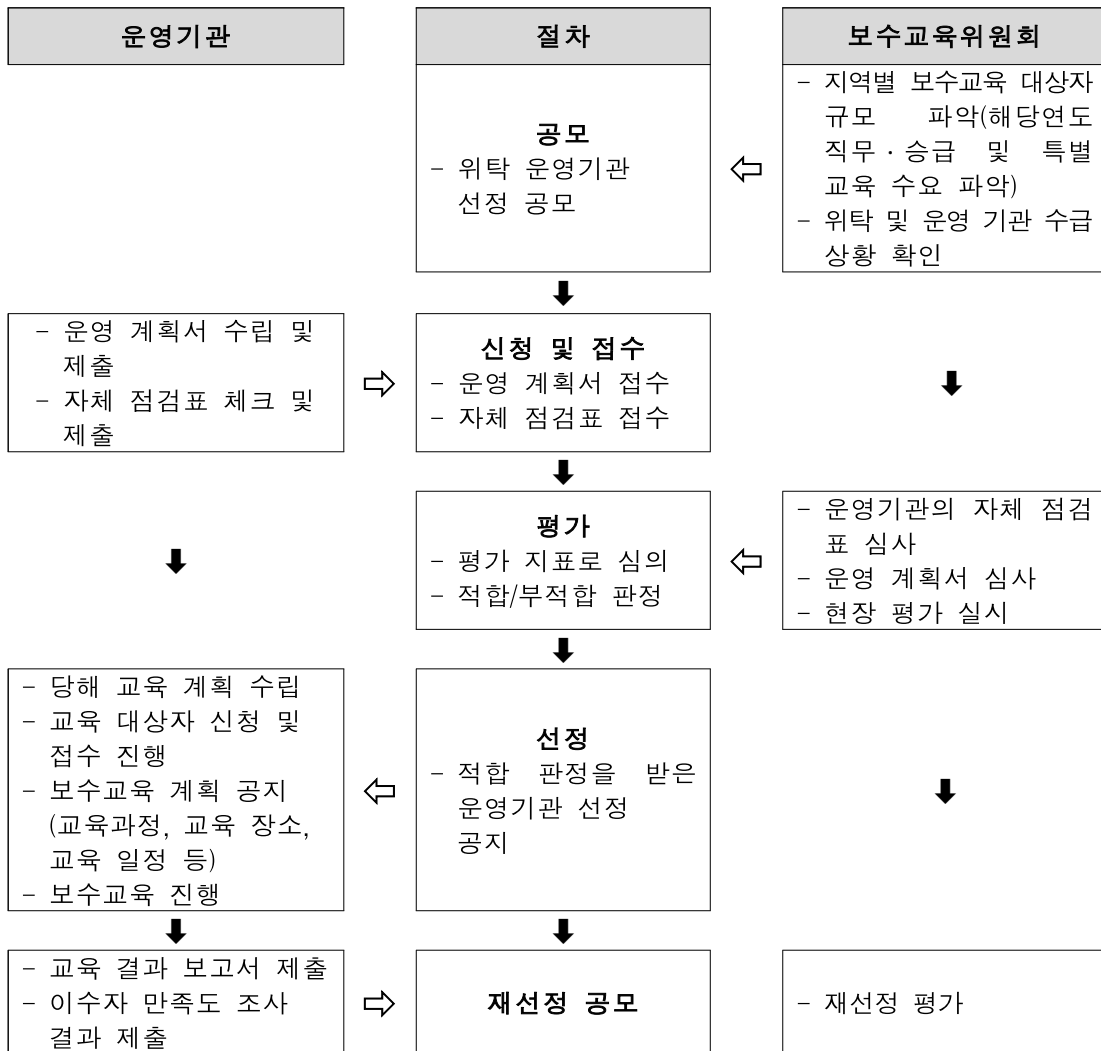
## 2)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절차

### (1) 선정 평가 절차

-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평가의 주체는 보수교육위원회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래에 보수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부여한다.
  - 지역별 보수교육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고, 해당연도 직무 및 승급 교육 수요 파악, 운영기관 및 수급 상황을 확인하여 운영기관에 대한 선정을 공모한다.
  - 보수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자체 점검표와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면 평가를 한다.
  - 현장 평가를 거쳐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위탁 보수교육 기관을 선정한다.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운영 계획서와 자체 점검표를 보수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지역 내 보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수업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 운영기관별로 교육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보수교육이 완료되면 이수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교육 결과 보고서를 보수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 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흐름도는 아래 [그림 12]와 같다.<sup>38)</sup>



[그림 12]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절차 흐름도

38) 최윤경 외(2014)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보수교육 기관의 위탁 절차를 위탁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서 체결, 전문기관 선정 공고의 4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어 보수교육의 운영기관 선정의 조건에 맞게 설계하였다.

## (2) 평가 방식

- 운영기관의 선정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운영 계획서,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를 검토하고,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심의한다.
- 평가 항목의 충족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적합’,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 선정의 평가 방식<sup>39)</sup>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선정 평가 방식(안)

평가 대상	항목	척도	평가 기준
1)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6개 영역	○ / ×	○가 70% 이상이면 적합 <sup>40)</sup>
2) 운영 계획서	세부 항목 검토	충족/미충족	충족 또는 미충족으로 판정
3) 현장 평가	운영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확인	충족/미충족	충족 또는 미충족으로 판정
4)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	5개 영역	점수	100점 기준 70점 이상 충족

\* 평가 대상 모두 ‘적합’, ‘충족’된 경우 선정 판단

## 3) 운영기관 재심사 평가 진행 절차

### (1) 재심사 평가 절차

-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재심사 평가의 주체는 보수교육위원회가 된다.
- 평가 주기(4년 주기)가 되어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와 이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수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39) 선정 및 재심사 평가 방식은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을 제시한 최윤경 외(2014)를 참고로 하여 한국어교육 보수교육의 운영기관에 적용하였다. 최윤경 외(2014)에서는 기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이수자 만족도 조사 반영을 기관 선정 기준으로 삼고, 점수의 최저 기준 미달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교원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을 하였으므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보수교육 운영기관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40) 최윤경 외(2014)에서는 운영기관 자체 점검표의 평가 기준을 40점 만점 30점 이하를 기준 미달로 정해 놓았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70%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증 기준을 교육계획 대비 실적, 모니터링 분석 결과, 만족도 평가 결과 등의 실적을 종합하여 80% 이상 도달하는 경우 3년간 심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참고하여, 70%를 최저 기준으로 삼았다.

- 운영기관이 제출한 자료인 결과 보고서와 이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평가하고, 증빙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최종 심의를 하여 ‘충족’ 또는 ‘미충족’의 판정을 한다.
- 운영기관의 재심사 평가 절차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구분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평가 대상	선정되어 보수교육을 운영한 기관	선정되어 보수교육을 운영한 기관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교육 자체 점검표</li> <li>- 운영 계획서</li> <li>-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li> <li>- 이수자 만족도 조사 결과</li> <li>- 평가 지표</li> </ul>	운영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확인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항목 충족/미충족</li> <li>- 최종 적합/부적합으로 판단</li> </ul>	충족/미충족
평가 기구	보수교육위원회	보수교육위원회

[그림 13] 재심사 평가 절차

## (2) 평가 방식

- 운영기관의 선정 및 재심사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보수 계획서,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 이수자 만족도 조사 등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 평가 항목의 적합 여부나 충족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충족’, ‘미충족’으로 판단한다.
- 선정 및 재심사 평가 방식은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재심사 평가 방식(안)

평가 대상	항목	척도	평가 기준
1)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6개 영역	○ / ×	○가 70% 이상이면 적합
2) 운영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세부 항목 검토	충족/미충족	충족 또는 미충족으로 판정
3) 현장 평가	운영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확인	충족/미충족	충족 또는 미충족으로 판정
4) 이수자 만족도 조사	4개 영역, 10개 항목	5점 척도	70% 이상 충족
5)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	5개 영역	점수	100점 기준 80점 이상 충족 (충족/미충족)

\* 평가 대상 모두 '적합', '충족'된 경우 적합으로 판단

### (3) 평가 주기

- 직무 연수의 2년 단위 주기 교육의 안착과 성과 점검을 위해 4년 주기 평가를 설정하고, 평가의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 3년차 6월에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 1월부터 운영 지속과 중단의 결과를 통보한다.
  - 평가 결과 '충족'으로 판정을 받으면, 이듬해부터 재선정되어 4년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 '미충족'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심사 결과 '충족'으로 판정을 받으면 다음 주기 재선정된다.
  - '미충족' 판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사의 최종 결과에서도 '미충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잔여 기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판정		평가 시기 - 3년차 6월 실시		재선정
충족		잔여 기간 운영 지속	⇒	4년 주기 재선정, 1차년도 운영
미충족	이의 신청 (3개월 내) 후 '충족' 판정	잔여 기간 운영 지속	⇒	4년 주기 재선정, 1차년도 운영
	이의 신청 후 '미충족' 판정	잔여 기간 운영 지속	⇒	익년 운영 불가

[그림 14] 재심사 평가 주기(안)

#### 4)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 운영기관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sup>41)</sup>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운영 계획서의 항목, 보수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평가 지표, 이수자 만족도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 (1)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 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수교육의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 교육 대상자 선정, 강사 인력 관리, 결과 보고에 있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 자체 점검표에는 교육 환경, 강사 현황, 운영 및 관리, 교육과정, 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운용, 기타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의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 O/X를 표시하도록 한다.
- 6개 영역의 세부 항목 중 O가 70%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 교육 환경은 교육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것으로 장시간 연수를 받는 연수자들에게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점검한다.<sup>42)</sup>

41)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 개발은 유사 보수교육기관인 최윤경 외(2014)와 강승혜 외(2017)의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를 참고하였고, 전문가 집단 인터뷰 및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어 보수교육 운영기관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42) 다만, 지역이나 해외 교육기관의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하였다.

- 강사 현황의 항목은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갖춘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한 점검이다. 보수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사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강사 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과목의 특성, 강사의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해야 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보수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주당 적정한 시간과 적정한 수의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 예) 1주당 최대 8시간~10시간, 교과목 1개당 1명의 강사 배정 등.
- 강사료는 보수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책정하여 지급한다.
- 강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 1급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된 자.
  - 대학 부속 한국어교육기관의 책임급인 자.
  -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관련 교육 경력을 갖춘 자<sup>43)</sup>
- 운영 및 관리의 항목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를 점검한다. 또한 전반적인 수업 운영과 출결 및 평가 관리에 대한 요소로 구성한다.
- 교육과정의 항목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 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용 항목은 보수교육 관리나 비대면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 판단하여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43)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심리, 교육 정책 및 행정, 상담 등 한국어교육 전공이 아닌 교과목 교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타항을 두었다.



- 기타로 보수교육 비용과 관련된 법령 기준을 준수하는지, 민원 대처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이상의 항목들이 들어간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는 아래와 같다.<sup>44)</sup>

<표 28>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표(안)

영역	항목
1.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시설 및 설비</li> <li>1) 전용 강의실의 확보</li> <li>2) 비대면 및 대면 기자재 유무</li> <li>3)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실 확보</li> <li>4) 시설 설비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li> <li>5) 비대면 교육(녹화 및 화상 수업 운영)을 위한 스튜디오 확보</li> </ul>
2. 강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 확보에 관한 항목</li> <li>1) 강사 자격 기준에 적합한 교원 확보</li> <li>2) 주 8시간 기준의 적절한 수(2~5명)의 강사 확보</li> <li>3) 강사로 지급 관련</li> </ul>
3.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구성</li> <li>1) 기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운영</li> <li>2) 연간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제공</li> <li>3) 강사 인력 풀 관리</li>   <li>■ 수업 운영</li> <li>1) 교육 인원의 반 편성 기준 충족</li> <li>2) 보수교육 내용의 교재 제공</li> <li>3) 직무 연수 또는 승급 연수의 이수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li> <li>4) 수업 운영 시간 준수</li>   <li>■ 수료증 발급의 적정성</li> <li>1) 교육요건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li> <li>2) 공정한 평가에 따른 수료증 발급</li>   <li>■ 출결 관리</li> <li>1) 보수교육 운영 중, 교육생의 출결을 관리하는가?</li> <li>2) 결석 사유(사고·질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 적용</li> </ul>

44) 추후 보수교육 제도가 확정 운영되는 경우 사업 초기에는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교육과정	<p>■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 제공</li> <li>2) 보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의 적절성</li> <li>3) 강좌별(직무/승급/특별) 수준별 차별화된 수업계획서 작성</li> <li>4)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외 특징적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의 유무</li> <li>5) 최신 정보를 반영한 학습 자료</li> <li>6) 보수교육 실시 후, 이수자가 응답하는 자체 평가 실시 여부</li> <li>7)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li> <li>8) 수업 질 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및 발전적인 방안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승급의 차별화 전략 및 반복 방지, 최신내용 업데이트 등</li> </ul> </li> </ol>
5. 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운용	<p>■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운용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수교육 관리 및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사용</li> <li>2) 보수교육 신청 및 접수</li> <li>3) 비대면 교육 제공</li> <li>4) 이수자 관리</li> <li>5) 이수자 만족도 조사</li> <li>6) 이수증 발급</li> <li>7) 비대면 콘텐츠 관리</li> <li>8) 비대면 과정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li> </ol>
6.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수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지원/환급에 관해 법 기준 준수</li> <li>2) 변경사항(기관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이 있을 시, 변경신청 이행</li> <li>3) 민원 대처 능력(민원 발생 시 대처, 후속 조치, 보수교육위원회 보고 등)</li> </ol>

## (2) 운영 계획서

○ 운영기관에서 제출할 운영 계획서<sup>45)</sup>의 세부 작성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교육기관명, 연락처(대표전화, 홈페이지, 기관 이메일)
- 교육담당자, 교육담당자 연락처(직통전화, 개인 전화, 이메일)
- 교육지역 및 장소
- 교육 기간: 과정 수료 기간
- 교육 계획
  - 교과목 편성
  - 평가: 수료 기준을 보수교육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설정

45) 보수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수기관의 운영 계획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2021)의 내용을 참고로 항목을 제시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2021)에 의하면 운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관 개요(기관명,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연락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 기관 유형을 비롯하여 해당 소속, 운영 경력 및 학위 개설, 교육 사업 경력 및 실적), 구비 시설 현황, 안전 관리 현황, 강사 및 운영 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당해 연도 운영 계획, 교통편 및 약도,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출석 관리 및 이수 판정: 승급 연수는 출석률 100%<sup>46)</sup>, 지필 평가 80점 이상, 직무 연수는 90% 이수 시간을 충족할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직무 연수의 경우 과목별 자체 평가 및 실습 결과물의 피드백이 평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료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비대면 강의 개설 시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한 운영 관리 계획
- 평가 계획
- 교육 장소 약도 및 첨부 파일
- 예상 교육 인원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실적
- 실적 (2차 지원 시, 등록률, 이수 완료율 등)
- 예산
  - 수입: 수강료, 보조금, 자부담(기관 자체 예산, 교비 등), 기타
  - 지출: 강사료, 원고료, 교통비, 교재 제작비, 교육장 대관료(교육장 운영비), 다과료, 식대, 교육 운영비, 계획심사수수료, 평점인증수수료, 기타

### (3)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

- 보수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평가 지표<sup>47)</sup>는 운영기관이 제출한 보수 계획서와 자체 점검표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강사 현황,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운용, 교육 성과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강사 현황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영역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평가를 토대로 판정한다.

46) 승급 연수의 출석률 기준이 높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으나 보육교사의 승급 연수와 기준을 동일하게 제안하였다.

47) 최윤경 외(201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운영기관 선정에 맞도록 설정하였다. 최윤경 외(2014)에서는 총 5개 영역(일반 현황, 교원 현황, 회계 현황, 시설 현황, 교육 실적 및 운영, 기타 가점 부여) 6개 범주를 설정하여 60점 만점, 45점 이하 기관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자문의견에서 교육 환경,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사 현황의 중요성과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 80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점을 찾아 세부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교육 성과 영역은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교육 성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운영해 온 교육과정이나 이수자 현황을 통해 판정한다. 재심사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이수자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표 29>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안)

영역	범주 및 항목	배점
교육 환경	교육 시설 및 설비	30
강사 현황	강사 확보율 및 전공 적합도	20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개설 교과목의 적합성,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30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운용	비대면 학습 운용 및 보수교육 관리 시스템의 적합성	10
교육 성과	선정의 경우: 운영했던 타교육의 이수자 현황 및 교육과정 현황 판정 재심사의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자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판정	10
80점 이상 충족		100점

#### (4) 이수자 만족도 조사

- 한국어교원들의 보수교육 수료 후 이수자 만족도 조사<sup>48)</sup>를 실시한다.
- 이수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재심사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 평가 영역은 한국어교원들 자신에 대한 평가와 운영기관의 평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어교원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기와 성찰, 교육 후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총 4개의 영역에 5점 척도로 평가하는 10개 항목을 설정하여 평균

48) 이수자 만족도 조사 항목은 최윤경 외(201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최윤경 외(2014)는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수자 만족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는 유사 보수교육을 받는 이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료라 판단하여 본 연구의 이수자 만족도 조사 항목 개발에 반영을 하였다.

35점 이상이면 재심사 평가에서 ‘충족’으로 판단한다<sup>49)</sup>.

<표 30> 이수자 만족도 조사 항목(안)

영역	평가 내용
자신에 대한 평가	1) 본인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2) 본인의 한국어교육 역량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어 참여 목표(직무/승급)를 성취하였다.
교육 내용	3) 교육과정이 교수법이나 교실 운영 등 실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교육자료(교재, PPT 등)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강의 방법(강의식, 토론식, 사례발표, 실습 등)은 교육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었다.
교수자의 전문성	6) 교수자의 강의 내용 전달 능력이 좋았다.
	7) 교육 내용과 관련된 교수자의 전문성이 적절했다.
운영기관의 능력	8) 운영기관과의 소통과 피드백 관리가 적절했다.
	9) 교육과정의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청, 교육 안내, 학습 자료 제공, 비대면 강의 등)
	10) 강의실 및 비대면 플랫폼 등 부대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총 4개 영역 10개 항목, 5점 척도 (* 50점 만점 35점(70%) 이상 ‘충족’으로 판단)	

## 2.3. 보수교육 운영 지침

### 1) 보수교육 운영 지침 개발의 방향

○ 보수교육 운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유사기관 보수교육의 운영 지침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 유사 보수교육 기관인 교육부의 보수교육과정 매뉴얼(201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49) 최윤경 외(2014)의 이수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4개 영역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50점 만점, 30점 이하 기관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를 참고하고, 보수교육을 받는 한국어교원의 교육 환경 및 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50점 만점, 35점 이상을 ‘충족’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021), 보육사업 안내(2021)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유사 보수교육 기관의 운영 지침 구성 및 특징

운영 지침	구성 분석	특징
보수교육과정 매뉴얼(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론과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개요로 구분</li> <li>- 총론에서는 개정의 필요성 및 목적, 개정 원칙 방향 제시, 과정별 성격 및 목표 제시, 보수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li> <li>- 과정별 교과목 개요교과목별로 보수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운영 체계의 매뉴얼 모형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과정별 교과목 성격, 학습목표, 교과목 내용, 강의포인트,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li> <li>· 교과목 내용에서는 대주제와 소주제로 나누어 수업 시간 내에 다룰 수 있는 내용 선정</li> <li>· 수강생들이 수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제시</li> <li>· 대단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실습, 토론 중심으로 강의안 제시</li> <li>· 기타 관련 참고자료(관련 동영상 및 웹사이트의 주소) 제공</li> </ul>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교육의 개요, 대상, 내용</li> <li>· 보수교육 위탁 기관 및 실시기관의 운영 절차 및 관리 지침</li> <li>·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기본 원칙 및 기준</li> <li>· 보수교육 영역별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과 기준 설정</li> <li>· 보수교육 영역별 지침에서는 개요, 교육목표, 교육 내용 제시</li> <li>· 교수학습 방법이나 상세 내용은 기술하지 않음.</li> </ul>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침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li> <li>- 교육과정 및 교육 운영 제시</li> <li>· 교육 운영 보수교육 영역별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고, 교육 과정과 운영 일정 제시</li> <li>· 학습자와 교수자,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li> </ul>
보육사업안내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운영,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어린이집 평가, 35세 누리과정, 시간제 보육, 보육 예산지원, 육아종합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서 보수교육의 종류,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의 내용에 대해 제시함.</li> <li>· 일반직무교육(기본과정)과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과목과 시간 제시</li> <li>· 보수교육 절차 제시</li> </ul>

○ 유사 보수교육 기관의 운영 지침 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보수교육 운영 지침의 구성 체계는 유사 보수교육 기관의 운영 지침을 참조하되, 보수교육 대상자와 교육 범위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 등으로 분리되므로,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도 과정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 보수교육 운영 지침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육의 목적, 보수교육 대상 및 등록,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방안, 보수교육 진행 방법, 교수·학습 및 평가, 위탁 운영기관의 요건 및 행정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교육의 목표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은 교원의 직무 관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 관련 보수교육과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승급 관련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2) 법적 근거

- 「국어기본법」 제19조의4(보수교육의 실시)에 의거한다.<sup>50)</sup>
- 보수교육 위탁 기관의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19조의4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에 의거한다.

### 2) 보수교육 대상 및 등록

#### (1) 보수교육 대상자

##### ○ 일반 원칙

- 보수교육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 단, 자격증 미소지자 중 한국어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이에 한정하여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보수교육 교육기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직무 연수 내 특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 ※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특별 교육과정 이수 시 추후 직무 연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선택 과목 이수 이력을 인정한다.

---

50) 법률의 조, 항, 호, 목을 표기할 때 법률 내에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모두 붙여 쓰고, 본문 중에서는 일반적인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붙여 쓴다. 또한, 법령의 명칭을 다룰 때도 앞의 기준에 따라 「국어기본법」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다.

○ 승급 연수

- 승급 연수는 한국어교원자격증 상위 등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다.
- 1급 승급 연수 대상: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한 자로 한국어교육 경력 2,000시간이 경과한 자
- 2급 승급 연수 대상: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만 5년이 경과한 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2,000시간이 경과한 자

○ 직무 연수

- 직무 연수는 공통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구분된다. 공통 교육은 한국어교원의 직무에 따른 능력 및 한국어 교수에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연수이며, 특별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 유형에 따른 대상별 특성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교육이다.<sup>51)</sup>

① 공통 교육

○ 직무 연수 대상

- 책임 교원: 한국어교육 기관의 기관 운영자 및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교원
- 일반 교원: 외국인 학습자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교원
- 미종사 교원: 경력 단절 한국어교원 또는 미취업 교원

- 한국어교원 자격증 승급 시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 동안은 직무 연수를 면제한다.

---

51) 본 연구에서는 직무 연수 내 직무 연수의 시행 방식을 의무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운영 지침은 직무 연수가 의무로 시행될 경우에 한하여 기술되어 있다. 별도로 직무 연수가 선택으로 시행되는 경우 지침의 이 항목은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② 특별 교육

- 선택 교육으로 특별 교육을 수강한 1·2·3급 한국어교원은 추후 직무 연수의 선택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증 미소지자 중 한국어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속된 기관장의 추천과 보수교육 위탁 교육 기관의 허가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다.

## (2)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

- 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신규 등록, 입·퇴사, 직급 및 기관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대상자 정보 수정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sup>52)</sup>

## (3) 면제 및 유예 안내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의거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및 승급 시, 해당 주기 직무 연수를 면제한다.

## 3)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 (1) 기본 체제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은 직무 연수와 승급 연수로 구분하며, 직무 연수와 승급 연수의 교육 체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승급 연수

- 승급 연수의 영역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 과목에서 20시간 이수, 선택 과목에서 60시간 총 80시간 이수 시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 자격이 충족된다.
- 선택 과목(비대면 상시 개설) 60시간 이후 수 필수 과목 신청이 가능

---

52)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의 화면을 갈무리하는 등 상세한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하다.

- 승급을 위한 최종 평가는 [필수 과목 + 선택 과목(1) + 선택 과목(2) + 선택 과목(3)]으로 구성된다.

<표 32> 보수교육 교육 시간(승급 연수)

(3급→2급) 승급 연수		(2급→1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20시간	60시간	20시간	60시간
80시간		80시간	

② 직무 연수

- 직무 연수 이수 인정 시간은 교육 수강을 시작한 당해 연도가 포함된 2년에 한하여 유효하다.
- 직무별 공통 교육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 과목에서 8시간(평점) 이수, 선택 과목에서 8시간(평점)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특별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 유형에 따른 연수로 구성되며, 이는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이주노동자,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한국어교원, 해당 유형의 학습자의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예비 교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표 33> 보수교육 교육 시간(직무 연수)

공통 교육						특별 교육
책임 교원 직무 연수		일반 교원 직무 연수		미종사 교원 직무 연수		한국어 학습자 관련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6시간
16시간		16시간		16시간		(추가 수강 가능)

## (2) 보수교육 내용

- ① 승급 연수 교육과정 (교과목 예시는 <표 20>, <표 21> 참고)
- ② 직무 연수 교육과정 (교과목 예시는 <표 22>, <표 23>, <표 24> 참고)

## (3) 보수교육 운영

### ① 보수교육 안내

- 국립국어원 및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 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 일정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중 안내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 교원을 보유한 전문 교육기관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허락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위원회는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보수교육 수요조사, 교육 대상자 선정, 보수교육 신청, 비대면 교육 제공, 보수교육 이수 인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② 보수교육 실시 절차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 교원을 보유한 전문 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교육과정별 교육 개시 전 현직 교직원 중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 의무 이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무 연수(공통 과정 및 특별 과정)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신청 마감 후 대상자를 통합하여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과정별 보수교육 대상자 및 신청자를 각 교육 과정에 배정한다.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관련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이 지정하는 교과목 및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운영한다.
- 보수교육 이수
  -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이수 여부를 평가한다.
    - 이수 기준: 교육과정별 해당 교육 시간에 90% 이상 출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직무 연수의 경우 필수 과목 영역에서는 8시간, 선택 과목 영역에서는 8시간, 승급 연수의 경우 필수 과목 영역에서는 20시간, 선택 과목 영역에서는 60시간 필히 이수해야 한다.
    - 승급 연수의 경우 출석 시간을 충족하고 최종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승급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 수료증 발급 및 교육 이수자 명단 통보 등
  -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수료증 발급(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해야 하며 수료자 명단을 각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 운영기관은 보수교육 실시 및 이수자에 관한 기록을 국립국어원에 보고하고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4) 보수교육 진행

##### (1) 보수교육 방법

###### ① 집합 교육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거점 및 위탁 운영기관에서 운영한다.
  - ※ 기관에 따라 교육과정은 상이할 수 있다.
- 대면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대상자 및 운영기관의 필요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비대면 교육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한다.
  - ※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의 비상 상황에서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승인 후 집합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
- [실습] 교과목의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수강할 수 없다.
  - ※ 해외 체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인해 집합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보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가능하다.

## ③ 대면/비대면 통합 교육

- 필수 과목은 집합 교육/실시간 대면 교육 모두 진행 가능, 선택 과목은 비대면 상시(영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 교과목별로 대면/비대면 분리 수강이 가능하다.
- 교육 신청 시 대면 수강 과목과 비대면 수강 과목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필수 과목 수강 및 총 교육 이수 시간이 충족된 경우, 대면/비대면 방식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교수·학습 및 평가

### ① 승급 연수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 대면 및 비대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과목 예시는 <표 20>, <표 21> 참고)
- 비대면 교육의 경우 필수 교과목 및 선택 교과목 전부를 개설·운영한다.
  - ※ [실습] 수업은 소규모 강좌로 진행한다.
  - ※ [실습] 교과목은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 불가능하지만 해외 체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인해 집합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가능하다.
- 대면 교육의 경우, 필수 교과목 전부를 개설·운영한다.

※ 필수 과목은 대면 집합 교육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대면 상시 교육으로 진행한다.

- 교육 대상자는 필수 교과목 영역에서는 20시간(10과목), 선택 과목 영역에서는 60시간(30과목)을 필히 이수한 경우 승급 연수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선택 과목의 경우 이전 승급 연수에서 수강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
- 교육 수료 후 최종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승급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 교육 이수 조건과 평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승급 가능하다.

## ② 직무 연수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과목 예시는 <표 22>, <표 23>, <표 24> 참고)
- 비대면 교육의 경우 공통 교육과정의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전부와 특별 교육과정의 선택 교과목 전부를 개설·운영한다.
  - ※ [실습] 교과목은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 불가능, 다만 해외 체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인해 집합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가능하다.
- 대면 교육의 경우, 공통 교육과정의 필수 교과목과 공통/특별 교육과정의 선택 교과목 일부를 개설·운영한다.
  - ※ 특별 과정 중 [실습] 교과목은 필수로 운영한다.
  - ※ 필수 과목은 대면 집합 교육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비대면 상시 교육으로 진행한다.
- 교육 대상자는 필수 교과목 영역에서는 8시간(4과목), 선택 과목 영역에서는 8시간(4과목)을 필히 이수한 경우 직무 연수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선택 과목의 경우 이전 직무 연수에서 수강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

### ③ 평가

- 보수교육 운영기관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교육과정 수료 및 이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수료자 명단을 각 교육기관 및 보수교육위원회에 통보한다.
- 운영기관은 보수교육 평가 시스템(시험 및 교육 실무 평가 환경, 평가자 등)을 구축하고 교육 이수 후 평가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치한다.
- 승급 연수
  - 급별 승급 연수 과정 중 과목 영역에서 20시간(10과목), 선택 과목 영역에서 60시간(30과목) 중 100% 이상 이수 시간을 충족하고 최종 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할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 승급을 위한 최종 평가는 [필수 과목 + 선택 과목(1) + 선택 과목(2) + 선택 과목(3)]으로 구성되며 응시자가 희망 교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회차에 따라 과목별 응시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응시 제한이 가능하다.
  - 과목별 교육 시간(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분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면 집합 교육의 경우 10분 이상의 수업 시간 결손(지각) 발생 시 해당 교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 집합 교육 대상자는 부득이한 경우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최종 평가에서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회기(또는 다음 회기)에 1회 추가 응시할 수 있으며 2회기 이상 평가 점수 미달 시 승급 연수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 직무 연수
  - 급별 직무 연수 과정 중 필수 과목 영역에서는 8시간(4과목), 선택

과목 영역에서는 8시간(4과목) 중 90% 이상 이수 시간을 충족할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 ▶ 교과목별 자체 평가 및 실습 결과물 피드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수료 여부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교과목별 교육 시간(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분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 대면 집합 교육의 경우 10분 이상의 수업 시간 결손(지각) 발생 시 해당 교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 ▶ 집합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표 34> 비대면 교육 대체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임산부 -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출산예정일 임박 등으로 인해 장시간 착석이 불가능한 경우	- 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등
- 갑작스럽게 발생한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및 사망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회,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 소환장 등 공적문서
- 기타 국립국어원 및 보수교육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 사유서(전후 상황 및 사유 소명 포함) - 해당 사유 관련 증빙서류

## 5) 보수교육 위탁 및 운영 기관

### (1) 보수교육 위탁 및 운영 기관 범위

#### ① 보수교육 위탁 및 운영 가능 기관 일람

-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 및 학위 과정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기관
- 국내외 한국어교육 전문기관
- 국내 KSL 프로그램 운영 학교기관 및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 국내 사회통합 및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
- 국외 거점 세종학당
- 국외 한글학교 및 한국문화원



- 기타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 ② 기관 요건

- 정관, 운영 규정 등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집합 및 비대면 보수교육 운영 환경(장소, 관련 기자재, 강사 풀 등)을 확보해야 한다.
-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행정 담당 인력(정규직)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보수교육 운영지침과 규정에 의거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해야 한다.

## (2) 기관 운영 기준 및 행정 사항

### ① 보수교육 위탁 및 운영 기관 선정 절차

절차	세부내용
보수교육 수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보수교육 대상자 규모 파악(해당연도 직무·승급 및 특별 교육 수요 파악)</li> <li>- 위탁 및 운영 기관 수급 상황 확인</li> </ul>
↓	
운영기관 선정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자체 점검표, 운영 및 교육 계획서 접수</li> <li>- 작성된 운영 및 교육 계획서의 유효 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함</li> </ul>
↓	
기관 선정 및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과정을 거쳐 운영기관 선정</li> <li>- 지역 거점별 보수교육 계획 공지(운영기관, 교육명, 교육 장소, 교육 일자 등)</li> </ul>
↓	
교육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기준에 따른 결과 보고서 및 이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심의</li> <li>- 최하위기관 선별 및 심의 결과 공지</li> </ul>
↓	
평가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성실 수행 시 위탁 및 운영 기관 재심사 지원 자격 박탈</li> </ul>

[그림 15] 보수교육 위탁 및 운영 기관 선정 절차 흐름도

## ② 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산하 보수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탁 및

운영 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을 위임한다.

- 위탁 및 운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및 지침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에 대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 및 시행한다.
- 교육 운영과 관련한 출석 확인, 교육 내용, 이수 시간 인정, 교육비용 산정 등이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 ③ 행정사항

- 보수교육 위탁 및 운영 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 교육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선정 기관의 경우, 전년도 교육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관장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증, 교육참가 확인서 등 각종 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 명단
  -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및 증빙서류
  - 그 외 이수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④ 금지사항

- 보수교육 위탁 및 대행 행위
- 보수교육 대상자 강제모집 및 타 기관 교육 방해 등 불공정한 행위
- 교육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교육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 특정 단체 혹은 교육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행위
- 교육 내용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행위
- 교육 이수자의 실적 등 교육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 보수교육과 관련한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행위

### 3. 법령 개정안

#### 3.1. 법령 개정안 마련의 사전 검토

##### 1) 보수교육이 명시된 자격 제도 법령의 특징

- 제도안의 기초 토대는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 조문에 “보수교육”이 명시되어 있는 자격 및 관련 분야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법제처에서 제공되는 전체 법령의 검색을 통해 33개 분야에서 관련 보수교육을 찾을 수 있었고, 각각의 특징은 [부록 5]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sup>53)</sup>
- 33개의 보수교육 법령 중에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을 위한 법령안 마련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자격 제도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중등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있다.
-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매년 8시간의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보수교육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21년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학교나 의료기관 소속의 경우에는 12시간 교육으로 강화되었다. 보수교육의 운영은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되고 있다.<sup>54)</sup>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승급 연수 80시간, 직무 연수 40시간(매 2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원장과 일반교사를 구분하여 직급에 따른 보수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53) 일부 “연수”의 용어를 사용하는 분야들도 있지만, 자격 제도 내에서 자격 소지자의 수준 제고와 능력의 향상성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보수교육”이다.

54) 21년 개정 운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8시간 의무이수를 해야하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등급별 사회복지사)와 12시간 의무이수를 해야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영역별 사회복지사)로 나누어져 있다.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시도 조례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되고 있다.

- 초중등 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은 다른 분야와 유사한 보수교육을 연수로 다루고 있으며, 교육 과목의 전환이나 직역의 승급 등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의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보수교육 경비나 교육비, 수당 및 실비 변상 등 재정의 운용에서 상당히 정교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연간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는데 특이하게 합숙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의 과태료나 소속 기관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의 과태료 등이 상세히 정의되어 있다. 청소년 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 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되어 있다.
- 법령에 보수교육이 명시되어 있는 자격제도는 33개 분야에 이르지만, 연수 등의 명칭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자격제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주무부서에서 위탁 운영되는 형태이며, 자격증 소지자 협회,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실무가 운영되는 국립 기관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의 특징

-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기술자격처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나, 자격의 관리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자격 중 업무상의 배타성이 있는 자격들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자격들이 다양하게 있으며,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부서인 자격의 종류는 15종에 이르고 있다.<sup>55)</sup>
- 이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된 자격은 (1)~(5)까지이며 이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55)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2>

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99년부터 시행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의 폐지 정책의 영향으로 보이며, 별도의 기관들에 위탁되어 있는 (6)-(9)까지의 자격은 기관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승급 보수교육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1) 관광통역안내사: 독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어시험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한다.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으며, 자격 대여 시 취소 조건이 있다.

(2) 국내여행안내사

-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관광 관련 학과 졸업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자격 대여 시 취소 조건이 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 실무경력이 중요한 자격의 특성상, 준학예사(1-5년 경력+자격시험) 취득후 3급(1-4년), 2급(5년), 1급(7년)등의 실무경력이 중요하다. 이때 실무경력을 줄여주는 요소는 학위 취득으로 3급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는 필요경력이 1년, 석사학위는 2년, 그 외는 4년으로 되어 있다. 부정 자격 취득 및 대여 시 자격 취소 조건 역시 가지고 있다.

(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원 3급

- 양성과정에 등록 후 시험 합격시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2급과 1급은 경력에 의한 승급만이 규정되어 있고, 별도로 학위 과정에서 부전공을 한 경우 3급,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경우 2급의

취득이 가능하다.

(5)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호텔서비스사의 경우 관광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호텔관리사는 관광분야 학과 졸업자나 호텔서비스사 취득후 3년 이상 경력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학부 이상 졸업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다. 총지배인에 해당하는 호텔경영사는 호텔관리사 취득후 3년 이상 경력자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제한되며 경력에 의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건강운동관리사, 경주심판,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

-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강운동관리사와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체육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해당 경기 경력이 4년 이상 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일반 국민들도 지원가능하나 자격 시험상 5개 이상의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추가된다. 체육 관련 학과 졸업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별도의 보수교육 제도는 없는 것 같으나, 자격 취득 시의 연수과정을 상당히 긴 시간 설정한 형태로 되어 있다. 1급의 경우 250시간이며 2급도 9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주심판은 경륜과 경정에 대해서만 자격이 있는데, 별도의 후보생 과정을 거쳐 각 경륜장이나 경정장을 통해 교육·훈련된 자에 한해서 취득 가능하다. 별도로 경주선수 자격도 경륜이나 경정선수 후보생을 거쳐 상당기간의 18개월의 양성교육 이후 취득 가능하다. 결격 사유 및 자격 정지를 포함하며 자격 취소 조건 있으며, 보수교육 미이수의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7) 무대예술전문인: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위탁  
- 3급, 2급, 1급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야의 특성상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소지의 경우 실무경력 조건을 단축할 수 있다. 각각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무대예술분야 재교육”의 명칭으로 23시간 규모의 실무 보수교육을 시행 중이다. 부정 취득 및 대여 금지 등 자격 취소 조건 있다.

(8) 문화예술교육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탁  
- 문화예술 관련분야 졸업후 별도의 5과목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거나, 비전공자의 경우 15과목(40학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1급 승급조건(연수교육 150시간이나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결격 사유 및 자격 취소 조건 있다.

(9) 사서: 한국도서관협회 위탁  
- 학부 및 대학원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같은 3개의 사서교육원을 마치면 준사서를 취득할 수 있고, 승급조건 외에 해당 사서교육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승급이 가능하다. 승급 및 준사서의 교육기간은 모두 1년으로 되어 있다. 자격 취득후의 보수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교육훈련”의 명칭으로 운영하는데 작년의 경우 총 107개 과정으로 143회 시행했다. 부정 취득 및 자격 대여 관련 자격 취소 조건이 있다.

○ 한국어교원의 자격 중 접근성이 높은 3급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검정시험이 위탁되면서 국가전문자격보다는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하

게, 자격의 발급만 규정되어 있고 보수교육에 대한 명시적 제안은 없는 상태이다. 이는 99년의 국가기술자격 규제 완화 흐름에서 보수교육 폐지와 갱신등록제 폐지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sup>56)</sup> 반면 최근의 기본법 체계 내의 다른 자격들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 국가전문자격임에도 이 자격을 활용하는 입법례가 없는 상태이다. 자격취득자 우대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채용 시 1급 자격 소지자 등의 채용 의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후 자격 제도 전반의 법령 정비를 통해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격들을 살펴보면, 승급시 학위의 취득을 승급 연수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해주거나(스포츠지도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승급시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거나(국내여행안내사, 스포츠지도사 등) 경력인정 시간을 단축해주는(학예사, 호텔관리사 등) 우대 조건이 있다.
- 한국어교원은 3급과 2급에서 학부 학위에 따라 자동 발급되는 것 외에 승급 과정에서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에 대한 우대 조건은 없는 상태이다.

### 3) 법령 개정안의 형태

- 사업단에서 최초 검토한 법령 개정안의 형태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 <1안> 「국어기본법」에 제19조3 자격취소를 개정하고 제19조의4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자격 요건, 자격 부여 방법, 양성과 자질 함양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을 명시하는 방법
  - <2안> 시행령에 제13조3(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실시, 필수 과목, 교육시간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
  - <3안> 시행령 제13조의 각 자격에 단서를 붙여 승급 연수를 규정하

56) 백옥선·이상윤(2019),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II), 한국법제연구원, 186p.



고, 6항을 신설하여 직무 연수를 정의

- 한국어교원의 위상 및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1안>이 유리할 것이나, 이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행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2안>과 <3안>이 용이할 것이고, 가장 쉽게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3안>과 같이 시행령의 조항에 단서항을 추가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을 너무 복잡하게 하고, 이후 수정작업이 간결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최초 <2안>의 형태로 시행령에 보수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과 고시로 위임하는 형태의 법령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초안을 마련하였다.
- 이후 이 초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은바<sup>57)</sup> 자격 소지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변경이 포함되므로 해당 사항은 기본법에 명시되고, 이것이 다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는 것이 추후 있을 수 있는 위헌 문제의 소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sup>58)</sup> 이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본 과제의 최종 제안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보수교육 및 관련 자격의 의무와 권리를 「국어기본법」에 명시하고, 구체적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에 위임하는 <1안>의 형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 최종적으로 본 과제는 법률에서 「국어기본법」 제19조의3(자격취소)의 개정, 제19조의4(보수교육의 실시)의 신설을 비롯하여 동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의 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의 개정, 제5조의2(한국어교원의 보수

57) [부록 7] 법령 자문의견 종합

58) [부록 7]에서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의 자문 의견 중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기존의 한국어교원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략) 결론적으로,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인 ”국어기본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보수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국어기본법」 제19조 제4항으로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5항에서 보수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부록 7]을 참고.

교육)의 신설, 제5조의3(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고시에서 「한국어 교원의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 3.2. 법령 개정안 제안의 전제 사항

### 1) 현행 법령안의 특징

-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므로, 정부 부처 내의 협의만 끝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목표로 법령안의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국어기본법」에 반영되어 관련 규정들의 위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령 자문의 결과에 따라 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어교원의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자격을 취득한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등은 동법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수립된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2021)에서는 별도의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의 주제 아래 세종학당을 통한 현지 한국어교원의 재교육 강화와 한국어교원 연수 과정 운영에 대한 계획만이 수립 진행되어 있다.
- 한국어교원과 관련한 법령의 위임관계를 살펴보면, 「국어기본법」 제19조2항<sup>59)</sup>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sup>60)</sup>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의 항목으로 1급, 2급, 3급의 자격을 기술하고 있고, 제14조<sup>61)</sup>에

59)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60)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61)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교육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해당 자격의 심사의 절차를 기술하고 이를 동법 시행규칙<sup>62)</sup>을 통해 한국어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과 관련한 다른 법적 근거는 “자격기본법”에 있다. 자격기본법 2조 4항의 “국가자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은 동법 35조<sup>63)</sup>에 근거하여, 자격 관리자를 통해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 제도안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안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 이후 제도안의 세부 영역에서 실제 행정 절차의 진행 및 공청회를 거쳐 수렴될 의견에 의해 일부 내용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 이 장에서 설정한 연수 시간 및 학위과정을 통한 교육 면제 여부, 3급에서 2급 승급 제도의 유지 여부와 유지 시 평가 포함 여부, 특별 교육에서 해외 거류 자격 미소지자의 연수 가능 여부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

### (1) 보수교육의 필요성

- 보수교육은 자격의 부여 이후 자격관리를 통해 한국어교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

62)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제4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63)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에서도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실증된다.<sup>64)</sup> 국내의 경우 기본법 체계 내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들은 예외없이 보수교육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의 자국어 교사 제도에서도 민간 자격 제도를 운영하거나 국가의 지원을 통해 문화원 위주의 운영을 하는 일본, 미국, 영국 등과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격 진입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는 상당한 시간의 보수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 보수교육의 대상자

- 보수교육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되, 직무 연수와 승급 연수로 대별하여 기본적인 대상자는 1급, 2급, 3급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와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려는 자가 된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승급 교육의 대상자는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자격 미소지인 상태에서 한국어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의 한국어교원을 위한 연수 교육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허락을 득한 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보수교육의 형태

- 1급과 2급, 3급의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직무 연수와 1급과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받는 승급 연수로 구성된다.
- 이때 직무 연수는 대상을 책임 교원, 일반 교원, 경력 단절 및 신규 취득의 미종사 교원으로 나누고 다시 공통교과와 교육대상별로 분류한 특별 교육으로 유형화한다.

---

64) [부록 1], [부록 2] 참고.

#### (4) 보수교육의 방법

- 승급 연수는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다.<sup>65)</sup>
- 직무 연수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고, 연수과목에 따라 비대면 과목이 가능한 것들을 별도 제안할 것이다.
- 실습 등의 교과는 대면 교육이 원칙이나, 이 경우도 상황과 처지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모듈을 이용할 수 있다.<sup>66)</sup>

#### (5) 의무 사항의 대상과 근거

- 다른 문화체육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의 선례(스포츠지도사 등)를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로 설정한다. 다만, 과태료 등을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자격 소지자 개인에 대한 미이수 시의 처벌조항은 없다.
- 전국적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원이 소속된 기관들에 보고 의무를 설정함으로써 해서 교육 대상자의 명단과 면제 사유자들의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하도록 제안한다.
- 또한, 여타 자격제도에 모두 갖추고 있는 자격의 취소와 정지 관련한 조항을 제안하고 해당 항목에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 법령으로 제안되는 한국어교원 소속 기관의 범위는 개인과외나 학원을 뺀 거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적 한국어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기관 보고 대상에 모두 편입되는 장점이 있다.
- 이때 미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수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자격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자격의 갱신 제도가

---

65) 교육과정에서는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 시간을 제시하였으나 법령에는 승급 연수에 대해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승급 연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운영은 보수교육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66) 이 역시 앞의 교육과정과 상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은 큰 차이가 없다.

아니므로,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직무 연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승급 연수는 승급 심사 제도 내에 이미 현업에 종사하는 경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관 보고에 의해서만 등록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 다만, 교육의 확대 측면에서 등록 시스템의 구축 등 전산 관리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법령이 체계화되어 의무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 등이 확보가 된다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처럼 기관 등록자는 보수교육 비용 지원, 개인 접수의 경우는 지원없음 같은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본 연구에서는 직무 연수도 의무임을 바탕으로 법령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를 선택으로 하는 경우 수정되어야 할 항목은 비교란에 별도로 기술하였다.
  - 우선 자격 정지의 경우 재량권의 형태로 “정지할 수 있다.”로 제안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직무 연수의 시간은 필수 8시간과 선택 8시간, 요구에 따라 추가 수강 가능한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16시간 이상 22시간 이내로 선택 수강하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하여야 한다.
  - 끝으로 직무 연수의 면제 조항은 선택의 경우 삭제하도록 비교란에 기술하였다.

#### (6) 시간 및 주기

- 교육 시간은 승급 연수는 필수 과목 20시간과 선택 과목 60시간의 총 80시간으로 하고, 직무 연수는 공통 교육을 16시간으로 하여 필수 과목 8시간과 선택 과목 8시간으로 구성하되, 특별 교육은 추가로 수강 가능하다(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주기는 직무 연수는 2년 주기로 설정하고, 승급 연수는 승급 심사 신청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7) 면제 및 유효기간, 교과목 인정 범위

- 승급 연수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승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차(2년)의 직무 연수에 대해 면제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승급 연수의 유효기간은 2년이 되며, 이때까지 승급 평가 및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직무 연수를 하거나 승급 연수를 받아야 한다.
- 국가 지원 한국어교원 관련 별도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우, 보수교육의 필요 시간 중 선택 과목 이수로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우선 제안한다. 이때 인정이 가능한 교육과 연수의 범위는 보수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주기별로 확정하기로 한다.

(8) 교육과목 설정

- 제도안을 통해 기본적인 과목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주제별 지침 등으로 참고하고 각 위탁 기관들이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수업과목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9) 교육 평가

- 승급 연수는 과정 평가형으로 위탁 기관의 내부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80점)을 상회하면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 직무 연수는 과정의 수료만으로 통과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수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위탁 기관에서는 별도의 형성 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을 제공하기로 한다.
- 추가적으로 승급 연수 평가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위탁 기관별 편차에 대비해 전국단위의 외부평가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위탁 기관 선정

- 선정 및 평가 지침을 통해 기준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지침은 가안이며, 세부 내용은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수정

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 국내는 지역 거점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외는 세종학당 등을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외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수강만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선정과 평가는 법률을 통해 제안할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를 통해 하기로 한다. 이후 제도가 안착되면 한국어교원협회 등이 위탁 기관이 될 수도 있게 법령을 제안하기로 한다.



### 3.3. 국어기본법 등 법령 개정안

구분	개정안	비고
	국어기본법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사유	<p>제19조의3(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li>2.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li> <li>3. 제19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li> <li>4. 한국어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li> </ol>	<p>기본법 제19조의3(자격취소) : 개정, 자구 삽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소 및 정지 사유</li> <li>※ 직무 연수를 선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지시킬 수 있다”의 재량권 규정이므로 문제없음.</li> </ul>
보수교육의 필요성	<p>제19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기본법 제19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교육 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규정</li> </ul>
소속기관의무	<p>② 한국어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자 보호</li> </ul>
소속기관의무	<p>③ 한국어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의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보고 의무</li> </ul>
소속기관정의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관 정의</li> </ul>

구분	개정안		비고
	국어기본법		
위탁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육 위탁 근거
세부내용 위임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세부사항 위임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승급 연수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고 법 제19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친 사람			시행령 제13조의(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①항 : 개정, 자구 삽입 • 승급을 위한 보수교육 명시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p>2. 한국어교원 2급 (중략)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고 <b>법 제19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친 사람 있는 사람</b></p>			
승급 심사조건		<p>제5조 ① .....</p> <p>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및 <b>보수교육 수료증</b></p> <p>.....</p> <p>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및 <b>보수교육 수료증</b></p>		<p>시행규칙 제5조의(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①항 1  <b>: 개정, 자구 삽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및 2급 승급의 경우, 심사 시 필요한 보수교육 수료증 명시</li> </ul>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대상자		<p>제5조의2(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등)①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p>1. 보수교육 대상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어교육 기관 종사자</p>		<p>시행규칙 제5조의2(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p> <p>: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교육 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규정</li> </ul>
방법		<p>2. 보수교육 방법 : 집합 교육 및 원격 교육</p>		
형태		<p>3. 보수교육 형태 :</p> <p>가. 한국어교원의 자격 수준 유지를 위한 직무 연수</p> <p>나. 1급 및 2급 승급을 위한 승급 연수</p>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시간		<p>4. 보수교육 시간 : 2년 단위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가. 직무 연수는 필수 교육 8시간과 선택 교육 8시간의 16시간으로 구성된다. 특별 교육은 필요에 따라 6시간 범위에서 추가 수강 가능하다.</p> <p>나. 승급 연수는 필수 교육 20시간과 선택 교육 60시간의 80시간으로 구성된다.</p>		<p>※ 직무 연수를 선택으로 하는 경우에는</p> <p>가. 직무 연수는 개설 과목에 따라 16시간 이상 22시간 이내에서 선택 수강 가능하다.</p>
면제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직무 연수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주기의 직무 연수를 면제할</p>		<p>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유예는 설정하지 않음.</p> <p>※ 직무 연수를 선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1. 직무 연수 면제 항목 삭제<sup>67)</sup></p>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p>수 있다.</p> <p>가.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자 나. 승급 연수를 마치고 승급 심사를 대기 중인 자 다. 국가 지원 한국어교원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자 라.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2. 승급 연수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급 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p> <p>가.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의 박사 학위 취득자로 1급 승급을 희망하는 자 나.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학위 과정 재학을 사유로 한 면제</p> <p>승급 연수를 사유로 한 면제</p> <p>박사 학위 취득자의 승급 연수 면제</p> <p>세종학당, 사통, 배움이음터 등의 교육 이수자 면제</p>
수탁기관 공개모집		③ 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하려는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으로 위임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교육과정, 평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이하 “보수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보수교육위원회는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보수교육위원회는 다음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 신설, 자격 심사위원회 준용 : 세부 운영세칙은 별도 고시 필요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p>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보수교육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1. 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사항</p> <p>1.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p> <p>1.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p> <p>1. 그 밖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규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 신설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어교원의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탁 기관 선정			제2조(수탁 기관 선정)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4제5항에 따른 수탁 기관의 선정은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구성된 한국어교육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한다.	
교육내용			제3조 (보수교육의 내용과 시간)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어교육 내용 :한국어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교육방법			<p>지식 교육, 언어 기능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p> <p>1. 한국어교육 방법 : 언어 교수법, 새로운 교수 방법, 교육 자료 개발, 평가 문항 개발 및 채점, 수업 컨설팅 등</p>	
교육행정			<p>1. 한국어교육 행정 : 학생 지도 및 상담, 교원 교육 및 관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등</p>	
교육시간			<p>② 교육 시간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p> <p>1. 직무 연수 :  가.공통 교육 필수 과목 8시간  나.공통 교육 선택 과목 중 8시간  다.특별 교육 선택 과목 6시간까지 추가 수강 가능</p>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p>2. 승급 연수 :</p> <p>가.공통 교육 필수 과목 20시간</p> <p>나.공통 교육 선택 과목 중 60시간</p> <p>③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주기는 2년으로 한다.</p>	
교육 평가			<p>제5조 (보수교육 평가)① 보수교육의 평가는 수탁기관 별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p> <p>② 평가의 세부 지침은 시행규칙 제5조의3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p> <p>③ 문화체육부장관은 별도의 전국 단위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보수교육 수료증 발급			제6조 (보수교육 이수증의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발급) 보수교육 수탁 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0호 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명단보고			제7조 (한국어교원 소속 기관 및 단체의 보고) 법 제 19조4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단을 보수교육 실시 주기의 전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명단 보고 2.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 사유가 있는 자의 사유와 명단 보고	
지도, 감독			제8조 (지도·감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 내용, 실시 등에 대	

구분	개정안			비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0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7) 1호 직무 연수 면제 항목을 삭제 하고, 제2항의 내용을 “.....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에서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중 승급 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또한, 2호의 “2.승급 연수 면제: 다음 각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가.나.다.로 이루어진 각목을 1.2.3.의 각호로 바꾼다.

## IV. 보수교육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여러 제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요건 중에서 본 연구팀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연구진, 교육을 받는 교사, 정책 지원을 하는 관련 부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준비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1. 교원들의 수요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보수교육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우수해야만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70%가 넘는 교원들은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다양한 목적과 변인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로 인해 현장의 한국어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자문 의견에서 우려를 표했듯이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 내용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교원들은 교육 기회를 국가 서비스로 인식하지 않고 규제 내지는 속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별로 개발하여 교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교육으로 만드는 것이 보수교육 제도 정착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 이제까지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개인 연구자에게 주제별로 의뢰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대규모로 운영되는 보수교육 운영에 단시간 내 한계를 보일 것이다. 주무 기관은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2년 주기로 세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교원들

이 잘 적응하여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1.2. 대면, 비대면 병행의 교육 시스템 확립

-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는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선택 과목은 비대면으로 운영하되, 실습과 교육 자료 개발을 주로 하는 공통과목은 대면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에선 수업뿐 아니라 출석, 평가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1~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하여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 맞는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교원들의 적극적 참여

### 2.1.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 보수교육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이 제도가 교원의 능력이나 자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보수교육 제도는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사들의 인식 개선과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이므로 한국어교육계가 발전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보수교육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요구를 주무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사 자격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단체를 결성하여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요구하거나 교육을 수

탁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은 아니더라도 교원들의 교육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2. 교육기관의 협조 유인책 마련

-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이 원하는 대로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속 교원을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 교육기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기관에서 일부 교육비를 부담하게 한다면 교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특히 직무 연수를 선택으로 하는 경우 참여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교육기관 평가에 소속된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 참여율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의 경우 현재 교사 자격증 소지율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학 교육기관은 물론 사회통합프로그램, KSL프로그램 참여 교원들의 보수교육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기타 교육기관의 협조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3. 정책 관련 부처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

### 3.1. 연수 교육 필요에 대한 적극적 홍보

- 한국어교원 자격은 국가가 자격을 심사,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다른 유사 자격과 달리 보수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격 제도 중 하나다. 이는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의 내용 연구와 외부 확장에 주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앞서서도 기술하였듯이 현재 한국어 학습자는 국적 다양화, 목적 다



양화,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 등 국내 학습자 증가 등 시시각각 변화하고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새로운 교육 자료 공급, 새로운 교육 방법 교수 등 교육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 이러한 교육 필요성을 관련 부처는 한국어교원뿐 아니라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보수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
- 규모가 크고 학습자가 균질화된 교육 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질 격차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교원들 간의 교육 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 3.2.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 1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2절의 교육기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한국어교원 관리 기관이자 한국어교육 연구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주요 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 현재 각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은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부처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비뿐 아니라 숙박비, 항공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한국어교원이나 외국에서 활동하는 교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부록 1]과 [부록 2]의 국내외 유사 자격 제도 검토 결과를 참고하면, 교육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기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부담하는 예도 적지 않다. 한국어교원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이들을 교육하는 재정 지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3.3. 연수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도화

- 유사 자격 제도는 자격증의 급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고 급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한국어교육 기관은 급에 따른 직무 구분이나 처우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급에 따른 직무 구분과 처우 개선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연수를 의무화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가 교원들에게 주어져야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토퍹 시험 참여의 우선권이나 국가 프로젝트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귀례·정상우(2019), 「대학기관 소속 한국어교원의 국립국어원 교원연수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5(6),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81-400.
- 강소영(2020), 「한국어 교사 대상 온라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과 개선 방향: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11), 한국문화융합학회, 1011-1035.
- 강승혜(2011),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 \_\_\_\_\_(2015), 『한국어교원자격제도 10년의 회고』, 국립국어원.
- 강승혜 외(2017),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및 교원자격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5), 『2015~2016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_\_\_\_\_(2018),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김민수(2015), 「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2(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3-44.
- 김선정(2010), 『국외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김은호 외(2019), 『국내외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국립국어원.
- 김은호·연우진(2020), 「다문화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탐색 -한국어(KSL)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5,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31-158.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국립국어원.

- 김재욱 외(201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 교원 대상 공동연수회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김혜원·김은호(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28.
- 김희규 외 (2016), 『교직 생애단계별 연수체제 확립 방안 연구』,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합동(2017),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20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 박민신·윤여탁(2019),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재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온라인 한국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6),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29-349.
- 박지순·박정아(2013),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및 제언』, 『이중언어학』 52. 이중언어학회. 181-220.
- 박지순·최진희(2010),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어교육』 2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5-76.
- 박지순·박정아(2013),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 개발을 한 요구 분석 및 제언」, 『이중언어학』 52, 이중언어학회, 181-220.
- 방성원(2016), 「한국어 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어교육』 2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9-103.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백옥선·이상윤(2019),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 시애틀컨설팅(2019), 『한국어교원 자격을 위한 제도 연구』, 국립국어원.

- 신은경(2015), 「한국어 교사의 교수학적 내용지식 (PCK) 연구」,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8-254.
- 윤희정(2013), 「단위학교의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 외(2018), 『한국어교원 합동 연수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국립국어원.
- 이관식 외(2015). 『국내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프로그램 개발』. 국립국어원.
- 이미화 외(2016), 『보수교육과정 매뉴얼』,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선웅 외(2016), 『2016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이승연·주경희(2013), 「한국 문화 교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이중언어학』 52, 이중언어학회, 347-369.
- 이정란 외(2017),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진경(2014),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를 위한 보수교육 방안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75, 한국사상문화학회, 485-508.
- 이해영 외 (2016),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이해영 외(2017가),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현황 조사 및 시사점」, 『새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학회, 83-113.
- 이해영 외(2017나), 「발전기 및 심화기 한국어 교원 재교육」, 『우리어문 연구』 59, 우리어문학회, 383-407.
- 조현용·장미라(2018),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교원의 요구와 관련변인 연구-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9(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9-199.
- 최윤경 외(201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정순 외(2012), 『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과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한국교육개발원(2019), 『2020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한국교육개발원.

황용주(201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교원 역량 강화 정책』.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9-237.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s://kteacher.korean.go.kr/home.do>)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한국보육진흥원(<https://www.kcpi.or.kr>)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https://acei.arte.or.kr>)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 [부록 1] 유사 자격 제도(해외)

### 1. 독일: 그린 디플롬(DAS GRÜNE DIPLOM)

#### 1.1. 제도 운영 개요

- 독일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 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자격 제도 및 양성 과정임.
- 시행 기관은 독일 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로, 1951년 설립된 독일의 비영리 문화기관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됨.
- 독일어 보급을 위하여 해외 소재 다수의 소속 문화기관(독일문화원)과 협약하여 언어교육, 문화보급, 교사 양성, 독일어 시험 관리, 비대면 교육 등을 실시함.
- 교사 양성 및 교육의 경우, 양질의 독일어 수업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본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하고 관리함.
- 총 4단계(교육-인턴십(실습)-현지 세미나-자격 심사)로 구성되며 교원자격증은 현지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에서 발급함.
- 자격 취득 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독일에서의 연수 과정’, ‘현지에서의 연수 과정’, ‘비대면 연수 과정’의 다양하고 표준화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1.2. 관련 법령

-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독일 법령 및 기관 본부 내규에 따름.

#### 1.3. 교육 구분

##### 1) 교사 양성 및 자격 과정

- 내용: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사 양성 과정
- 대상: 현지 언어 및 독일어 사용 국가의 국적 소유자, 대학 졸업자, 독일어 모어 화자 또는 C1 이상의 독일어 능력 자격증 소지자

## 2) 교사 재교육(연수) 과정

### (1) 독일 연수 과정

- 내용: 독일 현지에서 진행되는 현직 및 신규 교사 연수 과정
- 대상: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 교사, 교사 양성 담당자 및 연수 담당자, 최소 5년간 이 분야에서 근무할 독일어 교사, 최근 3년 동안 독일 정부(괴테 인스티튜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2) 현지 연수 과정

- 내용: 교육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직 교사 연수 과정
- 대상: 기관 소속 모든 현지 독일어 교사

### (3) 비대면 연수 과정

- 내용: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현직 교사 연수 과정
- 대상: 독일 및 해외 독일어 교사(세부 프로그램 및 목적별 지원 자격 상이)

## 1.4. 교육 형태 및 교육과정

### 1) 교육 형태

- 연수 방식(연수 장소)에 따라 집합연수, 원격연수로 구분

### 2)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1) 자격 연수(그린 디플롬)

- DLL(Deutsch Lehren Lernen, 독일어 교원 양성을 위한 교재) 기반
- 10대 교육 원칙: 능력 중심, 학습자 중심, 스토리 중심, 학습자 활성화, 상호작용 중심, 학습자의 자율성 증진, 간문화 중심, 과제 중심, 다언어 중심, 디지털 미디어 통합



<표 1> 독일어 교원 양성 과정 프로그램

단계	내용	기간
1. 소개	테스트 및 수업 참관 20차시 15분 수업 Micro-teaching 및 세미나 개별 인터뷰 통한 참여 여부 판정(탈락자 선별)	7주
2. DLL3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독일어 지식) - 비대면 강의 수강 8시간의 수업 참관 PEP(Praxis Erkundungs Projekt): 팀 프로젝트 출석 수업	11주
3. DLL2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법(학습자와 제2언어습득) - 비대면 강의 수강 8시간의 수업 참관, 1시간 수업 실습 PEP(Praxis Erkundungs Projekt): 팀 프로젝트 출석 수업	11주
4. DLL4	과제, 연습문제, 상호작용(교수법) - 비대면 강의 수강 8시간의 수업 참관, 2시간 수업 실습 PEP(Praxis Erkundungs Projekt): 팀 프로젝트 출석 수업 비대면 코스 : 교사를 위한 독일어	11주
5. DLL5	학습 자료와 미디어(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 비대면 강의 수강 8시간의 수업 참관, 2시간 수업 실습 PEP(Praxis Erkundungs Projekt): 팀 프로젝트 출석 수업	11주
6. DLL1	교수법과 교육계획(교사론) - 비대면 강의 수강 8시간의 수업 참관, 2시간 수업 실습 PEP(Praxis Erkundungs Projekt): 팀 프로젝트 출석 수업	11주
7. DLL6	교육과정과 수업 구성 - 비대면 강의 수강 40시간의 수업 참관, 2시간 수업 실습 2회 PEP(Praxis Erkundungs Projekt): 팀 프로젝트 출석 수업	11주
8. 검증	표준 평가 시험(100문항 정도) 실시 PEP 6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이 중 3개에 관한 집중보고서 제출)	1일
9. 수업 참관과 교육 시험	90분 수업 2회 실시(A1, A2 과정 대상)	1일
10. 현장 교육실습	1년간 GI 실습 강사로 복무	1년
11. 지역연구 세미나	2주간 독일 현지 사정 학습	2주
12. 기타 자격	시험 통과, 자격증 취득, C2 수준의 독일어 능력 평가	-
13. 교육 시험2와 과정 수료	90분 수업 2회 실시	-

## (2) 교사 재교육(연수) 과정

### ① 독일 연수 과정

<표 2> 독일 연수 과정 프로그램

과정	대상	기간
L(지역 연구)	모든 종류의 학교 교사 또는 전문가 그룹	1~2주
MDI(교수방법론)	초등학교 DaF 교사 중등학교 또는 성인 교육기관 독일어 교사	1~4주
MD(원격교육 - 교원 양성 또는 교사 교육)	DaF 현직 교사 독일어 교원 양성 과정 재학생, 대학원생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독일어 교사 중등학교와 또는 성인 교육기관 독일어 교사	2~24개월
F(교수법 세미나)	중등학교 또는 성인 교육기관 독일어 교사	1~2주
DL(독일어)	초등학교 독일어 교사 중등학교 또는 성인 교육기관 독일어 교사	2주

### ② 현지 연수 과정

- 괴테 인스티튜트 소속 교사는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필수
- 교사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업 운영 질적 개선 목적
- 교육 내용: 본국에서 파견된 독일어 교육 전문가의 수업 참관 및 피드백(연 1회), 소규모 세미나(상시), 본국에서 파견된 순회 강사의 수업 참관 및 피드백(4년에 1회), 교육기관 자체 세미나(상시)

### ③ 비대면 연수 과정

<표 3> 비대면 연수 과정 프로그램

과정	내용	기간(시수)
DLL 표준	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 외국어 학습 영향 요인 커리큘럼, 연습, 상호작용, 교재와 미디어, 의사소통 방법 등	12개월 (350시간)
DLL 프리미엄	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 외국어 학습 영향 요인 커리큘럼, 연습, 상호작용, 교재와 미디어, 의사소통, 평가 등 전문 교원 대상 고급 심화 과정	15개월 (840시간)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교육 잠재력, 학습 과정 및 참여 형태 디지털 도구, 상호작용 촉진, 자료 탐색 등	8주(50시간)
비대면 교육 및 튜터링	비대면 학습, 웨비나 및 대면 워크숍 계획과 수행 비대면 가상 회의에서의 수업 구현, 중재자 역할 비대면 학습 상담, 모니터링, 튜터 역할 등	8주(50시간)
학교 교사를 위한 DaF	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 외국어 학습 영향 요인 기능 및 형식 중심 언어 자원 전달, 다양한 학습 유형 (협동, 개별) 읽기/듣기/말하기/쓰기/어휘/문법 교육, 자료 및 미디어 활용 등	12주(80시간)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육	실시간 회의 도구로 가르치기(동기식 교육) 학습 플랫폼으로 가르치기 도구와 앱으로 가르치기 강의실과 비대면 강의 결합	모듈별 3주(15시간)
비원어민 교사를 위한 독일어	독일어 수업 언어(구문, 문법, 숙어, 발음, 어휘) 강의 모니터링, 독일 문화, 외국어 수업 언어 활동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	10주(35시간)

### 1.5. 교육비

- 그린 디플롬: 1,800EUR(한화 약 241만 원)
- 독일 연수 과정: 장학 프로그램(수강료, 숙박 및 생활비, 항공료, 보험 전액 지원)
- 현지 연수 과정: 무료
- 비대면 연수 과정
  - DLL 표준: 1,300EUR / DLL 프리미엄: 2,150EUR
  - 디지털 미디어: 450EUR / 대면 교육 및 튜터링: 495EUR
  - 학교 교사를 위한 DaF: 650EUR
  -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육: 모듈당 295EUR(4개 모듈)
  - 비원어민 교사를 위한 독일어: 495EUR

### 1.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독일 본부를 중심으로 90개국 이상의 문화원과 협약을 통해 운영됨.
- 본부에서 현지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에 체계화된 교사 양성 프로그램, 재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함.

## 2. 미국, 영국: TESOL

### 2.1. 제도 운영 개요

- 제2언어/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ESL/EFL) 교사 양성 과정임.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자격 및 수료 과정으로 기관이나 학습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미국 TESOL 협회가 국제 TESOL 협회(TESOL International Association)로 변경되며 국내외 회원 및 협력 기관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영국 TESOL 기관, 국외 전문 및 사설 교육기관 등의 프로그램은 별도 운영됨.
- 1997년 TESOL 수료증 과정 국내(한국) 최초 도입되어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사이버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대면·비대면 TESOL 과정을 운영 중임.

### 2.2. 관련 법령

- 민간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관련 국가 법령 없으며 조직 내규에 따름.

### 2.3. 교육 구분

#### 1) 교사 양성 및 자격 과정

- 내용: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사 양성 과정
- 분류: 대학 기관 TESOL 과정, 사설 교육기관 TESOL 과정, 비대면 TESOL 과정

#### 2) 교사 재교육 과정

- 영어 교사 양성이 초점이 맞추어진 프로그램이며 전문 교육기관 및 사설 교육기관 등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함.
- 자격증이 발급된 경우, 유효기간이 없으며 자격 갱신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음.
- 각국 TESOL 관련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일부 ‘지원’ 및 ‘권

고'하고 있으나 강제성 없음.

- TESOL 협회의 비대면 과정, 개별 대학 및 사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함.

## 2.4. 교육과정

### ○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1) 교사 양성 과정

- 공통 교과과정(국제 TESOL 협회 규정): 제2외국어 습득 관련 교육학 및 방법론(언어학, 응용언어학, 사회언어학, 영어 구조), 교수 방법 및 영어 평가, 읽기 및 쓰기 영역 향상, 평가, 범문화적 의사소통
- 공통 교과과정 틀 내에서 개별 교육기관 재량 TESOL 교육과정 설계, 국가 및 기관별 프로그램이 상이함.
- 국내 TESOL 과정의 경우 비원어민 수강생 특성을 반영하여 작문, 영어학, 영문학 등의 교과과정을 포함함.
- 국내에서는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일반 TESOL 자격 과정, 어린이 TESOL 자격 과정(초등학생 이하의 영어교육 전문과정)을 분류함.
-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 해외 TESOL 전문기관과 협력 및 연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됨.

#### (2) 교사 재교육 과정

- 국내외 다양한 기관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 국제 TESOL 협회 비대면 재교육

<표 4> TESOL 비대면 재교육 과정 프로그램

과정	대상	내용	기간(시수)
ELT Leadership Management Certificate Program	기관 관리자 및 전문 교사	효과적인 리더십 자질 전략적 계획 교사 개발 주도 시간 및 회의 효율적 관리	1.5개월 (50시간)
TESOL Core Certificate Program	일반 교사	TESOL 표준 단기 프로그램 이론 교육, 심화 학습, 수업 참관, 수업 실습 등	6~11주 (140시간)

Advanced Practitioner	전문 교사	TESOL 전문 지식, 교수요목 및 수업 설계, 교수 전략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 등	1년간 자율 수강(10시간)
Developing An Online Teaching Program	일반 교사 및 비대면·모바일 교육 과정 개발자	비대면 영어 교육 기초(6주) 영어 능력 발달을 위한 비대면/모바일 서포트(6주) 비대면 교육과정의 계획, 설계, 수행(6주) 캡스톤: 이론 적용 및 실습(2주)	2주(20시간) ~ 6주(60시간)
Exploring Grammar: Phrasal Structures	일반 교사	문법 정의 명사구, 형용사, 조동사, 접사의 구조와 목적 교수 동사와 완료 시제 활용 교수 양태,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40시간
Exploring Grammar: Multiclaue Structure	일반 교사	수동태, 영어 문장과 절, 가정법, 형용사절	40시간
Fundamentals of TESOL	일반 교사	언어, 언어 학습, 교수 방법론, 교실 실습 등 관련 이론적 지식 학습	60시간
Teaching & Assessing Adult Learners	성인 대상 교사	성인 영어 교육 기초, 읽기와 문해력, 듣기와 어휘, 말하기와 발음, 문법, 쓰기 등	60시간
Teaching & Assessing Young Learners	아동 대상 교사	아동 발달, 언어 습득 및 학습, 아동 학습자 대상 영어 교수법, 영어 교실의 아동 학습자, 학습자 모니터링 및 평가, 학습 계획 등	60시간

## 2.5. 교육비

### ○ 교사 양성 과정(기관별 상이)

- 국내 대학 기관 TESOL 과정: 400~500만 원(입학금 별도)
- 해외 대학 기관 TESOL 학위 과정: 1,000만 원 ~ 1,500만 원
- 국내 사설 교육기관 TESOL 과정: 100만 원 ~ 200만 원
- 해외 사설 교육기관 TESOL 과정: 300만 원 ~ 400만 원

### ○ 교사 재교육 과정(국제 TESOL 협회 비대면 프로그램, TESOL 협회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가격 상이)

- ELT Leadership Management Certificate Program: USD 400 ~ 500

- TESOL Core Certificate Program: USD 835 ~ 2,290
- Advanced Practitioner: USD 410 ~ 945
- Developing An Online Teaching Program: USD 1000 ~ 2,300
- Exploring Grammar: phrasal Structures: USD 150 ~ 400
- Exploring Grammar: Multiclaue Structure: USD 150 ~ 400
- Fundamentals of TESOL: USD 225 ~ 600
- Teaching & Assessing Adult Learners: USD 225 ~ 600
- Teaching & Assessing Young Learners: USD 225 ~ 600

## 2.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협회 조직 운영 및 가입에 관한 운영 매뉴얼만 제공됨.
- 영국 TESOL의 경우, 대표적인 TESOL 공식 인증기관인 Trinity College가 CertTESOL 교육기관을 직접 선정, 평가, 관리함.
- 현행 TESOL 제도는 시행 국가별 및 기관별로 제도적 차이가 있음.
- 국내에서 시행되는 TESOL 과정은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 취득 방법에 따라 TESOL 전문 교육기관(해외 사설 교육기관 및 국내 대학 기관), 사설 교육기관(어학원 및 유학원), 비대면 TESOL 교육과정으로 분류되며 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기관이 존재함.
-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 시 국제자격으로 기능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유효하나 민간 자격이므로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자격 인정 및 유효 범위가 상이함.
- 사설 교육기관 자격증은 해당 기관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되며 해당 기관이 없어지거나 비영어권 국가에서 자체적으로(TESOL 전문 교육기관 협약 및 TESOL 협회 승인 없이) 발급된 경우 유효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국가 인증의 정식 교사 자격인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별도로 민간 자격으로 취급되며 영어 보조 교사 및 학원 강사 지원, 영어교육 대학원 지원 시 활용 가능함. 주로 영어 교사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활용됨.

### 3. 일본: 민간 일본어 교원 양성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

#### 3.1. 제도 운영 개요

- 일본의 제도는 일본어 교원이 되기 위한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이 없이 민간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 일본은 일본 외무성 소관 특수법인을 전신으로 2003년 10월에 독립 행정법인으로 설립된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JF)을 통해 일본어 보급 및 일본어 교사 연수를 진행함.
- 일본어 교원 자격은 1988년 문부성에서 발표한 ‘일본어 학교 운영 지침’을 따름. 아래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민간의 일본어 교원 양성 420시간 강좌를 수료
  - 공익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실시하는 일본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
  - 대학교에서 주전공이 일본어 교육으로 졸업, 수료
  - 대학교에서 일본어 교육과목 45학점을 수료하고 졸업
- 보수교육 또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며 교원 연수 센터가 운영하는 관리자 코스와 지도자 코스와 일반 재단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의 신임 주임교육 연수 제도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이 있음.

#### 3.2. 관련 법령

-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010년 3월 일본어 교육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JF스탠더드 2010’이라는 교육·학습·평가를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마련함.

#### 3.3. 교육 구분

##### 1) 교사 양성 과정

- 내용: 민간에서 운영하는 420시간의 일본어 교사 양성
- 분류: 일본어 구에 관한 지식, 일본어 언어생활에 관한 지식, 일본 사정, 언어학적 지식 및 능력, 일본어 교수법에 관한 지식
- 대상: 4년제 대졸 이상의 예비 교사



## 2)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 (1) 관리자 코스

- 내용: 외국인 아동 학생과 관련한 체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나 관계 기관과의 제휴나 대응에 관한 교육
- 대상: 모든 교육기관의 외국인 아동 학생의 교육 담당자, 각 학교나 지역에 관리자 코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수 관리를 추진하는 자

### (2) 지도자 코스

- 내용: 단계에 맞는 교수의 실제에 관한 교육
- 분류: 초기 지도 프로그램, 중기 및 후기 지도 프로그램, 교과 지도 실천 프로그램
- 대상: 모든 교육기관의 외국인 아동 학생의 교육 담당자, 외국인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지도 등의 경험이 있는 초중고 학교 등의 주임 교사 및 지도 교사 등으로 각 학교나 지역에서 지도자 코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수 관리를 추진하는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자

### (3) 신입 주임교원 연수

- 내용: 본어학교 전반에 대한 고찰과 유학생 관련 행정, 주임으로서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교육
- 대상: 일본어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해 주임교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4. 교육과정

### ○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1) 교사 양성 과정

- 민간에서 운영하며 총 420시간의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함.
- 교육기관은 단기대학 과정,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 비학위 과정으로 구분됨.
- 교준 내용: 일본어학, 언어생활, 일본어사, 일본 사정, 언어학 개론, 사회언어학, 대조언어학, 교수법, 평가법, 실습, 일본어교재 개발

(2)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① 관리자 코스

- 2일간 12시간 시행하며 연수 일수의 3/4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교부함.
- 외국인 아동 학생과 관련한 체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나 관계 기관과의 제휴나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외국인 아동 학생과 관련한 제도의 해결책 검토 및 분임별 과제 해결 방향성 공유

② 지도자 코스

- 4일간 25시간 운영되며 3/4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교부함.
- 초기, 중기, 후기, 교과 지도 프로그램으로 각 단계에 맞는 교수의 실제와 각 분임별 진도 상황과 정보를 교환함.

<표 5> 지도자 코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교육 내용
초기 지도 프로그램	일본에 온 직후의 학생에 대한 일본어 지도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
중기, 후기 지도 프로그램	일상 회화가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본어 지도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
교과 지도 실천 프로그램	일상적 회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학습 활동 참가에 곤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교과의 통합 학습'을 중심 내용으로 구성

③ 신임 주임교원 연수

- 연 1회, 3일간 20시간 운영되며 연수 시간의 90%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할 수 있음.
- 일본어학교 전반에 대한 고찰과 유학생 관련 행정, 주임으로서의 매니지먼트를 교육 내용으로 함.
- 그룹 활동을 통해 프리젠테이션으로 자신의 과제를 파악하고 수정하고 주임의 역할을 모색함.

### 3.5. 교육비

- 기관마다 상이함.
- 420시간 기준: 한화 약 330만 원(입학금, 교재비, 수업료 모두 포함)
- 독립 행정법인 교원 연수 센터의 관리자 코스와 지도자 코스, 일본어교육진흥협회의 신임 주임교원 연수는 모두 무료로 제공됨.
- 이 밖에 공인 재단법인 국제연수 협력기의 일본어 지도 세미나의 경우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음.

### 3.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수 일수에 따른 출석률에 따라 수료 여부가 결정됨.

## 4. 중국: CTCSOL(국제 중국어교사 인증시험)

### 4.1. 제도 운영 개요

- 중국의 CTCSOL(Certificate for Teachers of Chinese to Speaker of Other Languages)은 국가한반이 주관으로 해외 거주인 중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 시험임.
- 교사 자격의 경우 별도의 양성 과정 없이 시험을 통해 취득 가능함.
- 중국국가한반은 중국 교육부의 직속 사업기관으로 중국어의 보급 활성화와 문화교류 협력 강화 등의 추진을 도모하며 각국의 중국어 학습자에게 우수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공자학원을 설립함.
- CTCSOL 필기와 시강을 포함한 면접시험 합격 시 취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5년임.
- 자격증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에 보수교육(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함.
- 이 외에도 공자학원총부(국가한반)은 해외 중국어 교원 초정이나 중국어 교육 전문가 그룹을 해외로 파견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

## 4.2. 관련 법령

- 국제 중국어 교육에 관한 종합 법규는 없으며 국제 중국어 교사 인정, 자국어 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개별 부문으로 규정함.
- 국제 중국어 교사의 양성, 능력 평가 및 자격 인정을 하는 부분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국제한어교사표준으로 국제 중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 및 규범적인 교사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둠.
- 2006년부터 중국어 교사에 관련한 모든 민간 자격증 발급을 중단한 후 “국제한어교사표준(2007)”을 제정하였고 실용성, 체계성, 유효성의내용을 보완·개정하여 “국제한어교사표준(2012)”를 발표함.
- “국제한어교사표준(2012)”에 근거해 CTC SOL는 중국어 기초, 중국어 교수법, 커리큘럼 및 교실 관리, 중국문화 및 타 문화 이해, 직업 의식 및 전문성 등 다섯 항목을 평가함.

## 4.3. 교육 구분

- 1)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 시험
  - 내용: 중국어 교사 자격 인증 시험
  - 분류: 일반 유형(모든 국적의 학사학위 소지자 대상), 본토판 유형(외국 국적자 대상)
  - 대상: 보통화고시 2급 갑급 이상의 자(중국 국적), HSK 5급 또는 HSKK 중급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외국 국적)
  
- 2) 연수 프로그램
  - (1) CTC SOL 보수교육(계속 교육)
    - 내용: 중국어 교사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
    - 대상: 자격증의 유효기간인 5년 내에 자격증의 갱신을 원하는 자
  
  - (2) 해외 중국어교사 중국연수
    - 내용: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외 중국어교사에 대한 연수 과정
    - 대상: 만 60세 이하의 외국 명문 학교에 재직 중인 중국국적이 아닌 중국어 교사

(3) 전문가그룹 해외 교육연수

- 내용: 국외 중국어교사에 대한 현지 연수 과정
- 대상: 국외 학교에 재직 중인 외국 국적 중국어 교사

#### 4.4. 교육과정

○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1) CTCSOL 보수교육(계속 교육)

-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80학점, 대면 과정 2과목(20학점)으로 구성됨.
- 비대면 강의는 결제 후 2년 동안 반복해 들을 수 있음.
- 대면 과정에는 교육 전략, 교육과정 설계, 평가, 다문화 소통 등의 과목이 개설됨.

(2)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① 해외 중국어교사 중국연수

- 교육 기간은 1~4주로 특별한 연수 시기 없이 연중 모두 가능함.
- 중국어 지식 및 교육, 중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 현대 교육 기술의 중국어 교육 응용, 중국 특색 문화, 중국 국내외 중국어 교사 교류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됨.
- 표준 교과: 현대한어개론, 제2언어습득, 언어교학원리, 한어언어요소 교학, 한어언어스킬교학, 언어교학중의 교육기술응용, 한어과정 및 교학설계, 한어교재선택 및 분석, 교실활동설계 및 조직, 교실관리방법 및 스킬, 언어테스트 및 평가, 중화문화, 중국의 현주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교사 직업 윤리, 교사 심리적 소인, 교사 전공 진로 발전

② 전문가그룹 해외 교육연수

- 교육 기간은 1~4주로 특별한 연수 시기 없이 연중 모두 가능함.
- 교재 및 인터넷공자학원에 대한 설명 및 토론, 한어 교재 사용 경험에 대한 교류, 현지에 맞는 교재 개발을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4.5. 교육비

##### ○ CTCSOL

- 필기시험: 15만 원
  - 면접시험: 19만 원
  - 계속 교육(继续教育): 10학점(1과목) 기준 약 300元(한화 약 52,000원)
- 해외 중국어교사 중국연수는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가그룹 해외 교육의 연수비용 역시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무료로 제공함.

#### 4.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CTCSOL의 '계속 교육'과 해외 중국어교사 연수와 전문가그룹 해외 교육연수는 모두 공자학원에서 총괄함.
- CTCSOL 보수교육(계속 교육)의 비대면 강의를 마치면 개인 중심의 '나의 학점'이 자동으로 80점이 되고 취득 학점은 중국어 국제인재망' 계정의 '인증서 관리'로 자동 동기화됨.

### 5. 프랑스: DAEFLE(해외 프랑스어 교원 자격증)

#### 5.1. 제도 운영 개요

- 프랑스의 DAEFLE는 해외 프랑스어 교원 자격증 제도임.
- DAEFLE는 취득 시 다음과 같은 높은 수준의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DAEFLE의 양성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정 능력과 텍스트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시험의 합격증이 필요함.
  - 기본모듈과정 420시간과 심화모듈과정 6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최종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 최종 시험은 논술식(6시간)으로 시행됨.
-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반면 별도의 보수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보급하는 대표 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주관함.
-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수강료 등 현지 수입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DAEFLE 외에도 다양한 제2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5.2. 교육 구분

### ○ DAEFLE 양성 과정

- 내용: 프랑스어 교원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양성 교육과정
- 분류: 기본모듈과정, 심화모듈과정

## 5.3. 교육과정

### ○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1) DAEFLE 양성 과정

- 교육 기간은 480시간이며 크게 6모듈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비대면 프로그램에 구축되어 있음.
- 외국인에게 프랑스어를 교수하기 위한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됨.
- 자격증 최종시험을 통과해야만 DAEFLE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음(시험은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응시).
- 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성됨.
- 교과는 기본모듈과정과 심화모듈과정으로 나누어 있으며 기본모듈과정에서 5과목, 심화모듈과정에서 1과목을 이수해야 함.

<표 6> DAEFLE 양성 과정 표준 교육과정

교과 과정	과목	이수 시간	이수 형식
기본모듈 과정	FLF에 필요한 기본 교수법과 방법론	120시간	필수
	프랑스어 발음에 대한 교수법	120시간	필수
	FLF에 필요한 프랑스어 문법 교수법	60시간	필수
	FLF에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 평가방법	60시간	필수
	외국인학생 클래스를 운영하는 방법	60시간	택 1
	알리앙스 프랑세즈 본원에서 실습인턴참가	60시간	
심화모듈 과정	프랑스사회문화와 프랑스 문학에 대한 교수법	60시간	택 1
	<특수목적을 위한 프랑스어>교수법	60시간	
	어린이들을 위한 FLE 교수법	60시간	
	외국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60시간	
	외국인들 중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거의 다니지 못해서 교육수준이 아주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 교수법	60시간	

#### 5.4. 교육비

- DAEFLE의 양성 과정 이수를 위한 입학 시험의 비용은 122EUR임.
- DAEFLE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종 시험의 가격은 364EUR임.

<표 7> DAEFLE 양성 과정 이수 비용

교육과정	비용	교육 내용
기본모듈과정	1490EUR(한화 약 200만 원)	초기 교육
	3080EUR(한화 약 410만 원)	조직에 의한 직업 훈련
심화모듈과정	265EUR(한화 약 35만 원)	초기 교육
	480EUR(한화 약 65만 원)	조직에 의한 직업 훈련

#### 4.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DAEFLE의 양성 과정은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주관하며 해외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DAEFLE의 모듈을 이수하면 알리앙스 프랑세즈 파리 본원에 이수 정보가 전달됨.



## [부록 2] 유사 자격 제도(국내)

### 1. 정교사(중등교사)

#### 1.1. 제도 운영 개요

- 이 제도는 교육공무원 중 중등교사의 전문을 확보하고 교육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자격 부여 및 보수교육 운영 제도임.
- 보수교육 운영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역량 신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수체계 구축
  - 미래환경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교육환경 대전환에 맞춰 교원 연수체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교원 연수 질 제고: 교원연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수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양질의 교원연수 제공
  - 교육정책 추진력 확보: 교원의 정책이해도 향상을 위한 연수 제공을 통해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유도

#### 1.2. 관련 법령

- 주요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 근거 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1.3. 교육 구분

##### 1) 자격연수

- 내용: 법령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 분류: 교(원)장 자격연수, 교(원)감 자격연수, 수석교사 및 정교사 자격연수

##### 2) 직무 연수

- 내용: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 분류: 교수학습·생활지도 및 상담·SW 관련 연수 등 직무수행에 필요

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3) 특별연수

-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받는 연수
- 분류: 학습연구년제, 대학원 학위과정, 장·단기 교육기관·연구기관 파견,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1.4. 교육 형태 및 교육과정

1) 교육 형태

- 연수 방식(연수 장소)에 따라 집합연수, 원격교육연수, 혼합형 연수로 구분

2)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1) 자격연수

-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원감: 90~135시간
- 교장·원장: 180시간 ~ 270시간

① 정교사

- 기본역량: 성찰, 교사 리더십
- 전문역량: 수업, 생활지도, 교육공동체 참여, 연수기관 자율교육

② 수석교사

- 기본역량: 성찰, 수석교사 리더십, 연수기관 자율교육
- 전문역량: 교육 연구, 수업 지원, 생활지도 지원, 연수기관 자율교육

③ 교감·원감

- 기본역량: 성찰, 교감 리더십, 연수기관 자율교육
- 전문역량: 교무 운영, 교육 지원,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연수기관 자율교육

#### ④ 교장·원장

- 기본역량: 성찰, 교장 리더십, 연수기관 자율교육
- 전문역량: 교육 기획, 조직·인사관리, 학교 경영, 연수기관 자율교육

#### ⑤ 자격연수 교육과정 내 필수/권장 과목

- 필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
- 권장: 인권교육, 원격수업 역량 강화 교육,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사회적 경제 교육

#### (2) 직무 연수

- 직무 연수의 교육 시간은 해당 연수원장 재량

##### ① 법정 의무 교육(공통)

- 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고나한 교육,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부패방지교육,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② 학교관리자 대상 직무 연수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경영 능력 향상 과정 : 학교 갈등 관리 사례와 해결, 학교공동체 조직관리 등
- 성 비위 근절·예방: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성비위 유형별 사례중심 교육, 관련 법령 교육 등
- 학교 내 수업 질 제고: 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 교원 자율연수 활성화 방안 등

### ③ 신규교사 대상 직무 연수

- 임용 전에는 ‘수업·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급경영’ 등 신규교원으로  
서 필요한 역량 및 가치를 중심으로 연수과정 운영
- 임용 후에는 전담 멘토링 제공,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과정 운영 등  
맞춤형 연수 지원

### ④ 복직예정자 대상 직무 연수

-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지도 등의 직무 관련 내용 및 주요  
교육정책·교육환경 변화 대응(예: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연수,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교육과정

## 1.5. 교육비

-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 1인당 연수경비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  
수비가 교원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  
(「2021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안)」).

## 1.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현재 시도교육연수원은 18개 기관이 있으며, 교육행정 및 종합교육  
연수원은 15개 기관, 대학부설교육연수원은 80개 기관, 원격교육연  
수원은 32개 기관이 있음.
- 연수원 설치인가를 비롯하여 평가,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에 대한  
법령이 존재함(「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제2조의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  
3, 제3조의4).

## 2. 정교사(유치원교사)

### 2.1. 제도 운영 개요

- 이 제도는 교육공무원 중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역  
량을 신장하기 위한 자격 부여 및 보수교육 운영 제도임.

- 유치원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 기준은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라고 명시됨(「유아교육법」 제22조).
- 유치원교원에 대한 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 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연수’로 구분됨.
- 직무 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자격 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원감·원장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부령으로 정함.

## 2.2. 관련 법령

- 주요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 「유아교육법」 제22조
- 근거 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3. 교육 구분

### 1) 자격연수

- 내용: 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 분류: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원감·원장과정

### 2) 직무 연수

- 내용: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 2.4. 교육 형태 및 교육과정

- 정교사(중등교사)와 동일함.

## 2.5. 교육비

-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2.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현재 시도교육연수원은 18개 기관이 있으며, 교육행정 및 종합교육연수원은 15개 기관, 대학부설교육연수원은 80개 기관, 원격교육연수원은 32개 기관이 있음.
- 연수원 설치인가를 비롯하여 평가,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에 대한 법령이 존재함(「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제2조의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 3, 제3조의4).

## 3. 보육교사

### 3.1. 제도 운영 개요

- 이 제도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자격 부여 및 보수교육 운영 제도임.
-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유지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법 개정 에 의해 2005년부터 시행됨.

### 3.2. 관련 법령

- 주요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 2020.12.29.)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21.03.0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0.12.31.)

### 3.3. 교육 구분

#### 1) 직무교육

- 내용: 일반직무교육 및 특별직무교육
- 분류: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 2) 승급교육

- 내용: 보육교사 자격 승급교육
- 분류: 2급 보육교사 승급 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 교육

3) 사전직무교육

- 내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 분류: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3.4. 교육 형태 및 교육과정

1) 교육 형태

-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특별직무교육만 비대면 교육 이수를 인정함.
- 단, 직전 보수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2)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 지식·기술,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대주제를 포함함.
- 일반직무교육의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교육대상자가 선택해 이수 가능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보수교육은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표 1>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기 및 시수

교육 구분			교육 시기	교육 시수
직무 교육	일반직무 교육	기본교육/심화교육	매 3년마다	40시간
			매 3년마다	40시간
	특별직무 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40시간
		영아보육 직무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40시간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40시간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40시간	
승급 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80시간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80시간
사전 직무 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80시간

### 3.5. 교육비

- 현직 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함직무교육 우선 지원).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생이 부담함.
-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함.

<표 2> 보육교사 보수교육 비용

교육 구분	교육 비용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	8만 원
승급교육	14만 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 3.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보수교육의 실시주체, 수요파악 및 계획수립, 보수교육기관 선정 등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관할지역의 보수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보수교육기관을 선정, 관리함.
-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기관 현황 및 질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4. 다문화사회전문가

### 4.1. 제도 운영 개요

- 이 제도는 이민·다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 부여



및 보수교육 운영 제도임.

- 한국이민재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위탁받아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수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4.2.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51조), 법무부훈령 제1023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 4.3. 교육 구분

### 1) 이수교육

- 내용: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 대상: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관련과목을 개설한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자(졸업예정자 제외/ 학사(필수 과목 15학점, 선택 과목 9학점)/ 석·박사(필수 과목 9학점, 선택 과목 6학점))

### 2) 보수교육

- 내용: 현직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과정
-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 강의를 진행 중인 강사

## 4.4. 교육 형태 및 교육과정

### 1) 교육 형태

- 이수교육은 연2회로 상·하반기에 실시되며, 보수교육은 하반기 1회로 실시됨.

### 2)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교육 시간: 15시간

① 이수교육

- 이민정책개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 취득과 상실, 난민,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인권이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② 보수교육

- 이민자 관련 법률(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관련) 실무, 외국인의 인권이해, 한국사회이해 교수법, 우수 강의 사례 발표, 외국국적동포(고려인) 이해 등

#### 4.5. 교육비

- 무료

#### 4.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법무부장관이 전문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함.
- 현재 한국이민재단이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화상교육 및 평가관리 등 전국단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5. 문화예술교육사

#### 5.1. 제도 운영 개요

- 이 제도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자격 부여 및 승급교육 운영 제도임.
-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이 확대되고 문화예술교육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자격 제도를 도입함.
-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자는 1급 교육과정을 통해 승급할 수 있음.
- 현재는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점, 2급과 차별되는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1급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음.

## 5.2. 관련 법령

- 주요 법적 근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 2015.11.19.)
- 근거 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6.03.2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6.03.01.)

## 5.3. 교육 대상

- 2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을 가지며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1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0시간 기본 연수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을 가지며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1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5.4. 교육 형태 및 교육과정

### 1) 교육 형태

- 지정 교육기관에서 직무역량 교과 3과목, 예술교육 전문성 교과 2과목을 150시간 동안 이수해야 함.
- 현재 1급 교육기관은 지정되지 않음.

### 2)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교육 시간: 직무 역량 90시간, 예술교육 전문성 60시간
- 표준 교과: 직무역량(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관리실무), 예술교육 전문성(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 II)

## 5.5. 교육비

- 교육과정 이수 신청자가 수강료를 전액 부담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원에서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과목당 수강료는 20만 원 내외이며 기관별로 수강료가 상이함.

## 5.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함.

- 연 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전공 학과 심의를 신청하여 평가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6. 사회복지사

### 6.1. 제도 운영 개요

- 이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부여 및 보수교육 운영 제도임.
-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함.
-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현장 실천이 가능한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을 목표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에 의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6.2. 관련 법령

- 주요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6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26조의2)

### 6.3. 교육 대상

-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됨(단, 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6.4. 교육 형태 및 교육과정

##### 1) 교육 형태

-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협회 사이버교육, 실시기관 실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

##### 2) 교육과정 및 교육 시간

- 교육 시간: 등급별 사회복지사 연간 8시간 이상,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4시간 이상 이수)
- 표준 교과: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상연구, 특별분야(선택)

#### 6.5. 교육비

- 1평점 당 7천원 이하

#### 6.6. 교육기관, 평가, 운영 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위탁 기관을 수행함.
-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기관 심사, 분기별 교육계획심사, 강사선정 등 보수교육 관리강화를 하고 있음.
- 위탁 기관의 주요 업무는 보수교육 과목 관리,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보수교육 운영 관리, 보수교육 품질관리 및 제도 개선, 그 밖에 기타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임.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재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시설협회(비영리 법인)임.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은 정관, 운영규정 등에 사회복지사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 명시, 보수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1인 이상 배치, 보수교육에 적합한 장소 및 관련 기자재 확보, 보수교육 운영지침·규정에 의거한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가능 여부 등이 있음.

## [부록 3] 설문조사지 및 분석 자료

### 한국어교원 보수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한국어교원의 의견을 조사하고, 한국어교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란 한국어교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유지하고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어교원들을 위한 연수 교육, 승급 교육 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은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마련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정보는 최종 보고서의 작성 및 보수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설문 대상자 정보 (해당 번호에 √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과정 중에 있는 교원→3-1번 ②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교원→4번~7번, 9번 ③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4번~7번, 9번 ④ 현직에 있는 교원→4번	
3-1.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재 어느 기관에 재학 중이십니까?→9번 ① 학부      ② 대학원      ③ 학점은행제      ④ 교원양성과정(120시간)	
4. 현재 한국어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없음→5번	
4-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십니까? ① 학부      ② 대학원      ③ 학점은행제      ④ 교원양성과정(120시간)	
5. 최종 학력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6. 한국어교육 경력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④ 없음





특하기 위한 교육 예) KSL교사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사 교육 등					
---	--	--	--	--	--

2. ‘급별 연수’, ‘승급 연수’ 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네	② 아니요
1) 급별 연수 : 각 급에 맞는 교육적 자질 및 교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승급 연수 : 승급(3급→2급, 2급→1급)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 및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3. ‘급별 연수’ 는 몇 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1년에 1번
- ② 3년에 1번
- ③ 5년에 1번
- ④ 7년에 1번
- ⑤ 기타 의견( )

4. 보수교육을 받을 때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보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

5. 보수교육에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기준)

- ① 1만 원 미만
- ② 1만 원 이상 ~ 3만 원 미만
- ③ 3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 ④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 ⑤ 기타 의견( )

6. 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2)  
(1순위:                    2순위:                    )

- ① 승급 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지정
- ② 취업 시 가산점을 주도록 기관에 권고
- ③ 자격 갱신의 자격 요건으로 지정
- ④ 수강 유무를 국책 사업 참여 조건으로 지정
- ⑤ 기타 의견( )

7. 선호하는 교육 수강 방법은 무엇입니까? (택 2)

(1순위:                    2순위:                    )

- ① 온라인 교육
- ② 오프라인 교육(집합 교육)
- ③ 블렌디드 교육(온라인+오프라인)

8.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선호하는 운영 방안은 무엇입니까? (택 2)

(1순위:                    2순위:                    )

- ① 주말 운영
- ② 주중 야간 운영
- ③ 단기 매일 운영
- ④ 방학 기간 운영 (6월~8월, 12월~2월)
- ⑤ 기타 의견(                    )

9. 선호하는 교육 수강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매우 선호함	② 선호함	③ 보통	④ 선호 하지 않음	⑤ 매우 선호 하지 않음
1) 워크숍(교육 자료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					
2) 특강					
3) 사례 발표 및 시연					
4) 수업 참관 및 공개 수업					

II. 교육과정 구성

1. 다음 중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 교육 내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 하지 않음	⑤ 매우 필요 하지 않음
1) 한국어학 및 언어학 (음운론, 어휘론, 문법론, 대조언어학 등)					
2) 한국어 교육학 및 교수법 (교육과정론, 평가론, 발음교수법, 문법 교수법 등)					

3)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문화교육론, 한국 현대 문화, 한국 문화 등)					
4)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교재 활용법, 교육 자료 작성, 부교재 개발 등)					
5)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생활 상담, 비자 발급 등)					
6)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등)					

2. 현행 교원자격제도에 개설된 교과목 외에 보수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영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2-1) 1 “한국어학 및 언어학”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택 2)

한글맞춤법( ), 표준발음법( ),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  
세계의 언어와 문자( ), 사전과 한국어( )

2-2) “한국어 교육학 및 교수법”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택 2)

교육과정의 이해( ), 학습자 이해 교육( ), 온라인 교수법( ),  
매체 활용법( ), 최신 언어교수법( )

2-3)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택 2)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 상호문화교육 방법( ),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  
현대 대중문화(K-POP, K드라마)( ),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

2-4)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택 2)

교재 활용법( ), 교재 및 부교재 개발( ), 평가 문항 개발( ),  
교안 및 활동지 작성( ), 온라인 자료 활용의 실제( )

2-5)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택 2)

학생 지도 및 상담( ), 학생 관리 및 지원( ), 교사 조직 관리( ),  
수업 관리( ), 교육행정의 이해( )

2-6)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택 2)

교사교육론( ),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 현장 의사소통( ),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

2-7) 이 외에 보수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써 주십시오.

- 학생을 지도하거나 현장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3. 아래 기관의 보수 교육이 별도의 교육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함	② 필요 함	③ 보통	④ 필요 하지 않음	⑤ 매우 필요 하지 않음
1) 세종학당					
2) KSL(중도입국자녀 초등, 중등, 고등 예비학교)					
3) 사회통합프로그램(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4) 국외 한글학교					

### Ⅲ. 목적과 기대 효과

1.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가 시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네→2번
- ② 아니요→3번

2.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택 1)

- ① 교원 직무 능력 향상
- ② 자격 승급 또는 승진 관련 보상
- ③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의 적응
- ④ 다른 한국어교원과의 교류
- ⑤ 기타 의견( )



## 1. 기본 사항

### 1.1. 조사의 목적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한국어교원의 의견을 수렴함.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 마련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함.

### 1.2. 조사의 설계 및 분석

- 국내 및 국외의 한국어교원 1,289명을 대상으로 함.
-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료 처리를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자료 분석은 기초 통계량 분석 및 교차 분석을 사용함.

### 1.3. 조사 항목

<표 1> 조사 항목

구분	항목	문항 수 (총 50개)
설문 대상자 정보	성별	15
	연령	
	유형 구분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최종 학력	
	한국어교육 경력	
	교원 연수 참여 여부	
	재직 기관	
교육과정 운영	각 연수 제도의 적절성	15
	‘급별 연수’, ‘승급 연수’ 의무화 적절성	
	‘급별 연수’ 실시 주기	
	보수교육 참여 의향	
	보수교육 적정 금액	
	교육 참여 증진 방안	
	선호하는 교육 수강 방법	
	선호하는 대면 교육 방법	
	선호하는 교육 수강 형태	

구분	항목	문항 수 (총 50개)
교육과정 구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교육 내용	17
	영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기관별 별도의 보수교육 필요성	
목적과 기대 효과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참여 의사	3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기대되는 점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에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	

## 2.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

### 2.1. 각 연수 제도의 적절성

#### 1) 급별 연수

- 급별 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71.4%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90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교원’(3.96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3.95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3.93점), 재직 기관별로는 ‘한글학교’(4.11점)의 경우 급별 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가 가장 높음.
- ‘교원 유형’, ‘자격증 소지 여부’, ‘교육 경력’, ‘재직 기관’을 변수로 ANOVA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의확률은 모두 0.05 이하로써 95% 신뢰수준 아래 급별 연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 승급 연수

- 승급 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66.6%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82점인 것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교원’(4.03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2급’(3.84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3.94점), 재직 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13점)의 경우 승급 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가 가장 높음.

- ‘교원 유형’, ‘자격증 소지 여부’, ‘교육 경력’, ‘재직 기관’을 변수로 ANOVA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의확률은 모두 0.05 이하로써 95% 신뢰수준 아래 승급 연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자격증 소지 여부’의 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3) 특별 연수

- 특별 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80.8%이고, 5점 척도 평균은 4.18점인 것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4.25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4.35점), 한국어교육 별로는 ‘5년 이상’(4.29점), 재직 기관 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4.43점)의 경우 특별 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가 가장 높음.
- ‘교원 유형’, ‘자격증 소지 여부’, ‘교육 경력’, ‘재직 기관’을 변수로 ANOVA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의확률은 모두 0.05 이하로써 95% 신뢰수준 아래 특별 연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2. 급별 연수 및 승급 연수의 의무화 적절성

### 1) 급별 연수

- 급별 연수의 의무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의견이 75.8%로 나타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과정 중에 있는 교원’(83.6%), 자격증 소지 여부별 ‘1급’(78.8%), 한국어교육 경력별 ‘5년 이상’(75.7%), 재직 기관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1.4%)의 경우 급별 연수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음.

### 2) 승급 연수

- 급별 연수의 의무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의견이 72.4%



로 나타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교원’(79.8%),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2급’(73.8%), 한국어교육 경력별 ‘3년 미만’(80.3%), 재직 기관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5.7%)의 경우 승급 연수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음.

### 2.3. 급별 연수의 실시 주기

- 급별 연수의 실시 주기에 대해 ‘3년에 1번’의 의견이 43.3%로 가장 높으며, ‘1년에 1번’ 30.6%, ‘5년에 1번’이 18.4% 순으로 나타남.
- 유형 구분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과정 중에 있는 교원’(51.3%), 자격증 소지 여부별 ‘2급’(43.9%), 한국어교육 경력별 ‘3년 이상 5년 미만’(5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54.3%)의 경우 급별 연수의 실시 주기를 ‘3년에 1번’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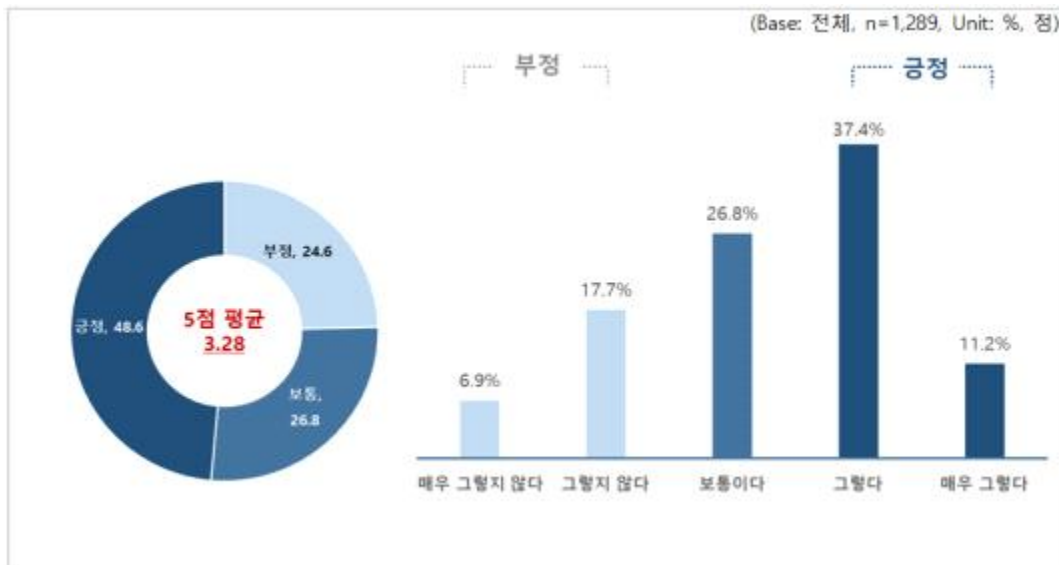
### 2.4. 보수교육 비용

#### 1) 자기 부담금 발생 시 보수교육 참여 의향

- 자기 부담금 발생 시 보수교육에 참여에 긍정하는 정도는 48.6%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28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과정 중에 있는 교원’(3.41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3급’(3.33점), 한국어교육 경력별로는 ‘3년 이상 5년 미만’(3.30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11점)의 경우 자기 부담금 발생 시 보수교육 참여에 긍정하는 정도가 가장 높음.
- ‘교원 유형’, ‘재직 기관’을 변수로 ANOVA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의확률은 모두 0.05 이하로써 95% 신뢰수준 아래 자기 부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2) 보수교육의 적정 금액

- 1시간 기준의 보수교육의 적정 금액으로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의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1만원 이상’은 30%,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8%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45.5%), 자격증 소지 여부별 ‘3급’(45.6%), 경력별 ‘3년 이상 5년 미만’(50.5%), ‘초·중·고 한국어학급(KSL 과정)’(46.8%)의 경우 보수교육의 적정 금액을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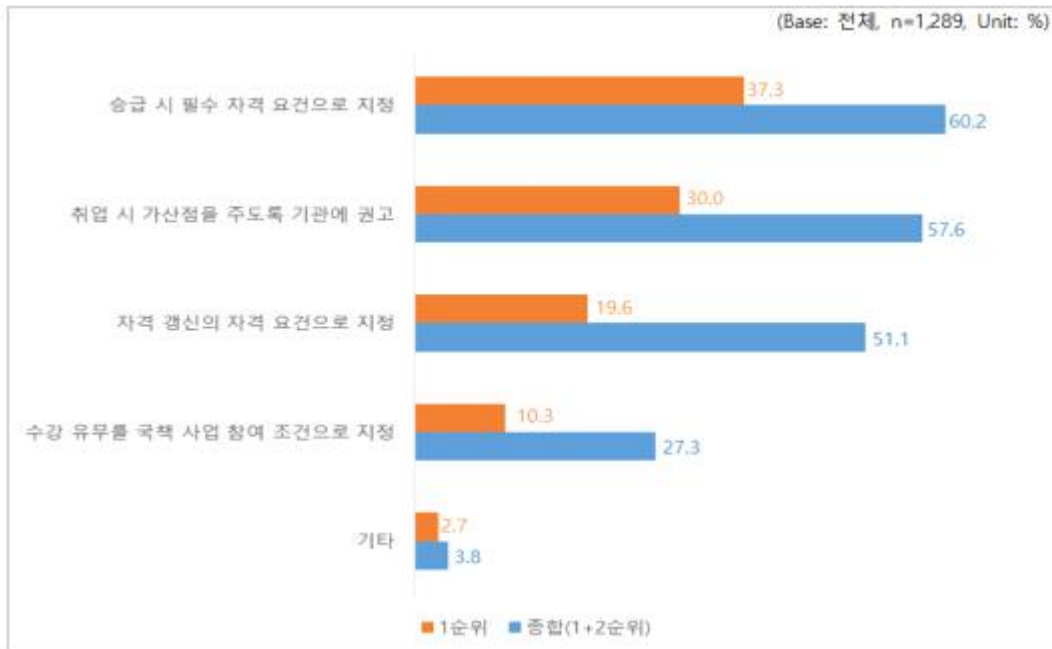
[그림 1] 자기부담금 발생 시 보수교육 참여 의향

2.5. 교육 참여 증진 방안

- 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승급 시 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지정’의 의견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시 가산점을 주도록 기관에 권고’ 30%, ‘자격 갱신의 자격 요건으로 지정’ 19.6%, ‘수강 유무를 국책 사업 참여 조건으로 지정’ 10.3% 순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64.3%), 자격증 소지 여부별 ‘1급’(64.2%), 한국어교육 경력별 ‘3년 미만’(69.4%)의 경우 교육 참여 증진 방안으로 ‘승급 시 필요한 요건

으로 지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원 유형', '자격증 소지 여부', '교육 경력', '재직 기관'을 각 독립 변수로 참여 증진 방안 선호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아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교원 유형', '교육 경력', '재직 기관'으로 확인됨.



[그림 2] 보수교육 참여 증진 방안

## 2.6. 선호하는 교육 방법 및 형태

### 1) 보수교육 수강 방법

- 선호하는 교육 수강 방법의 1순위로는 '비대면 교육'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블렌디드 교육(대면+비대면)'이 27.8%, '대면 교육(집합 교육)'이 24% 순으로 확인됨.
- 선호하는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한 종합 순위(1위+2위)는 '블렌디드 교육(대면+비대면)'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대면 교육'이 70.8%, '대면 교육(집합 교육)'이 54.9% 순으로 확인됨.

## 2) 대면 교육의 운영 방법

- 선호하는 대면 교육의 운영 방법의 1순위로는 ‘주말 운영’과 ‘방학 기간 운영’의 의견이 36.3%로 나타났으며, ‘주중 야간 운영’이 15.2%, ‘단기 매일 운영’이 10% 순으로 확인됨.
- 선호하는 대면 교육의 운영 방법에 대한 종합 순위(1위+2위)는 ‘주말 운영’이 67.5%로 가장 높으며, ‘방학 기간 운영’이 63.3%, ‘주중 야간 운영’이 42.8%, ‘단기 매일 운영’이 22.9% 순으로 확인됨.

## 3) 교육 수강 형태

- 교육 수강 형태의 선호도는 ‘특강’이 75.9%로 가장 높았으며, ‘수업 참관 및 공개 수업’이 6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1) 워크숍

- ‘워크숍(교육 자료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의 선호도는 74.5%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92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3.97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4.02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4.03점), 재직 기관별로는 ‘한글학교’(4.06점)의 경우에 ‘워크숍’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 (2) 특강

- ‘특강’의 선호도는 75.9%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99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4.03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2급’(4.02점), 경력별로는 ‘5년 이상’(4.03점), 재직 기관별로는 ‘세종학당(4.14점)의 경우 ‘특강’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 (3) 사례 발표 및 시연

- ‘사례 발표 및 시연’의 선호도는 64.8%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7.9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3.87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3.94점), 경력별로는 ‘5년 이상’(3.87점), 재직 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16점)의 경우 ‘사례 발표 및 시연’의 선호

도가 가장 높음.

(4) 수업 참관 및 공개 수업

- ‘수업 참관 및 공개 수업’의 선호도는 62.9%이고 5점 척도 평균은 3.76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3.88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2급’(3.85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3.89점), 재직 기관별로는 ‘한글학교’(4.19점)의 경우 ‘수업 참관 및 공개 수업’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이 확인됨.

### 3.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

#### 3.1. 필요한 보수교육의 내용

- 보수교육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으로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이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이 60.8%로 가장 낮게 확인됨.

1) 한국어학 및 언어학

- ‘한국어학 및 언어학(음운론, 어휘론, 문법론, 대조언어학 등)’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65.7%이며, 5점 척도 평균은 3.75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교원’(3.85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3급’(3.82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3.83점)의 경우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한국어학 및 언어학’의 필요에 긍정하는 정도가 가장 높음.

2)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교육과정론, 평가론, 발음교수법, 문법교수법 등)’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79.7%이며, 5점 척도 평균은 4.10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4.14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2급’(4.20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4.18점)의 경우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의 필요에 긍정하는 정도가 높음이 확인됨.

### 3)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 ‘한국문화 및 문화(문화교육론, 한국 현대 문화, 한국 문학 등)’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70.3%이며, 5점 척도 평균은 3.91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3.93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3급’(3.96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3.93점)의 경우에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의 필요에 긍정하는 정도가 높음.

### 4)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84.5%이며, 5점 척도 평균은 4.22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4.33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3급’(4.35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4.32점)의 경우에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의 필요에 긍정하는 정도가 높음.

### 5)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60.8%이며, 5점 척도 평균은 3.67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과정 중에 있는 교원’(3.95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2급’(3.68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3.73점)의 경우에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의 필요에 긍정하는 정도가 높음.

## 6)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67.5%이며, 5점 척도 평균은 3.81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과정 중에 있는 교원’(3.87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3.84점), 경력별로는 ‘3년 미만’(3.83점)의 경우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의 필요에 긍정하는 정도가 높음.

## 3.2. 영역별 필요 교과목

### 1) 분야별 필요 교과목

#### (1) 한국어학 및 언어학

- 한국어학 및 언어학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으로는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의 의견이 69.4%로 가장 많음.
-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에 이어서 ‘어문규정(한글맞춤법, 표준발음법)’(59.7%), ‘한국어교육 정책’(30.4%), ‘세계의 언어와 문자’(24.0%), ‘사전과 한국어’(16.4%) 순으로 나타남.

#### (2)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으로는 ‘비대면 교수법’의 의견이 52.8%로 가장 많음.
- ‘비대면 교수법’에 이어서 ‘매체 활용법’(49.7%), ‘최신 언어교수법’(47.1%), ‘학습자 이해 교육’(30.7%), ‘교육과정의 이해’(19.7%) 순으로 나타남.

#### (3)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으로는 ‘현대 대중문화(K-POP, K드라마)’의 의견이 45.1%로 가장 많음.
- ‘현대 대중문화(K-POP, K드라마)’에 이어서 ‘상호문화 교육 방

법'(44.6%),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39.4%),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35.8%),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35.1%) 순으로 나타남.

#### (4)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으로는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의 의견이 60.0%로 가장 많음.
-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에 이어서 '교재 및 부교재 개발'과 '평가 문항 개발' (각 37.5%), '교재 활용법'(36.6%), '교안 및 활동지 작성'(28.2%) 순으로 나타남.

#### (5)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으로는 '학생 지도 및 상담'의 의견이 56.7%로 가장 많음.
- '학생 지도 및 상담'에 이어서 '수업 관리'(52.0%), '학생 관리 및 지원'(46.6%), '교육행정의 이해'(25.4%), '교사 조직 관리'(19.3%) 순으로 나타남.

#### (6)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 교사 교육 및 자기 분야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으로는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63.1%로 가장 많음.
-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이어서 '현장 의사소통'(54.6%), '교사교육론'(33.0%),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25.5%),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23.8%) 순으로 나타남.

## 2) 집단별 필요 교과목 선호도

### (1) 교원 유형



①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교원

<표 2>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교재 및 부교재 개발	평가 문항 개발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매체 활용법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수업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4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상호문화교육 방법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②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

<표 3>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교재 활용법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상호문화교육 방법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현장 의사소통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관리 및 지원	학생 지도 및 상담	수업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③ 현직에 있는 교원

<표 4> 현직에 있는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2) 한국어교원자격증 급수

① 1급

<표 5> 1급 소지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매체 활용법	비대면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② 2급

<표 6> 2급 소지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활용법	교재 및 부교재 개발	평가 문항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상호문화교육 방법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③ 3급

<표 7> 3급 소지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활용법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4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5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3) 경력

① 3년 미만

<표 8> 경력 3년 미만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상호문화교육 방법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수업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② 3년 이상 5년 미만

<표 9>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활용법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매체 활용법	비대면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상호문화교육 방법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수업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③ 5년 이상

<표 10> 경력 5년 이상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매체 활용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수업 관리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4) 재직 기관

① 초·중·고 한국어학급(KSL 과정)

<표 11> 초·중·고 한국어학급(KSL 과정)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평가 문항 개발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매체 활용법	비대면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현대 대중문화(K-POP, K드라마)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5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수업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6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표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2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상호문화교육 방법
4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수업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5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6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한국어교육 정책

③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표 1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2위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최신 언어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교육과정의 이해
3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교사교육론	현장 의사소통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4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어문규정(한글맞춤법, 표준발음법)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한국어교육 정책	사전과 한국어	세계의 언어와 문자
5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사 조직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학생 지도 및 상담
6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재 활용법	평가 문항 개발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표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2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활용법	평가 문항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현대 대중문화(K-POP, K드라마)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수업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사 조직 관리

⑤ 국내 대학

<표 15> 국내 대학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평가 문항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재 활용법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학 및 교수법	매체 활용법	비대면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4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방법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⑥ 국외 대학

<표 16> 국외 대학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평가 문항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교재 활용법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최신 언어교수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상호문화교육 방법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현장 의사소통	교사교육론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학생 지도 및 상담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사 조직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⑦ 세종학당

<표 17> 세종학당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활용법	교재 및 부교재 개발	평가 문항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매체 활용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상호문화교육 방법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세계의 언어와 문자	한국어교육 정책	사전과 한국어
5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현장 의사소통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교사교육론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수업 관리	학생 관리 및 지원	학생 지도 및 상담	교육행정의 이해	교사 조직 관리



⑧ 한글학교

<표 18> 한글학교 교원의 필요 교과목 선호도

대범주	하위범주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교육 자료 활용 및 개발	비대면 자료 활용의 실제	교재 활용법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교안 및 활동지 작성	평가 문항 개발
2위	한국어교육 학 및 교수법	최신 언어교수법	비대면 교수법	매체 활용법	학습자 이해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위	한국문화 및 문화교육	현대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상호문화교육 방법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문화적응 프로그램 교육
4위	교사 교육 및 자기 관리	한국어교사의 전문성과 정체성	교사교육론	현장 의사소통	한국어교원제도의 이해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5위	한국어학 및 언어학	올바른 어휘의 사용과 바른 문장 쓰기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	한국어교육 정책	세계의 언어와 문자	사전과 한국어
6위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	수업 관리	학생 지도 및 상담	학생 관리 및 지원	교사 조직 관리	교육행정의 이해

3.3 기관별 별도 교육의 필요성

- 보수교육 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기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의견이 81.1%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세종학당’이 73.4%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재직 기관별 별도 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한 ANOVA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KSL’,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외 한글학교’로 나타남.

1) 세종학당

- ‘세종학당’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73.4%이며, 5점 척도 평균은 3.91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경력은 있으나 현직에 있지 않은 교원’(3.98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4.02점), 경력별로는 ‘5년 이상’(3.96

점)의 경우 ‘세종학당’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 KSL

- ‘KSL(중도입국자녀 초등, 중등, 고등 예비학교)’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77.1%이며, 5점 척도 평균은 4.07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4.14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4.18점), 경력별로는 ‘5년 이상’(4.15점)의 경우에 ‘KSL’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81.1%이며, 5점 척도 평균은 4.14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4.16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1급’(4.23점), 경력별로는 ‘5년 이상’(4.19점)의 경우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4) 국외 한글학교

- ‘국외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정도는 79.9%이며, 5점 척도 평균은 4.09점으로 확인됨.
- 유형 구분별로는 ‘현직에 있는 교원’(4.13점), 자격증 소지 여부별로는 ‘2급’(4.11점), 경력별로는 ‘5년 이상’(4.15점)의 경우 ‘국외 한글 학교’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한 결과

## 3.1. 보수교육 참여 의사 및 기대 효과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시행 시 ‘참여한다’라는 의견은 87.4%로 나타남.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기대 효과로 ‘교원 직무 능력 향상’의 의견이 56.3%로 가장 많음.
- ‘교원 직무 능력 향상’에 이어서 ‘자격 승급 또는 승진 관련 보상’(18.1%),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의 적응’(13.9%), ‘다른 한국어교원과의 교류’(11.0%) 순으로 나타남.

### 3.2 보수교육에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시행 시 ‘참여 의사가 없다’라는 의견은 12.6%로 나타남.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에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로 ‘교육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42%로 가장 많음.
- ‘교육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이어서 ‘교육에 대한 보상 부재’(20.4%), ‘교육 비용 지불의 문제’(14.2%), ‘소속 기관의 불허(대강, 보강, 휴강 불가 등의 사유)’(12.3%) 순으로 나타남.

## [부록 4]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의 연구·용역 사업인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연구팀입니다.

이 연구 사업은 한국어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유지·함양·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는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어교원을 위한 연수 교육, 승급 교육 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올 6월에 한국어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약 1,200명), 다음 단계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제도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줄 아오나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설문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최종 학력	
3.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급)	
4. 한국어 교육 경력	(                    ) 년
5. 교육 기관의 운영 및 관리 경력	(                    ) 년
6. 재직 기관 및 직위 * 현재 소속 기준	

## I. 보수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질문

- I-1. 현재 재직 중이신 기관에서 교사 재교육(교사 연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 I-2. / 아니요 ☞ I-3.
- I-2.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운영 매뉴얼 유무, 교육 대상, 연중 운영 횟수, 회당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수자 선정 과정, 교사 역할(일반 교강사, 담임, 급별 대표 등)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I-3.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재직하고 계시는 기관에서 교사 재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예상되니까?
- I-4. 국가 단위의 한국어교원 재교육(보수교육) 제도가 운영된다면 그 운영기관은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각 지역의 대학 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기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등
- I-5. 표준화된 보수교육의 시행을 위해 운영기관의 선정 및 관리 매뉴얼과 교육과정의 운영 매뉴얼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떤 형식의 매뉴얼(비대면 매뉴얼, FAQ, 편람 형식의 책자, 체크 리스트 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I-6. 보수교육 기관의 운영 및 관리 요건에서 다음 항목의 중요도를 표시하십시오.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물리적 환경-시설 기준	①	②	③	④	⑤
2) 인적 구성-교수요원 자격 및 전문성, 교직원 인력	①	②	③	④	⑤
3) 교과편성 및 운영- 반 편성, 수업 운영, 수료증 발급의 적절성, 교육생 출결 관리	①	②	③	④	⑤
4) 수업 질 관리- 수업 계획, 강사풀, 학습 자료, 교과 운영 방식 등	①	②	③	④	⑤
5) 재정 운영의 적절성 - 회계 관리의 적절성, 교육비 수납 등	①	②	③	④	⑤
6) 대표자 자격	①	②	③	④	⑤

I-7. 보수교육 기관의 사후 평가에서 다음 항목의 중요도를 표시하십시오.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및 시간 배정, 프로그램 설계와 같은 구조평가 영역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 수행 요인이나 운영 관리과 같은 과정평가 영역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성과나 프로그램 효율성과 같은 결과 평가 영역	①	②	③	④	⑤

## II. 보수교육 교육 대상에 관한 질문

II-1. 보수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원들은 재직 현황과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기관 현직 교원, 국내 KSL/사회통합기관 현직 교원, 국내 학원 강의 교원, 국외 정규 기관 교원, 국외 세종학당/한글학교 교원, 경력 단절 교원, 자격 취득 후 무경력 교원 등입니다. 이중 보수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교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불필요한 교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II-2.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방안은 어떠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직 기관에서의 혜택 및 불이익 / 국가 차원의 혜택 및 불이익 등

## III. 보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문

본 연구에서는 보수교육 교육과정을 급별 연수 과정과 승급 연수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급별 연수 과정의 특별 교육은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 학습자 혹은 기관의 목적별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과목을 설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 보수교육 교육과정 초안

○급별 연수 과정	공통 교육						특별 교육 기관별 or 학습자별 연수
	1급 직무 연수		2급 직무 연수		3급 직무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승급 연수 과정	공통 교육						
	(3급→2급) 승급 연수			(2급→1급) 승급 연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	

Ⅲ-1.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Ⅲ-2. 보수교육 중 승급 연수와 급별 연수의 의무화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급 연수의 의무화는 교육을 받지 않을 시 자격 승급이 불가함을 의미하며, 급별 연수의 의무화는 교육을 받지 않을 시 해당 자격증의 유지가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Ⅲ-3. 급별 연수 과정(공통 교육), 급별 연수 과정(특별 교육), 승급 연수 과정은 각각 어느 정도의 이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5시간 이하, 15시간~30시간, 30시간 이상 등

- 급별 연수 과정(공통 교육) → ( )시간
- 급별 연수 과정(특별 교육) → ( )시간
- 승급 연수 과정 → ( )시간

Ⅲ-4.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 교원의 재직 기관, 교원의 부담 비율 / 의무로 하였을 때와 선택으로 하였을 때

Ⅲ-5. 교원의 재직 기관 또는 개인이 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시간당 어느 정도 비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Ⅲ-6. 급별 연수 과정(공통 교육), 급별 연수 과정(특별 교육), 승급 연수 과정의 이수를 위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필 평가, 면접, 모의 수업 평가, 포트폴리오 작성, 과제 제출, 과제 발표 평가 등

- 급별 연수 과정(공통 교육)  
→ ( )
- 급별 연수 과정(특별 교육)  
→ ( )
- 승급 연수 과정  
→ ( )

#### IV. 보수교육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질문

IV-1. 보수교육과정 구성 시에 꼭 포함해야 할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급별 연수 과정(공통 교육)에 포함할 교육 내용  
→ ( )
- 급별 연수 과정(특별 교육)에 포함할 교육 내용  
→ ( )
- 승급 연수 과정에 포함할 교육 내용  
→ ( )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어 교수법(기능 교육, 교육과정, 평가 등), 한국 문화, 교육 자료 개발, 학생 관리 및 교육 행정, 교사로서의 태도 및 가치관 등

IV-2. 각 급별 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급 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2급 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3급 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수업 자료 개발 능력, 평가 자료 개발 능력, 학생 관리 능력, 학생 상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교사 관리 능력 등

IV-3.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구성 시, 대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세종학당, KSL(중도입국자녀 초등, 중등, 고등 예비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한글학교 등의 모든 한국어 교육 기관 교사에게 필요한 공통의 보수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V-4.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구성 시, 대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 세종학당, KSL(중도입국자녀 초등, 중등, 고등 예비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한글학교 등의 기관별 교사를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는 답변자만 추가 질문]

기관별로 별도로 필요한 보수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기관 교육과정 교육, 해당 기관 교재 사용 교육, 해당 기관 수업 자료 개발 교육, 해당 기관 평가 자료 개발 교육, 해당 기관 학습자 교육, 외국어 교육 등

IV-5. 대면과 비대면을 섞은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을 때,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보수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워크숍(교육 자료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 특강 및 연수, 사례 발표 및 시연, 수업 참관 및 공개 수업, 교사의 포트폴리오 작성, 평가 등

## V. 목적에 대한 공감 여부와 기대 효과, 부작용에 관한 질문

V-1. 위와 같은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V-2.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V-3.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4.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운영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 [부록 5] 타 자격제도의 보수교육 법령 특징

- 본 과제 법령안의 마련을 위해 자격 제도 내 보수교육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조사하였다. 법제처가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sup>68)</sup>를 활용하였다.
- 법령의 조문내용에 “보수교육”을 포함하는 법령은 807건이었고, 이 중 자격제도와 관련된 항목들을 추려 33개 분야의 자격제도를 최종 검토하였다.

### (1) 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법령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에서 대상자, 위탁 규정, 세부사항 시행령을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에서는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 기관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서는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을 별표 4의2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수교육의 위탁운영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4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의 대상을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내용(4개의 사항으로 구분), 방법(대면교육

68) <https://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시간(매년 8시간 이상이지만, 미종사 기간에 따라 교육시간 상이) 등이 정의되어 있다. 또한 제 15조(보수교육 면제·유예)에서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에서는 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 기간(3년)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특이 사항으로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보수교육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협회에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운영한다.

### (3)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경영지도사들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에서 ‘3.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4.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도 보수교육의 다시 정의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의 교육시간(20시간 이상)과 실시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교육 대상의 지도실적에 따라 보수교육의 시간이 달라짐을 단서로 달아 명시하고 있고, 보수교육의 과정(직무교육/직업윤리),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필요한 사항 등을 중소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이수 및 수수료증 발급에 관한 내용 등도 정의되어 있다.

### (4)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 공인노무사들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5

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에서 ‘2.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직무에 관한 교육,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 보수교육의 교육시간(8시간)이 정의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방법)에서는 보수교육의 절차·방법·지정교육기관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에서는 개업노무사의 질병, 휴업,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한 면제 신청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5)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방법 등)에서는 보수교육을 영양사협회에 위탁함이 명시되어 있고, 보수교육의 시기(2년마다 6시간 이상, 예외(면제)의 경우도 있음), 대상, 비용, 방법(집합교육,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법) 등이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에서는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시기 등의 내용을 정해진 양식(별지 제6, 7, 8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이 정의되어 있고, 제20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면제자 명단, 그 외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약칭: 직업능력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에서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내용(5과목 중 택1), 보수교육 시간(24시간 이내), 보수교육 실시 결과, 보수교육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련된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7) 기상예보사: 기상산업진흥법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상산업진흥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에서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대상(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교육의 내용(소양 교육, 신기술 동향, 기상 관련 법규(기상예보사), 감정 관련 법규(기상감정사)), 교육시간(1일(7시간))을 별표 3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 공중보건 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농어촌 의료법)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은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농어촌의료법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의해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에 의하여 명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의 기간,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정의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의 기간(매년 21시간 이상), 보수교육의 내용(업무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실시 위탁 기관 기준(시·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등이 정의되어 있다.

(9)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 건강가정사 및 사회복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다문화가족법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에 따라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에서는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서는 보수교육 방법(집합교육, 비대면 교육 등)과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10) 도선사: 도선법

- 도선사는 도선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도선법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서도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6.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7. 제5항 및 제6항에 따

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보수교육)에서는 법 제6조의2제6항에 정의된 보수교육 대상을 '1.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여 교육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1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보수교육의 정의되어 있다. 제14조(자격 인정)에서 '2.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때 통일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이 규정되어 있다.

(1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서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

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보고 방법, 교육시간(연간 12시간) 및 보수교육 면제 대상, 보수교육 위탁 가능 기관(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정의되어 있다.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서는 수탁기관(보수교육을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의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총 3가지 호에 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이 명시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13)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 나무의사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에서 ‘1.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의 시행규칙 제19조의9(보수교육의 기간·내용 등)에서는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보수교육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보수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총 5가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제19조의10(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에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함도 규정하고 있다.

(14)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45조(지도사의 등록)에서 ‘4.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총 20시간 이상(업무교육,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 합산)이나,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의 보고 기간(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보수교육 관련 서류 보존 기간(5년)을 명시하고 있고, 보수교육의 절차나 방법 및 비용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15) 해기사: 선박직원법

- 해기사는 선박직원법에 의해 보수교육의 정의되어 있다. 선박직원법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선원·어원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선박 종류, 선박 내 업무에 따라 세분화 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16) 상담소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성범죄 상담소 종사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보수교육의 내용이 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이 정의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 기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전문기관(위탁 기관)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 내용 등)에서 보수교육의 시간(연간 8시간 이상~30시간 이내), 보수교육의 내용(실무과정과 전문과정에 따라 구분 제시), 보수교육의 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등을 정의하고 있다.

(17)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 성범죄 상담소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에서는 해당 보수교육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이 정의되어 있고,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에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 기준)에서는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2일 이상) 및 방법(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 원칙, 인터넷 강의 등 활용 가능),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별표 4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종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 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수상구조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

-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30조의7(자격유지)에서 보수교육 기간 및 시간, 보수교육 유예 및 사전 교육 인정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에서는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자격이 취소됨을 명시하고 있다.

(19)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0조(보수교육)에서 보수교육 내용, 전문기관 위탁, 기간 및 방법(여성가족부령)을 정의하고 있고,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에서는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이 정지됨을,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에서는 ‘4. 제32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 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자격이 취소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시간, 위탁 기관,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9-51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본과정 및 특화과정의 상세항을 행정규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20)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서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에서는 직무교육과 승급 연수의 시간을 각각 40시간, 80시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 7에서 정의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시도 조례로 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 있다.

(21) 방사선 작업 종사자: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06조(교육훈련)에서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9조(보수교육)에서는 직무별(면허 유형별) 보수교육 내용, 면제 대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은 별표 4에서 ‘5.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원자력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2) 응급의료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서 보수교육 기간, 위탁, 평가 및 점검, 보수교육 내용과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내용, 대상, 방법, 시간, 면제 및 유예 대상, 위탁 기관 직무 및 평가 등에 대해 매우 상

세히 명시하고 있다.

(23) 의료기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안경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20조(보수교육)에서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시간, 방법,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에서 보수교육 시간, 방법, 내용, 평가에 대해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위탁, 면제 및 유예 대상, 위탁 기관 평가에 대해,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등)에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의 직무에 대해,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에서는 보수교육과정, 실시방법 등은 기관장이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24) 의료인: 의료법

-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는데, 제30조(협조 의무)에서 '2.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 의료인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서는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기간, 이수 시간, 내용, 위탁, 면제 및 유예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에서는 보수교육 내용은 각 중앙회장이 정함과 위탁 실시기관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25) 입양기관 종사자: 입양특례법

- 입양기관 종사자는 입양특례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20조(입양기관)에서 '5.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에서 교육 내용, 교육 기간, 이수 시간, 대상, 위탁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6) 자격 관리자: 자격기본법

-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35조(보수교육)에서 '자격 관리자는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과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에서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대해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7) 보조공학사: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7조(보수교육)에서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위탁,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19조(자격정지)에서는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자격이 정지됨을 명시하고 있고, 제18조(자격취소)에서는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아분을 3회 받은 때'에 자격이 취소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에서는 보수교육 대상, 기간, 이수 시간, 위탁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와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에서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28)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재활상담사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75조(보수교육)에서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 보조기 기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77조(자격정지)에서는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자격이 정지됨을, 제76조(자격취소)에서는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때’ 자격이 취소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에서 보수교육 대상, 기간, 이수 시간을 정의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시기, 교과과정, 방법 등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과 제6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에서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의 직무와 기관 평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9)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에서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보수교육 위탁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에서는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자격과 직무를 상세히 정의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대상, 방법, 이수 시간, 면제 및 유예 대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0) 진술조력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0조(진술조력인의 보수교육)에서 '1. 법무부 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내용과 시간, 실시 방법 등을 정의하고 있다.

(31)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대상, 위탁,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등)와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에서는 보수교육 대상, 위탁,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원장(청소년지도사)과 청소년상담원장(청소년상담사)에게 위임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등)과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에서는 위탁 기관장(활동진흥원장 및 청소년상담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32) 초중등교사: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사는 초중등교육법의 시행규칙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서는 초등교사 2급 자격, 특수학교 교사 1, 2급 자격, 특수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제14조(보수교육과정), 제15조(보수교육시간),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제17조(수강료),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에서 각 내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의 보수교육 개념은 과목의 전환이나 직역의 전환 같은 경우에 사용되어 다른 분야와는 차이가 있다.

(33) 손해평가인: 풍수해보험법

- 손해평가인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정의되어 있다. 제16조의2(손해평가인)에서 ‘4. 손해평가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서는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손해평가인의 보수교육)에서는 보수교육 기간, 내용, 면제 조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부록 6] 제도안 자문의견(종합)<sup>69)</sup>

### 1. 교육과정

#### 1.1. 승급 연수

1) 승급 연수 안에 대한 의견은 ‘1안(2급→1급 승급, 3급→2급 승급)’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였음.

○ 현재 3급이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급, 2급으로의 승급 시 모두 보수교육이 적용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제화 과정에 많은 소명이 필요함. (2안은 기회균등 원칙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며, 법적 문제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 경우 1급과 2급 승급 교육과정은 반드시 차별화를 꾀해야 함.

#### 2) 승급 연수 시간 관련 의견

○ 승급을 위한 80시간의 교육 시간은 승급 대상 교사에게 시간과 경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초중고 교사처럼 방학이 없는 상황에서 80시간을 수강하는 것 부담스러움).

○ 시간을 줄이고 선택 과목에서는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시수를 채우는 방식이 더 적절함.

○ 필수 20시간, 선택 60시간의 비중이 부적절해 보임. 필수 비중을 키울 것을 제안함.

○ 1급 승급과 2급 승급 연수 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육 시간을 차별화하여 1급 승급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교육 시간에 대한 기준만 있고 교육 기간(시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음.

예) 자격 취득 후 기간에 관계 없이 승급 심사 전까지 이수하면 되는 것인지, 일정 기간 안에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69) 본 자문의견 종합은 보고서 4쪽의 [그림 1]의 절차에서 제도안(1차)을 마련한 후 11월~12월 자문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한 자문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자문위원에게 제공된 제도안(1차)은 보고서 19쪽의 <표 6> 보수교육 제도안(요약)과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 법령 개정안 등이다. 연구팀은 제도안(1차)에서 승급 연수에 대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1급 승급과 2급 승급을 기존처럼 모두 운영하는 것이고, 2안은 2급 승급의 수요가 낮을 것을 예상하여 1급 승급만 두는 것이다. 직무 연수의 경우도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1안은 직무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2안은 선택으로 하는 안이었다.

## 1.2. 직무 연수

- 1) 직무 연수는 ‘2안(선택)’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였음.
  - 의무로 해야 제도가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임(한국어교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확보(참여비, 교통비 등) 문제 고려 필요함).
  - 선택으로 하여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으며, 연수 참여를 위한 동기유발부터 필요함.
  - 2년마다 의무로 받는 보수교육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교육의 효과도 거의 없을 것임.
  
- 2) 직무 연수 대상자 관련 의견
  - 각 대학에서 책임교원, 일반교원을 구분하여 연수를 추천하기 어려움. ‘책임 교원 연수’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자격, 연수에 따른 활동 측면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1.3. 특별 연수

-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이미 체계적,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듦(보수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교수자의 적절성과 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진행 중인 교사양성 프로그램 등과 차별되는 우수한 교육 내용 구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 특별 연수를 현재와 같이 직무 연수 안에 두되 유관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특별 연수를 제하고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 1.4. 교과목 관련 의견

- 1) 종합 의견
  -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실제적 과목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자격증 취득 시와 유사한 교과목이 다수 포함되는 것은 보수교육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직무 연수와 승급 연수의 교과목이 같은 경우 재검토가 필요함. 특

히 승급 연수 과목 중 2급→1급, 3급→2급이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 차별화, 위계화, 심화 교육이 필요함.

- 필수 과목은 차별을 두되 선택 과목의 경우 동일한 과목 풀을 현재 제시되는 범위보다 더 다양한 범위로 제시하고 각자의 필요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직무 연수 교과목 간의 상호 관계(위계화)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 교육 영역을 구분한 다음 일반과 심화로 나누어 제시하고, 수요자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을 제안함.
- 승급 연수는 일회성 교육인데, 교육 내용이 1회 교육으로 충분한 과목인지 고려해야 함.
- 직무 연수에 한해서 비대면 동영상 시청 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음.

## 2) 구체적 과목명 관련 의견

- 승급 연수 중 ‘2급→1급’은 학교 운영 및 행정, 교사 관리 등의 내용, ‘3급→2급’은 수업 컨설팅 및 교육 클리닉 등의 과목이 추가되면 좋겠음.
- 해외 한국어 학습자 이해 과목(문화상호주의, 언어권별 학습자들의 모국어 기초 지식 교육 등)이 추가되면 좋겠음.
- 한국학(또는 7급)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 지식 교과목이 포함되면 좋겠음.
- 출입국관리법의 이해(2시간)를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음(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2급→ 1급 승급 선택 과목 중 ‘외국 국적 동포의 이해’ 과목명을 ‘재외동포의 이해’로 바꾸면 좋겠음.
- 3급→ 2급 승급 선택 과목 중 한국 음악 등에 관한 것이 빠진 것 같음. 한국음식 관련 과목이 3번과 12번에 있으므로 그 중 하나는 한국 음악으로 대체하면 좋겠음. K-pop은 주로 현대 음악이므로 전통음악에 관한 과목도 필요하다고 여겨짐.
- 교육 내용에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법제론 추가(보강) 필요성 있음.

- 실무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교수법,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음.

### 1.5. 신청 방식 관련 의견

-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인 신청 방식)가 필요함. 경력은 많지만 선정 당시에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임.-
- 한국어교원의 현실은 2~3개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시간강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고용 불안정, 처우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교육 대상자를 기관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관리해야 하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일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

### 1.6.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 자격 승급 심사도 거치고 보수교육도 받아야 승급이 되는 것이라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됨(2급 승급 대상자는 코로나 이후 강의 시수 축소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만 3년 이상, 한국어교육 경력 1,000시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중등교사 자격에 비해 기준이 높아 차별적으로 느껴짐.).
- 교육과정 운영은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2회/1년)와 연동되어야 함.
- 다수가 현직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석률 90% 이상, 지필평가 70점 이상 등 참여 및 성취 가능한 현실적 고려가 필요함. 더불어 승급 연수와 직무 연수의 이수 판정 기준 중 출석률(현재 승급은 100%, 직무는 80%)의 통일이 필요해 보임.
- 미종사 교원을 교육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6시간의 교육이 어떤 실효성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움.)

## 2.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

### 2.1. 운영기관 선정 관련 의견

- 1) 권역별 운영기관(거점 기관) 선정 관련 의견

- 운영기관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거점 기관의 개념과 범위, 수 등).
- 국내 기관 지정 절차와 국외 기관 지정 절차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해외 운영기관에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실습 관리를 위한 교원, 교육환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제시해야 함).
- 교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운영기관을 확보하는 것, 운영기관마다 균질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됨.
-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역량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거점 기관 교육 외에도 일정 인원 이상의 한국어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맞춤형 과정 운영에 대한 체계도 필요함.

## 2) 사단법인 설치 관련 의견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센터’ 등 일원화된 교육 기관 설치 필요성 인정함.
- 단, 법령에서 보수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조항에 대해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2. 운영기관 평가 관련 의견

### 1) 평가 문항 관련 의견

- 자체 점검표 문항의 설정을 엄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수교육위원회의 평가 지표(안)에서 ‘범주와 항목’ 사항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배점의 5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할 것임.
-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 배점이 5점으로 낮은 편임. 장시간 연수를 받는 연수자들에게는 교육 환경(시설, 설비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하며 연수자들의 학습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해

당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선정 기준의 설정 항목에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장 기반 전문가들이 실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강사 현황’에서 강사의 자격 등급이나 강의 경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 2) 평가 주기 관련 의견

- 평가 주기가 4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 보면 평가 결과 탈락할 경우 3년만 운영을 하고 4년째부터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음. 결국 평가 주기는 3년이므로 모호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주기와 평가 결과 반영 시기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의 과정 운영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학기제로 운영되는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의 과정 운영 특성을 볼 때 여름학기를 앞둔 6월에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겨울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1월부터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4년 주기 평가에서 재선정되는 경우, 재선정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2.3.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지침 전반에 대한 의견

- 기관이 보수교육 프로그램 유치에 참여할 동기가 될 만한 요인을 명시해야 함.
- 보수교육 프로그램 강사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음.

## 3. 법령

### 3.1. 자격 취소 및 정지 규정, 면제 관련 의견

#### 1) 자격 취소 및 정지 규정 관련 의견

- 면제 항목과 상충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가 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의 수가 비슷함.

-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 항목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을 할 경우 피해를 보는 교사가 많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다른 자격 제도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임.
-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필수성과 효용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건, 나아가 한국어교원 신분에 대한 확립과 교육부의 인정(고등교육법에 편입)이 선행되어야 함.

## 2) 연수 면제 관련 의견

- 면제 조건에서 ‘관련 전공’의 규정이 모호함.
- 면제 대상 중 관련 전공 ‘이수자’에 수료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학위(박사) 취득과 관련한 보수교육의 면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음. 2급과 3급을 가진 교원이라면 승급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등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박사 과정의 교육 내용이 석사 과정이나 학부 과정의 교육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
- 승급 연수 면제 관련, 세종학당 지정 연수 과정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법제화를 위해서는 세종학당 교원 교육과정의 시수, 프로그램, 횟수 등에 대한 모듈화가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3.2. 교육 기관 관련 의견

- 교육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필요함.
- 한국어교원 소속 기관의 범위에 학원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외 한국어교육 기관도 포함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전문화되어 있으면서 대규모인 곳에 초점을 두어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해야 함.
- 정부 차원의 권고안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정부 예산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이 선결되어야 함).
- 교원의 신분(전임, 비전임), 수업의 유형(언어교육원, 학부 유학생 등) 등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지므로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이나 단체가 교육 대상자의 명단을 보고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

- 소속기관의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자 포함) 명단 보고 의무가 있으나 불이행 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3.3. 1급 자격 소지자 의무 채용 관련 의견

- 기관마다의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기관 내에 1급 자격 소지자를 몇 %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법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자칫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규제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됨.
- 1급 자격 소지자의 의무 채용보다는 우대하는 방안이 더 좋을 듯함. 원칙적으로 기관은 급수와 무관하게 일정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에게 열려 있어야 함.

### 3.4. 법령 전반에 대한 의견

- 1) '보수교육 비용, 보수교육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보수교육에 대한 자원(국가/개인/기관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함.
  - 보수교육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 법제화 가능성 관련
  - 본 논의를 법제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지위 보장과 보수교육 이수에 뒤따르는 다양한 혜택 등이 합의가 될 때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됨.
  - 법령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을 활용하는 입법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 기관 내 2급이나 1급 자격증 교원의 의무 채용과 더불어 교원의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함께 만들어져서 법제화되었으면 함.
  - 전체적인 조율을 통해 산인공에 위탁된 3급의 인정을 자격심사위원회로 환부하고, 양성기관을 통한 3급의 진입에 대해 교원양성 관련



연구팀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3) 내용 추가 관련 의견

-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다만 승급이 필요없는 1급만 채용할 염려가 있음).
- 직무 연수의 종류와 대상(책임교원 연수, 일반교원 연수, 미종사교원 연수, 특별 연수)도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좋겠음.
- 직무 연수 이수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추가로 설정되면 좋겠음(어떤 우대 조건을 통해 보수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됨).

### 4. 기타 의견

- 예상되는 다양한 개인/단체 민원, 제도 소외자를 위한 경과 조치나 유예 방안 및 출구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제도 개설편 운영과 관련해 문체부 내의 논의를 넘어선 부처 간 협의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수교육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과 연결되어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
- 한국어 교사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하고 각 기관에서의 강의 이력에 대한 관리 제도가 필요함. 특히 해외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의 양식의 진위에 대한 확인 등이 어렵고 추후의 한국어 교사 관리를 통한 경력 인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차원에서도 이력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부록 7] 법령 개정안 자문의견(종합)

### 1. 보수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문제

[자문 요청 내용] 법령 개정안의 형태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 가운데, 2안을 제시함.

- <1안> 국어기본법에 제19조 2 한국어교원을 신설하여 자격 요건, 자격 부여 방법, 양성과 자질 함양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을 명시하는 방법
- <2안> 시행령에 제13조 3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실시, 필수 과목, 교육시간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
- <3안> 시행령 제13조의 각 자격에 단서를 붙여 승급 연수를 규정하고, 6항을 신설하여 직무 연수를 정의

#### 1.1. 자문의견 (1)

-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자격기본법」 35조에 근거를 두는 것은 동법이 일반법이어서 능히 생각할 수 있으나, 동법을 자격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에 국어인 한국어의 교원의 보수교육은 일단 「국어기본법」의 차원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보수교육의 내용에서 필수적 이수 등 의무적 사항이 많은데, 모법률인 「국어기본법」에 그것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의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모법률인 「국어기본법」에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에 관해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근거규정의 마련에서 위의 <1안>처럼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의 내용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즉, 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 자문의견 (2)

- 이 초안은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보수교육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함.
- 문제는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있음.
- 연구자는 보수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으로 1) 국어기본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부여방법, 보수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는 방안,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에 관해 규정하는 방안,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각 자격에 단서를 붙여 승급 연수를 규정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직무 연수에 관해 규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중에서 제2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하고 있음.
- 생각건대,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기존의 한국어교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에 관해서도 직접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의료법 제30조 제3항,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sup>70)</sup>
- 결론적으로,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인 「한국어기본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보수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즉, 국어기본법 제19조 제4항으로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5항에서 보수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70)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법 제80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 2. 고시(위임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한 문제

- 모법률인 「국어기본법」에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에 관해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면 그에 따라 고시(위임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함.
- 가령 초안의 위임행정규칙의 차원에서 규율한 것 대부분을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체계적임.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시행령 제13조의4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소 등)과 관련한 문제

### 3.1. 자문의견 (1)

- 초안은 한국어교원의 자격취소 등의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자격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모법률인 「국어기본법」에 두어야 함.
- 모법률에 그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시행령에 창설적으로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3.2. 자문의견 (2)

- 현행 국어기본법은 한국어교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제19조의3), 그 사유로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엄밀하게 말하면 1)의 사유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2)의 사유는 철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이 초안에서는 한국어교원에 대한 제재사유로 현행의 1)과 2) 이외에 3) 한국어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와 4) 직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그리고 1)과 2)의 사유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3)과 4)의 사유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문제는 그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에 관해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임. 이 초안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해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의 종류 등은 한국어교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행령 제13조의4”에 규정된 내용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3항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다음으로, 이 초안에서는 단지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두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컨대,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임.
- 한편, 국어기본법에서 제재처분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4. 직무 연수 의무화 문제

- 법적 강제를 통해 직무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 자체는 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상 및 보수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음.

#### 5. 보수교육의 대상에서 2급 승급 제외 문제

-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의 경우에 보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자격체계 진입 부담 완화 및 교육 부담 완화를 고려한 것을 이유로 드는데, 나름의 정책적 구별을 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에게 허용되는 형성의 자유(입법재량)의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짐

#### 6. 한국어교육보수교육위원회의 신설 문제

- 초안에서는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해서는 위임행정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한국어교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수교육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함.

- 보수교육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원 보수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참고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는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7. 보수교육 수수료증에 관한 규정 문제

- “1급 심사조건”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수교육 수수료증”을 제출할 것을 추가하고 있음.
-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수료증 교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시행령 제13조의3 제6항에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수료증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은 “보수교육 이수증”의 발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8. 보수교육의 면제에 관한 규정 문제

### 8.1. 자문의견 (1)

- 직무 연수는 현재의 자격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데, 해당 전공 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무 연수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 경우에 직무 연수를 면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겨짐. 나아가 교육대상자의 이중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면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겨짐.

### 8.2. 자문의견 (2)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보수교육 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만일 제1호

만을 규정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본문에서는 “한국어교원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수교육 면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구체적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표현은 모두 “면제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어 사용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질병, 육아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개업노무사가 질병·휴업·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보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 외부교육 시간 인정 문제

- 보수교육의 대상자의 관점에서 보수교육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유관 조직에서 행정부 지원으로 별도 진행되고 있는 교육 중 한국어교원 보수교육과의 중복된 과목 등을 보수교육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부 인정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여겨짐.

[기획·연구]

이보라미(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김보람(국립국어원 연구원)

권진주(국립국어원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 책임자: 양명희(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은호(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안정호(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유해준(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이영숙(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이훈(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대표 강사)

조윤정(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강사)

보조 연구원: 김보현(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강사)

김혜원(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객원교수)

류다정(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객원강사)

신선혜(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객원교수)

장지수(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연구

---

발행인 장소원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1년 12월 10일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인쇄 유일문화사

---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어교원 보수교육 제도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